의름호 1985

韓國開發研究

產業構造 高度化와 中小企業의 育成

金栽元

工業配置政策이 地域隔差解消에 기여한 效果

李元暎

우리나라 醫藥產業의 現況과 技術 水準向上 方案 鄭鎭勝韓培宣

多品目繊維協定(MFA)의 經濟的 效果와 우리의 對應

嚴峰成

海外商品先物市場의 活用方案

李 烷

私學財政의 實態와 政策課題

朴 烜 求 金 明 淑



韓國開發研究院

季刊韓國開發研究

第7卷 第2號

1985. 6

產業構造高度化의 中小企業의 育成…金 栽	元…	2
工業配置政策이 地域隔差解消에 기여한 效果······李元	暎…	20
우리나라 醫藥產業의 現況과 技術水準向上方案鄭 鎮	勝 宣	40
多品目繊維協定(MFA)의 經濟的 效果와 우리의 對應嚴峰	成…	55
海外商品先物市場의 活用方案李	烍…	74
私學財政의 實態와 政策課題	求	98

----編輯委員-----

 朱 鶴
 中(委員長)

 朴 埈
 卿(幹事)

 金 栽
 元 朴 烜 求

 俞 正 鎬
 郭 泰 元

編輯問議:編輯委員會(962-8410) **購讀問議**:出版課(967-3287) 「韓國開發研究」는 우리나라 經濟·社會開發과 관련되는 諸般課題를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다룬 論文과 關聯研究資料를 수록하여 年 4回(3月,6月,9月,12月) 發行한다.

이 研究誌는 本研究院의 研究結果에 立脚한 論文과 研究資料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紹介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特別招請形式으로 外部人士의原稿도 수록할 수 있다.

本誌에 실린 論文의 結論과 政策建議를 포함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意見이며 결코 本研究院이나 編輯 委員會의 公式意見을 反映하는 것은 아니다. 本誌의 內 容은 出處明示 慣例를 지키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다.

產業構造 高度化와 中小企業의 育成*

金 栽 元

- I. 序 論
- Ⅱ. 產業構造의 調整斗 經濟成長
- Ⅲ.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
- N. 要約 및 結論

I. 序 論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우리에게 주어진 賦 存資源條件과 一致하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輸出產業은 海外市場에서 比較 優位를 갖는가?

臺灣,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中共까지도 오늘날 우리의 主要 競爭相對國으로 등장하고 있고 先進工業國들에서는 점차적으로 保護主 義가 强化되고 있어서 우리의 輸出은 점점 어 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經濟成長 역 시 鈍化되고 있다. 이같은 時點에서 이를 打 開하고 高度成長을 持續化하기 위해서는 產業 構造의 再調整斗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중요한 政策課題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經濟成長이 生產要素의 生產性增加에 더 크게 의존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產業構造의 再調 整이란 賦存資源條件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 게 比較優位가 있는 産業을 重點的으로 育成 하는 發展戰略을 意味한다. 產業構造를 우리 의 賦存資源條件에 맞도록 再調整하는 것은 곧 經濟成長의 費用을 最少化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產業構造의 高度化도 論理的 觀點 은 위와 동일하다. 다만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말할 때에는 生產의 專門化를 좀더 細分化한 다든지 技術의 開發 및 革新을 통해서 附加價 値比率을 높인다는 적극적인 意味가 추가적으 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나간 20여년간 만성적인 國內物價 上昇을 경험하여 왔고 여기에 덧붙여 政府의 적극적인 產業支援政策(예를 들면 市場에서의 實質金利보다 낮은 公金融機關의 利子率, 低

上昇을 경험 ਰ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이 論文은 筆者의 『產業構造 高度化와 中小企業의 育 成』, KDI 政策報告 85-01(1985) 중에서 重要한 부분 을 발췌한 것임.

利의 輸出金融, 其他의 여러 가지 政策金融 등) 때문에 產業構造가 크게 歪曲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物價安定과 더블어 產業構造의 再調整 및 高度化가 오늘날 經濟政策의 核心으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產業構造의 再調整과 高度化量 위한 政策手 段으로는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와 더블어 金融自律化,中小企業育成,技術開發 등이 重 要手段으로 動員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產業 構造의 再調整斗 高度化는 資源配分이 市場機 能에 맞겨져야만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 로 이를 위한 諸手段들, 예를 들면 經濟開放 化, 金融自律化, 中小企業育成政策, ユ리ュ 技術開發政策 등도 모두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이다. 產業構造 再調整 과 產業構造 高度化 및 技術開發 등이 輸出을 促進하고 窮極的으로 經濟의 高度成長을 目標 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諸手段들이 中小 企業育成과도 論理的으로 相通하는가? 다시 말해서 中小企業의 育成이 輸出促進・經濟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中小企業의 育成이 市場에서의 競爭을 提高 해서 市場의 機能을 活性化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生產形態를 多樣化하여 社會福祉水準을 증가하며 雇傭을 擴大한다는 것 등은, 일반적 으로 理解되고 있는 假說이다. 여기서는 巨視 的 觀點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이 產業構造 再 調整과 高度化를 위해 얼마나 重要한가를 理 論的으로, 그리고 實證的 分析을 통하여 說明 하기로 한다.

II. 產業構造의 調整과 經濟成長 一理論的模型의接近一

역기서는 產業構造의 再調整 또는 高度化와 經濟開放化,中小企業育成,技術開發,그리고 經濟成長과의 關係를 간단한 理論的 模型을 통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假定으로 부터 出發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產業構造는 資本集約的 構造로 歪曲되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勞動과 資本의 相對的 比重 에 비해서 資本集約的 產業 또는 資本集約的 生產方式에 의한 生產의 比重이 더 크다는 것 이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成長政策이 規模의 經濟效果(economies of scale effect) 에 크게 의존하여 온 반면 要素市場(특히 金融市場)이 歪曲되어 資本使用에 대한 補助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公金融機關의 利子率이 市場에서의 實質金利보다 크게 낮았 다는 점과 政策金融의 比重이 매우 컸었다는 접으로도 충분히 理解가 가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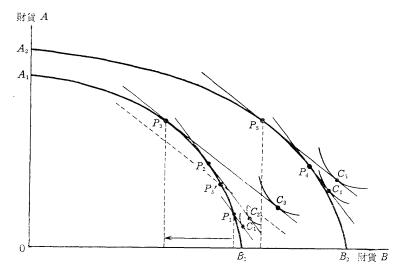
둘째, 우리나라의 中小企業들은 일반적으로 勞動集約的 產業에서 더 活潑하게 生產活動에 임하고 있거나 같은 財貨를 生產하더라도 勞 動集約的 生產方式을 택한다고 假定한다. 이 것은 中小企業의 本質로부터도 유추가 가능한 것이며 또 實證的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²⁾.

세째, 工業先進國들과 比較하여 불 때 우리

¹⁾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統計는 金栽元(1984) 〈表 3〉, 〈表 4〉(pp. 154~155) 參照.

²⁾ 이에 대한 統計는 金栽元(1984) 〈表 11〉(p. 63) 參照.

[圖 1] 產業構造의 調整過程



나라는 資本貧弱國(capital-poor country)이기 때문에 經濟가 完全開放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資本集約的 財貨의 相對價格은 다른 나라에

 A 및 B 產業의 生產函數를 각각 다음과 같이 表示하 기로 한다.

$$X_A=A(K_A,L_A), X_B=B(K_B,L_B)$$

K 및 L은 각각 資本스톡 및 勞動投入量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dX_A = MP_K^A dK_A + MP_L^A dL_A,$$

 $dX_B = MP_K^B dK_B + MP_L^B dL_B \circ | \uparrow h.$

 γ,ω 를 각각 利子率 및 賃金率, P를 生産物의 價格이라고 하면,

$$\gamma = MP_K \cdot MR$$
, $\omega = MP_L \cdot MR$, $MR = P\left(1 - \frac{1}{r}\right)$

이 된다. 만일 모든 市場이 競爭的이라고 하면 $\eta=\infty, \ \gamma=\gamma_A=\gamma_B, \ \omega=\omega_A=\omega_B$ 가 될 것이므로

$$\frac{dX_A}{dX_B} = \frac{\frac{P_A}{P_A} (\gamma dK_A + \omega dL_A)}{\frac{1}{P_B} (\gamma dK_B + W dL_B)} = \frac{P_B}{P_A}$$

즉 限界變換率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 \frac{dA}{dB}$)과 價格比率이 - 致하여 價格이 生産可能曲線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生産要素에서資本使用에 대한 補助가 주어지면

 $\gamma_A = \rho \gamma_B, \rho < 1$

이 되어 企業이 실제로 當面하는 限界變換率은

$$\frac{dX_A}{dX_B} = \frac{\frac{1}{P_A} (\gamma dK_A + \omega dL_B)}{\frac{1}{P_B} (\rho \gamma dK_B + \omega dL_B)} > \frac{P_B}{P_A}$$

이 된다.

비하여 더 높다고 假定한다. 다시 말해서 Heckscher-Ohlin-Stolper理論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의 經濟가 完全開放되면 資本 集約的 財貨의 相對價格은 下落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假定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論理를 展開시킬 수 있다.

1. 對內的 調整과 對外的 調整

[圖 1]에서 財貨 A(從軸)를 勞動集約的,財 質 B(橫軸)를 資本集約的 財貨로 假定하기로한다. 曲線 A_1B_1 을 어느 特定時點에서의 生產可能曲線이라고 하고 初期(調整以前)의 生產 및 消費均衡點을 P_1 과 C_1 이라고 假定하기로한다. 點 P_1 을 지나는 直線(P_1C_1)을 價格線이라고한다면 初期에 있어서의 價格線은 點 P_1 에서 生產可能曲線과 접하지 않고 交叉하고있다. 그 이유는 위의 假定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예:資本使用에 대한 補助)때문이다 50 . 그러므로產業構造의 調整은 生產可能曲線과 價格線이 접하는

點(限界變換率과 價格比率이 같아지는 점)에서 生產均衡點이 形成되도록 生產을 調整하는일이다. 이제 만일 다른 條件들은 변하지 않은 채(즉 모든 市場이 競爭的이고) 資本使用에 대한 補助(또는 資本集約的 產業에 대한補助)를 제거하여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을 없애면 어떠한 現象이 發生할 것인가"?

우선 現在의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은 전적으로 金融制度上의 問題로 돌리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의 金融慣行이 利子率에 의한 配分보다 政策的 配分에 크게 依存하는 것이 現實이라는 점과 生產性(效率性)보다는 (擔保力에 의한) 安全性에 더 크게 依存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있다. 그러므로 資金供給源에의 接近에 相對的으로 더 어려운 企業(예:中小企業)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을가져오는 가장 重要한 原因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같은 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이 矯正되면(예를 들어 金融自律化,自律的인 金利政策등) 다른 條件이 일정한 한 [圖 1]의 點 P_2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勞動集約的 財貨(財貨 A)의 生產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點 P_2 에서는 限界變換率과 價格比率이 일치하게 되어 對內的 調整이 完了되게 되며 이것이 產業構造調整의 一段階 效果이다.

이제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生產均衡點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의 假定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마찬가지 로 우리나라는 資本이 相對的으로 貧弱한 나라이기 때문에 經濟開放化가 이루어진 연후에는 資本集約的 財貨의 相對價格이 낮아질 것이다. 즉 價格線의 기울기(절대값)가 한층 더완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圖 1]에서 새로운 價格體系에서의 生產均衡點은 點 P_3 로 움직일 것이다. 點 P_3 에서 다시 限界變換率과價格比率은 일치하고 있다. 點 P_3 는 다른 모든 條件이 일정할 때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이 이루어진 후,즉 巨視的均衡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初期의 均衡點 (P_1) 과 調整 後의 均衡點 (P_3) 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財貨 B의 生產은 크게 주는 반면 財貨 A의 生產은 크게 伸張되었다. 만일 財貨 B가 資本集約的 產業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財貨라도 資本集約的 生產方式에 의해서 生產되며 이것은 주로 大企業에 의해서 生產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產業構造의 對內的 및對外的 調整은 大企業의 生產活動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產業構造의 調整은 다른 條件이 변하지 않는한 勞動集約的 產業의 生產活動을 促進하게될 것이고,企業形態別로 보면 中小企業에 유리한 經濟環境의 造成을 의미하게 된다.

둘째, 이같은 產業構造의 調整은 社會的 福祉(social welfare) 水準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生產이 P_1 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社會福祉의 水準이 C_1 이었으나 生產均衡點이 P_3 로 움직였을 때는 그것이 C_3 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社會福祉가 크게 增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⁴⁾ 工業先進國에서는 勞動組合의 結成으로 生產要素市場의 歪曲이 勞動市場에서 發生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發展初期段階에 있는 國家에서는 오히려勞動市場에서의 需要獨占的 現象이 要素市場 歪曲의原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模型의 單純化를위해서 勞動市場이 競爭的이라고 假定하기로 한다.

2. 產業構造 高度化와 經濟成長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經濟의 다른 條件이 변하지 않은 채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이 이 루어지면 資本集約的 產業에서의 生產水準이 減少함을 알 수 있다. 만일 실제 經濟에서 產 業의 構造(生產體制)가 손쉽게 變形(putty model)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現象은 一部產 業에서 生產施設의 過剩,失業의 增加 등 構 造的 問題를 誘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內部에서 質的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한 소기의 目的을 現實的으로 達成할 수 없게 된 다.

이제 產業構造의 調整과 더불어 技術開發에 拍車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시 [圖 1]을 통해서 技術開發이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더불어 產業構造의 調整을 통한 高 度成長의 達成이 가능하게 됨을 볼 수 있다.

技術의 開發은 比較靜學的 觀點에서 볼 때 生產可能曲線이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 다. 이제 技術開發에 의해서 生產可能曲線이 A_1B_1 에서 A_2B_2 로 움직였다면 生產可能曲線 A_1B_1 上의 點 P_3 는 A_2B_2 上의 P_5 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 과 技術開發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의 最終均 衡點은 P_5 가 될 것이다. 이제 P_1, P_3 , 및 P_5 를 각각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_5 에서는 產業構造에 대한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限界變換率 과 價格比率이 일치하고 있다.

둘째, 點 P_1 및 點 P_3 에서 보는 바와는 달리 點 P_5 에서는 資本集約的인 B財貨產業에서도 生產이 증가하였으므로 過剩施設이나 失業과 같은 構造的 問題가 擡頭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의 分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첫째,成功的인 產業의 調整을 통해 安定的經濟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產業構造調整을 위한 一般的 政策手段(예,輸入自由化,民間主導,金融自律化)을 動員하는 외에 中小企業育成을 위한 적극적 對策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價格比率과 限界變換率이 일치하도록(價格線이 生產可能曲線과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政策手段이 動員된다고 하더라도 財貨 A를 生產하는 產業(또는 中小企業)에서의 生產彈力度가 낮으면 產業構造의 調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產業構造調整을 위한 政策과 더불어 技術開發을 위한 努力이 併行되어야 한다. 이 것이 產業構造 高度化를 통한 高度成長의 方 法임을 위의 分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

우리는 앞의 章에서 產業構造調整, 中小企業育成,技術開發,高度成長의 相互關係를 간단한 模型을 利用하여 說明하였다. 產業構造의 再調整과 高度化를 위해서는 中小企業의育成이 併行되어야 하며 經濟內의 構造的 問題를 解消하고 高度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는技術開發이 매우 중요한 要素임을 보았다. 그러나 中小企業의育成이 產業構造를 高度化하고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에 의한 輸入代替와 輸出促進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寄與할 수 있을까? 즉 高度成長이 中小企業의 育成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앞에서 分析한 理論的 假說을實證的으로 보여주기로 한다. 우선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을 비교하기 위해서 各 產業(207個 I-O部門)에서 中小企業의 比重(當該產業에서 中小企業의 附加價值比重)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比重이 높은 產業(中小企業 中心產業)들의 對外競爭力을 비교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비교의 基準으로는 需要增加에 따른 生產增加,輸出擴大,輸入代替의크기를 測定하였다.

1. 分析을 위한 模型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을 分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投入一產出 模型을 이용하였으며 實 證的 分析을 위해서는 韓國銀行의 1975年과 1980年의 產業聯關表를 사용하였다. 먼저 分 析을 위한 模型의 展開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과 같은 投入一產出表의 基本骨格 으로부터 出發하였다.

$$AX+F+E-M=X$$
 ······(1)

 $A^{(n \times n)}$: 投入係數行列(matrix)

 $F^{(n\times 1)}$, $E^{(n\times 1)}$: 國內最終需要 및 輸出

[벡터]

M("×1): 輸入「則时」

X("×1): 總產出「벡터 |

위의 式을 X에 대하여 풀면,

$$X = (I - A)^{-1}(F + E - M) \cdots (2)$$

이 된다. 여기서

$$(I-A)^{-1} = \{\mu_{i,j}\}, i, j=1\cdots n\cdots (3)$$

이다.

式(2)에서 어느 特定產業의 均衡產出量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X_i = \sum \mu_{ik} (F_k + E_k - M_k)$$

= $F_i^* + E_i^* - M_i^*, k = 1, \dots n \dots (4)$

이게 各產業에서의 輸出比率 및 輸入比率 (各產業에서 間接效果를 포함한 總輸出額 및 總輸入額의 該當產業 總產出額에 대한 比率) 을 각각 다음과 같이 表示하기로 한다.

$$e_i^* = \frac{E_i^*}{X_i} \cdots (5)$$

$$m_i^* = \frac{M_i^*}{X_i}$$
 ·····(6)

그러므로,

$$E_i^* = e_i^* X_i \cdots (5)'$$

$$M_i^* = m_i^* X_i \cdots (6)'$$

이 된다. 따라서 式(4)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X_{i} = F_{i}^{*} + e_{i}^{*} X_{i} - m_{i}^{*} X_{i} \cdots (4)'$$

윗 式을 X_i 에 대해서 풀면,

$$X_i = \frac{1}{1 - e_i^* - m_i^*} F_i^* = T_i F_i^*$$
(7)
$$T_i = \frac{1}{1 - e_i^* + m_i^*} : i -$$
產業에서의 貿易乘數

이 된다.

이제 위의 모든 變數들을 比較時點別로 구 분하여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P_iX_i^0 = T_i^0P_iF_i^{*0} \cdots (8)$$

$$X_{i}^{t} = T_{i}^{t} F_{i}^{*t} \cdots (9)$$

$$T_{i}^{0} = \frac{1}{1 - e_{i}^{*0} + m_{i}^{*0}}$$

$$T_{i}^{t} = \frac{1}{1 - e_{i}^{*t} + m_{i}^{*t}}$$

 P_i :換價指數

그러므로, 어느 特定產業(i-產業)에서 比較期間 동안의 生產增加量 (ΔX_i) 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어느 特定產業(*i*-產業)에서의 生產 增加率은 다음과 같이 表示되다.

$$g_{i} = \frac{\Delta X_{i}}{X_{i}^{t}} = T_{i}^{0} f_{i}^{*} + T_{i}^{0} (EX_{i} + MS_{i})$$
.....(11)

g_i:i-産業에서의 生産增加率

$$f_{i}^{*} = \frac{F_{i}^{*i} - P_{i}F_{i}^{*0}}{X_{i}} : i$$
-產業에서의 內

需市場擴大效果

 EX_i : i-産業에서의 輸出擴大效果

MS_i:i-産業에서의 輸入代替效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模型은

이 된다

다음과 같은 構造上의 特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첫째, 다른 條件(예를 들면 輸出과 輸入比率)에 변함이 없는 한 $(e_i^{*i}-e_i^{*0}=0,m_i^{*0}-m_i^{*i}=0)$ 各產業에서의 生產增加는 國內最終需要의 增加에 依存한다.

둘째, 貿易乘數 (T_i) 는 輸出比率에는 正의 關係, 輸入比率에는 負의 關係를 가지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은 範圍에서 決定된다. 즉

$$0 \le e_i^*$$
, $m_i^* \le 1$ 이므로 $\frac{1}{2} \le T_i < \infty$

이 된다.

세째, 만일 輸出 및 輸入比率이 일정하지 않고 變化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變化의 크기가

$$(e_i^{*t}-e_i^{*0})+(m_i^{*0}-m_i^{*t})=0$$

이면 生產增加는 國內最終需要增加에 依存하 게 된다.

네째,國內最終需要의 增加는 없어도 輸出 擴大 및 輸入代替의 純效果가 正이면,즉

$$(e_{i}^{*t}-e_{i}^{*0})+(m_{i}^{*0}-m_{i}^{*t})>0$$

이면 i-產業에서의 生產은 增加하게 된다.

다섯째,輸出擴大나 輸入代替는 動態的 概念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特定年度(t期)에 輸出(輸入)比率이 높다(낮다)고 하더라도 比較年度(0期)의 그것보다 더 높지 않으면(낮지 않으면) 輸出擴大(輸入代替)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模型에서는 特定產業에서 輸出擴大效果(또는 輸入代替效果)가 적거나 마이너스라고 해서 該當產業의 輸出比率(輸入

比率)이 반드시 낮다(높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다.

만일 輸出擴大效果나 輸入代替效果가 낮더라도 貿易乘數가 크면 그 產業은 높은 輸出比率 또는 낮은 輸入比率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對外競爭力 有無 判斷의 基準

產業別 對外競爭力은 基本的으로 式(10)과 式(11)을 利用하여 判斷하기로 한다.

가. 生產增加率

式(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特定產業 (i-產業)의 成長率(生產增加率)은 T_i^o (貿易乘數), f_i^o (內需市場 擴大效果), EX_i (輸出擴大效果), MS_i (輸入代替效果)의 크기에 依存하게 된다. 만일 T_i^o (貿易乘數)가 주어지면 成長率(g_i)은 f_i^o , EX_i , MS_i 에 依存하게 된다(우리의 分析에서는 $T_i = T_i^o$ 로 주어지도록 되어 있음).

위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輸出擴大效果 (EX;)와 輸入代替效果(MS;)는 動態的 概念으로 測定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特定產業에서 輸出이 이미 많이 되고 있을 때 比較年度에서 그 輸出比率이 더 커지지 않는 한 우리의 模型에서는 輸出擴大效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輸入代替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論理임).

그러므로 對外競爭力의 有無를 輸出擴大效果나 輸入代替效果만으로 測定하는 것은 問題가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各產業에서의

生產增加率을 가지고 國內外 市場에서의 全般的 競爭力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內需市場이 擴大되었을 때 (f^*) 의 增加)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國內生產水準은 그대로 있으나 輸入이 증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輸入 數量은 그대로 있으나 國內生產만이 增加하는 경우이다(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輸出 의 減少를 同伴할 수도 있음). 만일 國內生 產水準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g_i=g_i^0)$ 輸入이 增加하였다면 그 產業은 우선 需要의 生產彈力度가 낮다는 것을 意味하는 동시에 對 外的으로는 競爭力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반해서 國內生產量이 增加하면(비록 輸出이 減少하더라도) 그 產業은 生產이 需要 에 대해서 彈力的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對外 競爭力을 保有하고 있음을 알게 되다. 그러므 로 開放經濟體制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의 立 場에서는 對內的 및 對外的 市場의 어느 한 곳 또는 모두에서 競爭力이 있을 때 그 產業 을 競爭力이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 서 어느 特定產業에서 對外競爭力의 有無를 판단하는 一次的인 基準은 그 產業에서의 生 產增加率(成長率)이 될 것이다6).

產業別 生產增加率(成長率)의 比較를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指數方式을 使用하기로 한다.

$$\bar{\mathbf{g}}_{i} = \frac{\frac{\Delta X_{i}}{\frac{1}{2}(X_{i}^{0} + X_{i}^{t})}}{\sum_{i} \Delta X_{i}} \dots (12)$$

$$\frac{1}{2} \sum_{i} (X_{i}^{0} + X_{i}^{t})}$$

여기서 ΔX_i 는 式(10)에서와 마찬가지로 i-產業에서 두 時點間의 生產增加量을 말하며 X_i° 와 X_i° 는 不變價格으로 表示된 두 時點에서의

⁶⁾ 例外的인 경우로, 對外競爭力은 있으나 國內消費패턴 의 변화로 國內需要가 減少하여 生產增加率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擴大效果의 크기로 對外競爭力의 有無를 관정하기로 한다.

總生產量이다. 그러므로 \bar{g} :는 全製造業 平均 生產增加率에 대한 i-產業 生產增加率의 比率 로서 그 크기가 1보다 크면 高成長產業(製造 業平均보다 더 빨리 生產이 增加된 產業)이고 그것이 1보다 작으면 低成長產業을 意味하게 되다.

그 밖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충족하는 產業들도 또한 對外競爭力이 있는 產業으를 구분하기로 한다.

나. 輸出擴大效果

위에서 본 바의 產業生產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그것이 0.8 이상이고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度가 20% 이하인 產業도 對外競爭力을 保有한 產業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즉

$$1 > \bar{g}_i \ge 0.8$$

$$\frac{T_i^0 E X_i}{g_i} \ge 20\% \quad \dots (13)$$

다. 輸入代替效果

產業生產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 보다 크고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度가 20% 이상인 產業도 對外競爭力을 保有한 產業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즉

$$1 > \tilde{g}_i \ge 0.8$$

$$\frac{T_i^0 MS_i}{g_i} \ge 20\% \quad \dots (14)$$

計. 純對外效果(輸出擴大效果 및 輸入代替 效果를 합한 純對外效果)

產業生產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 보다는 크고 輸出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를 합한 純效果가 生產增加에 20% 이상을 寄與 한 產業을 對外競爭力이 있는 產業으로 보기 로 하다.

$$1 > \bar{g} \ge 0.8$$

 $T_i^0(EX_i + MS_i)/g_i \ge 20\%$ (15)

3. 資料의 構成

앞에서 說明한 模型을 통해 實證分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韓國銀行의 1975年 및 1980年 產業聯關表를 基本資料源으로 利用하였다.

먼저 1975年의 392×392部門 產業聯關表外 1980年의 396×396部門 產業聯關表를 333× 333部門 產業聯關表로 統合하였다. 이 중 54 部門에서 260部門까지가 製造業部門으로서 우 리의 分析對象이 되었다.

이제 各部門에서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附加價值 比重을 보아 中小企業 中心產業과 大企業 中心產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產業聯關表上에서는 이와 같은 作業을 수행할 수 없기때문에 이를 다시『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經濟企劃院)와 연결하여야만 되었다. 왜냐하면『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에서는 韓國標準產業分類(KSIC)別로 企業規模別 附加價值比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33×333 統合 產業聯關表外 KSIC 5-digit 產業과를 연결하여 各部門別 中小企業 附加價值比重을 計算하여 그 結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L(大企業 中心産業)--大企業 附加價値比 重。] 50% 이상
- SM(中小企業 中心產業)

SM1-中小企業 附加價值比重 50~59%

⁷⁾ 이같은 過程을 거친 分類結果는 金栽元(1985) 〈附表 8〉 에 要約되어 있음.

SM2- " 60~69% SM3- " 70%이상

또 生產量의 增加를 計算하기 위하여서는 各產業聯關表의 生產量을 不變價格으로 換價하여야 된다. 現在 우리나라의 物價體系는 1980年을 基準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75年產業聯關表를 1980年 價格으로 換價하였다. 여기서 使用된 物價指數는 韓國銀行의 『物價總覽』을 利用하였으며 物價總覽에서 細分되지않은 品目別 價格指數는 加重值를 利用하여우리의 333×333統合產業聯關表의 部門과 같아지도록 다시 調整・計算하여 利用하였다.

4. 實證分析의 結果

먼저 우리가 分析의 對象으로 한 產業集團 (sample)의 構成은 〈表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各產業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附加價值比率이 50% 이상인 產業을 中小企業中心產業으로 區分하고 大企業의 附加價值比率이 50% 이상인 產業을 大企業中心產業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分析對象인 207個 I-O部門中

에서 112個(54.1%) 產業이 中小企業中心產 業이었으며 95個(45.9%) 產業이 大企業中心 產業이었다.

韓國標準產業分類(KSIC)에 의한 區分에서 보면 522個의 5-digit產業中 304個(58.2%)產業 이 中小企業中心産業이고 218個(41.8%)產業 이 大企業中心産業이었다.

中小企業中心產業과 大企業中心產業을 產業數로 구분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中心產業의 數가 過半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附加價值比重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中小企業中心產業의 附加價值合計는 325.4(全體=1,000)에 불과한 데 반해大企業中心產業의 附加價值合計는 674.6에 이른다. 이것은 大企業中心產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은 아주 미미한 데 반해 中小企業中心產業에서의 大企業比重은 하주 미미한 데 반해 中小企業大重은 하주 미미한 데 반해 中小企業中心產業에서의 大企業比重은 50% 水準에는 미치지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당한 水準에 있기때문이다. 또 大企業中心產業에서의 全製造業에 대한 附加價值比重이 一般的으로 크기 때문이다.

〈表 1〉 産業集團의 構成

產業區分	中小企業 附加價值	全	製 造	業	高	成 長 産	
生 未 些 ガ	占有率 (%)	I-O部門數	KSIC 產業數	附加價值 比 重	I-O部門數	KSIC 產業數	附加價值 比 重
SM 1	50~59	15 (7. 2)	37 (7. 1)	55. 2 (5. 5)	(9.6)	32 (10. 5)	47. 7 (9. 0)
SM 2	60~69	(8. 2)	64 (12. 3)	85. 4 (8. 5)	(7.9)	23 (7.5)	44.0 (8.3)
SM 3	70以上	(38. 6)	203 (38. 9)	184. 8 (18. 5)	(33. 3)	120 (39. 3)	99.8 (18.8)
中小企業中心產業	50以上	112 (54. 1)	304 (58. 2)	325. 4 (32. 5)	58 (50. 9)	175 (57. 4)	191. 5 (36. 1)
大企業中心產業	50以下	95 (45. 9)	218 (41. 8)	674. 6 (67. 5)	56 (49. 1)	130 (42. 6)	339. 1 (63. 9)
合 		207 (100. 0)	522 (100. 0)	1000. 0 (100. 0)	(100. 0)	305 (100. 0)	530.6 (100.0)

가. 高成長產業의 構成

먼저 高成長產業이란 生產增加率이 製造業 全體의 平均生產增加率보다 더 큰 產業을 말 한다. 이들 産業을 I-O部門數로 보면 總 207 個 製造業部門中에서 114個 部門이 高成長産 業으로 確認되었으며 이 가운데 58個(50.9%) 部門이 中小企業中心產業이었으며 56個(49.1 %)部門の 大企業中心産業の 気中. 58個의 中 小企業中心産業中에서 38個 部門이 中小企業 의 附加價值比重이 70%가 넘는 產業이었다. 이들을 다시 KSIC 5-digit產業에서 보면 總 305個의 製造業中에서 305個 産業이 高成長産 業으로 確認되었으며 이중에서 175個(57.4%) 가 中小企業中心產業, 그리고 130個(42.6%) 產業이 大企業中心產業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比率을 附加價值比重으로 보면 매우 다른 形 態를 보인다. 즉 207個의 I-O部門 또는 522 個의 KSIC 5-digit 產業中에서 高成長產業으로 간주되는 產業(I-O部門으로는 114個部門, KSIC產業으로 305個 產業)들의 附加價值比重은 530.6(全製造業=1,000)이며 이중 36.1%는 中小企業中心產業에 속해 있는 產業들(I-O部門으로는 58個, KSIC產業으로는 175個)의 附加價值比重이며 大企業中心產業의 附加價值比重은 63.9%에 이른다. 이것은 產業數로는中小企業中心產業이 더 많지만 이들 產業들의 全製造業에서 차지하는 附加價值生產比重은 훨씬 작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產業構造가 大企業中心임을 보여주는 셈이다⁸⁾.

나. 產業別 成長要因의 分析

이제 各產業別 및 企業規模群別로 成長(生產增加)의 要因을 보기로 한다. 成長의 要因은 式(11)을 利用하여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表 2〉 産業別・企業規模別 成長要因³⁾

(I-O 部門數)1)

							(10	HH 1350		
	中小企業產業			大	大 企 業 産 業			全 製 造 業		
	高成長	低成長	小 計	高成長	低成長	小 計	高成長	低成長		
輸出擴大產業4)	16 (18. 1)	16 (46.5)	32 (64. 6)	(38. 0)	13 (106. 8)	21 (144. 8)	(56. 1)	29 (153, 3)		
輸入代替產業4)	21 (106. 3)	19 (31. 2)	40 (137. 5)	23 (125. 7)	(33.7)	34 (159. 4)	(232. 0)	30 (64. 9)		
內 需 產 業	24 (74. 3)	(68. 1)	46 (142. 4)	28 (191. 6)	18 (203. 5)	46 (395. 1)	52 (265. 9)	40 (271. 6)		
合 計	61 (198. 7)	57 (1 4 5. 8)	118 (344. 5)	59 (355. 3)	(344. 0)	101 (699. 3)	120 (55 4. 0)	99 (489. 8)		
重複되는產業 ²⁾	(7.2)	(11.9)	6 (19. 1)	(16. 2)	(8.5)	6 (24. 7)	(23. 4)	(20. 4)		

註:1)() 안의 숫자는 附加價值比重(全製造業=1,000)임.

²⁾ 輸出擴大產業과 輸入代替產業에 동시에 포함되는 產業數(附加價值比重)임.

³⁾ 成長率은 1975年과 1980年의 附加價值生產額 比較로 계산하였으며 附加價值比重은 1980年의 全製造業에 대한 各產業別 附加價值比重의 合計임.

⁴⁾ 生產增加率의 크기에 불문하고 輸出擴大効果 및 輸入代替効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產業임.

⁸⁾ 이같은 現象은 또한 海外로부터의 少量注文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frac{T_{i}^{0}f_{i}^{*}}{g_{i}} + \frac{T_{i}^{0}EX_{i}}{g_{i}} + \frac{T_{i}^{0}MS_{i}}{g_{i}} = 1$$

그러므로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率 (T;EX; ×100) 과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 率 $\left(\frac{T_i^o MS_i}{g_i} \times 100\right)$ 이 20% 以上인 產業을 各 各 輸出擴大產業 및 輸入代替產業으로 하고 그밖의 產業들은 國內의 最終需要增加에 의하 고 있으므로 內需產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한 分析의 結果가 〈表 2〉에 要約되 어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 實을 發見하게 된다. 즉, 많은 產業들이 輸入 代替에 의해서 成長이 유도되었다는 점이다. 製造業 全體로 볼 때, 44個의 I-O部門(附加價 値比重으로 보면 全體의 23.2%)이 輸入代替 效果에 의해서 成長이 유도되었으며 이같은 現象은 中小企業中心産業이나 大企業中心産業 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現象은 Nishimizu-Robinson의 研究와 는 매우 다른 結果라고 보여진다⁹⁾. 즉 Nishimizu-Robinson은 準工業國家(semi-industrialized countries)에서 輸入代替는 높은 보호 장벽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輸入代替產業 에서 經濟的效率性(또는 要素生產性)이 일반 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輸入代替產業에서 附加價值生產增 加率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計測되었으므로 위의 發見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現象이 예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첫째는 우리의 分析對象期間(1975~80

年)동안에 우리나라는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國內投資가 급격히 增加하였기 때문에 輸出의 擴大보다는 輸入의 代替가 經濟的效率을 추구하는데 더 效果的이었을 것이라는 전반적 經濟環境에 관한 관점이 있고, 둘째는 그같은 經濟環境下이기 때문에 輸入代替의 誘因政策(防衛產業育成策 包含)이 成功的이었기때문이기도 할 것이다¹⁰.

다. 對外競爭力 保有產業의 規模別 分布

對外競爭力에 있어서는 產業數만을 基準으 로 보면 中小企業中心產業이 더 對外競爭的임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成長速度(低成長 포함)에 관계없이 輸出擴大產業은 中小企業中心產業에 32個, ユ 리고 大企業中心產業에는 21個產業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이들 產業들의 附加價值比重 을 보면 그 結果가 약간 달라진다. 中小企業 中心產業中에서 輸出擴大產業들의 附加價值比 重은 6.5%인 데 비해 大企業中心產業에 속하 는 輸出擴大產業들의 附加價值比重은 14.5% 에 이르렀다. 그러나 輸入代替產業이 13.8%, 大企業中心產業이 15.9%로 대체로 비슷한 水 準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中小企業中心產業 에서의 輸入代替能力이 大企業中心產業에서의 그것에 비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對外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產業의 企業規模群別 分布狀况은 〈表 3〉과 같다. 먼저 高成長產業(輸出擴大效果의 輸入代替效果의 合이 零 이하인 產業은 除外)은 中小企業中心產業에 40個, 大企業中心產業에 43個 포함되어 있다. 輸出擴大產業(生產增加率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 이상이고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產業)

⁹⁾ M. Nishimizu and Robinson S. (1985).

¹⁰⁾ 高成長産業들의 構造的 特徴은 〈附表 1〉에 要約되어 있음・

은 中小企業中心產業에 3個,大企業中心產業에 5個, 그리고 輸入代替產業(生產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 보다는 크고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產業)은 中小企業中心產業에 4個, 大企業中心產業에 2個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관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와 환기가 필요하다. 첫째,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輸出擴大와 輸入代替는 動態的 概念으로 測定한 것이기 때문에 輸出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가 크지 않다고 해서 當該產業에서 輸出能力이나 輸入代替能力이 작은 것으로 評價해서는 안된다. 輸出比率(當該產業 生產總量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率)이 이미 매우 높거나 輸入比率(特定產業에서의 輸入總量이 當該產業 生產總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이미 매우 낮아서 比較時點에서 그것들이 더 增加하거나 더 減少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分析에서는 輸出擴大產業이나 輸入代替產業으로 測定되지 않았기 때문

〈表 3〉 對外競爭力 保有產業의 分布(I-O部門)

	高 成 長 產 業 ¹⁾	輸出擴大 產 業 ²⁾	輸入代替 產業 ³⁾	合計
SM 3	26	3	1	30
SM 2	7	_	2	9
SM 1	7	_	1	8
中小企業中心產業	40 (58)	3	4	47 (65)
大企業中心產業	43 (56)	5	2	50 (63)
合 計	83 (114)	8	6	97 (134)

- 註:1) 産業別 生産增加率指數가 1보다 큰 產業中에서 輸 出擴大效果 및 輸入代替效果의 숨이 0보다 작은 産業은 除外하였음(광호안의 숫자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産業部門數임).
 - 2) 高成長產業에 속하지 않는 產業中에서 生產增加 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 率이 20% 이상인 產業(附表 2參照).
 - 3) 高成長產業에 속하지 않는 產業中에서 生產增加 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 率이 20% 이상인 產業(附表 3 參照).

이다. 이런 理由 때문에 生產增加率 指數가 큰 產業을 對外競爭力 保有產業으로 보았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輸出擴大產業이나 輸入代 替產業을 따로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 意味를 갖게 되는 까닭은 주어진 經濟與件下에서 새 로이 對外競爭의 能力 또는 可能性을 갖는 產 業들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對外競 爭의 能力을 갖는 產業을 골라냄에 있어서 各 産業이 經濟內에서 갖는 比重(附加價値 比重) 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産業數로 하는 데에도 그럴 만한 충분한 理由가 있다. 그것은 우리 가 앞으로 產業構造를 高度化하고 따라서 貿 易構造도 單純品目의 大量輸出方式보다는 産 業內 專門化(intra-industry specialization)를 통해서 交易品目의 多様化가 要請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어느 特定產業이 現在에는 經濟內에서 매우 微微한 比重을 차지하지만 對外競爭力 面에서 可能性(potentiality)을 가지면 育成의 가치가 충분히 認定된다고 볼 수 있다.

N.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는 과거에 高度成長을 추구하는 政 策過程에서 國內의 物價上昇, 不均衡的 產業 支援政策으로 말미암아 產業構造가 크게 歪曲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賦存資源條件과 產業 構造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어떤 特定產業에서 우리나라 가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比 較優位의 利點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그 產業을 育成하기 위해서 많은 生產 資源(또는 生產要素)를 投入하고 있음을 意味 한다. 產業構造가 이렇게 歪曲되어 있으면 資 源의 利用에 있어서 効率性이 떨어져서 앞으 로의 高度成長에 불필요하게 많은 費用을 浪 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産業構造의 歪曲을 是正(產業構 造의 再調整)하기 위해서 우리는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促求하고 活性化된 市場에서 資源이 配分되도록 여러 가지 政策手段을 동원하고 있다. 그 代表的 예가 民間主導에 의한 經濟 運營,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 金融自律化 등이다. 우리는 理論的 模型의 接近을 통해서 위와 같은 여러 政策手段이 成功的으로 効果 를 發揮하면 勞動集約的 生產方式 또는 中小 企業의 經濟活動이 相對的으로 크게 고무되어 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같은 經濟內部에서의 調整過程에서 발생하게 되는 構造的 問題, 즉 資本集約的 産業에서의 相對 的 生產活動 위축이 가져올 過剩施設, 構造的 失業 등의 問題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는 技術開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 면 안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技術의 開發은 產業構造 調整過程에서 발생하는 經濟內에서 의 構造的 問題를 解決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所得의 增加와 經濟의 發展段階가 高 度化되면서 발생하는 國內外市場構造變化에 따르는 構造的 問題를 해결하는데에도 절실하 게 要求된다. 다시 말해서 單純勞動集約的 產 業에서의 比較優位가 아니라 熟練勞動 또는 技術集約的 産業에서의 比較優位号 占하기 위 해서도 필요하게 된다. 즉 產業構造 高度化의 必要性 때문이다. 產業構造가 高度化된다는 것은 產業間 專門化(inter-industry specialization)뿐만 아니라 產業內 專門化(intra-industry specialization)가 深化되는 것을 意味한 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貿易構造도 더욱 細分化된 專門度에 따라 多岐化될 것이다. 다 음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을 통한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輸出의 促進 및 輸 入代替의 可能性을 過去의 資料를 통하여 檢 討하여 보았다. 우리가 사용한 資料는 1975年 과 1980年의 産業聯關表를 比較하는 것이었 다. 1975年은 第1次石油波動으로부터 世界 經濟가 回復하는 時點인 반면 1980年은 第2 次石油波動 이후 世界 經濟가 침체되어 있던 時期였다. 더구나 우리나라 經濟는 政治的· 社會的 不安定과 農業部門에서의 凶作으로 극 심하 침체(負의 成長)를 보였던 時點이었다. 따라서 위의 두 年度가 比較時點으로서는 最 適이랄 수 없겠지만 대체적인 추세와 可能性 만을 보기에는 큰 不便이 없었다.

먼저 207個의 I-O部門을 企業規模別 附加價值比重에 따라 112個의 中小企業中心產業과 95個의 大企業中心產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產業數로는 中小企業中心產業이 더 많았지만 附加價值比重으로는 中小企業中心產業이 32.5%, 大企業中心產業이 67.5%로서 大企業中心產業이 훨씬 더 컸다.

207個의 I-O部門中에서 高成長產業(生產增加率이 製造業 全體의 平均增加率보다 더 큰產業)이 114個로서 中小企業中心產業이 58個,大企業中心產業이 56個이었다. 우리는 生產增加率이 높은 產業을 1次的으로 對外競爭力이 있는 產業에서의 生產增加는 輸出擴大效果,輸入代替效果,內需效果에 의해서 誘導되는데,우리나라는 開放經濟體制를 維持하고 있으므로 內需增加가 輸出의 減少나 輸入增加를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國內에 서의 生產增加를 가져왔으면(需要의 生產彈力 度가 크면) 對外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대문이다. 그러나 高成長產業中에서 輸 出擴大効果와 輸入代替効果의 合이 0보다 작 은 產業(예를 들어 輸入比率의 增加가 輸出比 率增加를 능가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보면 中 小企業中心產業이 40個, 大企業中心產業이 43 個에 이른다. 成長速度에 關係없이 輸出擴大 効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產業數는 中 小企業中心產業에 32個, 大企業產業에 21個, 그리고 輸入代替効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 상인 產業數는 中小企業中心產業에 40個, 大 企業中心產業에 34個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에 產業生產增加率이 製造業平均에는 이르지 못하지만(高成長 產業群에 포함되지 않은 產 業) 그것이 製造業平均增加率에 0.8 이상이고 輸出擴大効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產 業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 3個, 大企業中心産

業에 5個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高成長 產業群에는 속하지 않지만 生產增加率 指數가 0.8 이상이면서 輸入代替効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產業은 中小企業中心產業에 4個, 大企業中心產業에 2個가 포함되어 있다.

產業數만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中小企業中心產業의 對外競爭力(특히 輸入代替效果)이 大企業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관찰은 產業數만을 가지고 본 것이므로 中小企業中心產業에서의 附加價值比重도 產業數의 比率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高度成長을 추구함에 있어서 產業構造의 高度化,輸出構造의 多岐化,輸入代替의 促進 등을 誘導하여야 하며 이들은 모두產業內 專門化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產業數에 의한 관찰도 큰 意味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中小企業育成은 社會政策的 배려로 끝나서는 안 되고 經濟的原理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金栽元,『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總要素生產性 比較一製造業,1970~79』, KDI, 1984.
- ______,『產業構造高度化斗 中小企業의 育 成』,韓國開發研究院,1985.
-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 1975, 1980.
- 韓國銀行,『產業聯關表』,1978,1983.
- _____,『物價總覽』,1982.
- Kim, J.W., "CES Production Functions in Manufacturing and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LDCs: Evidence from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

- tural Change, Oct. 1984.
- Laumas, P.S., "Key Sectors in Some Underdeveloped Countries", KYKLOS, Vol. 28, 1975.
- Nishimizu, M. and S. Robinson, "Trade Polices and Productivity Change in Semi-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Forthcoming.
- Rasmussen, P.N., Studies in Inter-Sectoral Relation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56.

〈附表 1〉 高成長產業

			1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03	위생재료	SM 3	-25.9	59
105	모피 및 모피제품	SM 3	93. 39	-52.55
107	기타혁제품	SM 3	11. 26	32. 81
111	목제가구	L	-40.53	17. 80
112	목제건구	SM 3	43. 15	5, 13
120*	판지	SM 1	-30.15	18. 80
122*	건축용지	SM 3	-0.91	−5.43
123	가공지	SM 3	6. 62	13. 41
124*	지제용기 및 기타지제품	SM 3	5. 96	-27.12
125	사무용지	SM 3	22, 98	28. 66
126	신문	L	6.38	0.68
127	서적 정기간행물	SM 2	-1.50	7.95
129	유기기초화학	SM 1	-33.17	75. 84
134	복합비료	L	19.41	77.47
136	의약품	L	-0.14	9.93
137*	화장품 및 치약	L	-0.23	-0.64
138	합성수지	SM 3	-23.69	39.04
140*	합성고무	SM 3	59. 07	-60.24
142	합성섬유	L	-5.46	35.74
143	염료 유연제 안료	SM 3	49.48	38. 25
144	도 显	SM 2	-7.62	54.61
145	비누 합성세제	L	-0.09	15. 78
147*	사진감광재료	SM 3	21.74	-105.87
148	잉크류	SM 3	1. 53	2. 88
149	방향류	SM 3	-3.54	41.27
151	기타화학제품	SM 3	37. 28	-13.07
156	석탄건류제품	SM 3	-19.93	101. 16
157	타이어 튜브	L	22. 19	32.00
159*	공업용 고무제품	SM 1	40. 97	-53 . 18
161	도자기	L	14. 24	57. 53
163	유리섬유 및 동제품	L	49.72	-21.55
164	산업용 기타유리	SM 1	-7.27	29.62
166	내화용 점토제품	SM 2	-1.61	67. 29
168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SM 2	-1.50	-0.01
172	연마제	SM 3	-2.94	46. 57
173	석제품	SM 3	91. 43	-10.48
174*	키타토석제품	SM 3	9. 69	-27.81
175	선철	SM 2	7.64	53. 02
176*	합금철	SM 2	22. 45	-29.63
177	보통강	SM 2	10. 20	59. 05
178	투수강	SM 2	-10.14	10.81
179	열연강판	L	-8.29	92. 83
180	냉연강판	L	13. 37	46. 27
181	봉강, 형강, 철강	L	21. 72	14. 24
182	강판	L	14. 23	41. 73
	_			

〈附表 1〉의 계속

761147	1/4 /4 4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83	도금강재	L	21.00	32, 93
185*	주철관	L	0.54	-25.07
190	아연괴	L	-7.70	78. 97
191	동암연품	L	-3.99	29. 88
192	알루미늄 압연품	L	-44.82	76. 89
193	기타비철금속압연품	L	-23.98	58.71
194*	기타비철금속일차	SM 1	72, 3	−141. 58
1 95	금속가구	SM 3	-5. 55	10. 54
196*	가정용 금속제품	L	-12.4	-8.8
198	철선제품	SM 2	8, 53	18. 40
199	건설 용금속	SM 1	25. 56	33. 22
202	나사제품	SM 3	16. 55	11.83
203	금속포장용기	L	19.36	44.93
204	금속제품	SM 3	11.24	-3.89
205	원동기	SM 3	-11.84	67. 47
206	금속절삭기계	SM 3	8.44	61. 27
207*	금속가공기계	SM 3	2.5	-24.3
209	목공기계	SM 3	37. 21	-11.93
210	건설 및 광산기계	L	0. 10	75. 54
212	식료품가공기계	L	-2.63	7. 15
213*	기타산업기계	SM 3	1. 72	-58.61
216*	보일러	SM 3	-20.86	-46.67
217	일반기계부분품	L	8.61	18. 08
218	냉장고	L	10. 04	1. 43
219	선풍기	SM 1	10.77	-5.90
220	가정용전자기기	SM 1	9. 98	11. 03
221	발전기 및 발동기	L	2. 24	6. 77
223	송배전기기	L	2. 78	31. 96
224*	기타산업용전기	SM 3	50. 10	-97. 79
225	전선 및 케이불	L	-8.78	28. 76
226*	전구	SM 1	4. 33	-45. 87
229	가정용 전자기기	L	1. 89	17. 25
230	전자응용기기	SM 1	-0.77	84.40
233*	저항기 및 콘덴서	L	-37. 68	22. 04
234*	코일 및 변성기	L	1. 85	-28, 43
235	기타전자부품	L	-21.59	92. 82
236*	유선통신기기	L	5. 24	-29.67
237	무선통신기기	SM 3	-16.48	56. 29
239	목조 및 기타선박	SM 3	89.83	-19.44
240	선박부분품 커드카라	SM 3	573.42 -35.04	-363.36 77.89
241	철도차량 코드리라비프	L	!	1
242	철도차량부품 승용차, 버스, 트릭, 자동차	L L	0. 45 9. 95	9. 46 23. 90
243 244*	자동차 부분품	L	31. 39	-42.63
244*	가능자 구군도 모터사이클	L	-3.33	1.77
△ 4 0 ·	그 이 스타이 린	ъ	- 3. 33	1.11

〈附表 1〉의 계속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247*	항공기수송용기계	SM 3	5. 04	-85.79
248	의료기기	SM 3	-3.63	21. 59
249	계측기기	L	-5.47	4 9. 82
250*	광학기기	L	-46.91	-7.23
251	시계	L	13, 56	12. 76
253*	악기	L	-77.71	-1.12
254	운동용구	L	35, 46	-10.69
255	문방구류	L	1. 22	4. 36
256*	장난감	SM 3	-24.78	-1.0 5
55	낙 농 품	L	−0. 89	4. 82
60	정미제분	SM 3	-4.11	15. 50
62*	엿	L	0.72	-2.96
63*	기타제당	L	-2.22	-20.00
65	과자류	L	4. 44	-2.64
66	면류	L	1. 95	-1.44
7 9	배합사료	SM 3	-4.49	6.31
82	백주	L	-10.83	17. 24
84*	기타주류	SM 3	-8.07	0.09
85*	청량음료	L	-11.20	7. 43
87	면사	L	-0.41	40.88
89	도사	L	87. 63	-22.33
91	화학섬유사	L	7.62	-3.26
93	면직물	SM 1	-40.33	84. 20
94	모직물	L	32. 90	23. 23

註:輸出擴大効果 및 輸入代替効果의 合이 0보다 작은 產業임.

〈附表 2〉 對外競爭力 保有產業 Ⅱ(輸出擴大產業群)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생산증가지수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06	혁제화류	L	0. 882	84. 89	$\begin{array}{c} -0.02\\ 3.62\\ 11.58\\ 5.4\\ -17.63\\ -19.82\\ -24.5\\ 19.66\end{array}$
115	기타목제품	SM 3	0. 94	62. 96	
146	접착제 제라틴	SM 3	0. 906	30. 80	
187	금은비철금속괴	L	0. 87	30. 4	
227	전지	L	0. 890	34. 97	
238	강철제 선박	L	0. 816	67. 81	
260	기타공업제품	SM 3	0. 98	24. 46	
96	화학섬유직물	L	0. 874	69. 86	

註:高成長產業群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成長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出擴大効果의 成長客與率 이 20% 以上인 產業.

〈附表 3〉 對外競爭力 保有產業 Ⅱ(輸入代替產業群)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생산증가지수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35	농약	SM 1	0. 853	-8.00 $ -6.15 $ $ 9.53 $ $ -12.86 $ $ -9.78 $ $ -164.95$	93. 83
184	주철물	L	0. 880		66. 26
211	설유기계	SM 3	0. 837		98. 16
215	재봉기	SM 2	0. 860		96. 21
228	기타전기기	SM 2	0. 835		49. 86
232	반도체소자 직접희로	L	0. 956		90. 12

註:高成長產業群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成長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入代替効果의 成長寄與率 이 20% 以上인 產業.

工業配置政策이 地域隔差解消에 기여한 效果

李 元 暎

- 1. 序
- Ⅱ. 우리나라 工業의 地域的 分布
- Ⅱ. 立地統制政策
- N. 立地誘因政策
- V. 工業團地의 造成
- W. 製造業의 地域間 移轉實態
- W. 結論 및 政策建議

1. 序

우리나라에서 企業의 立地에 관하여 政府의 적극적인 干與가 시작된 것은 1970年度 초반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政策을 통 칭하여 工業配置政策(industrial location policy)이라 한다. 工業配置政策은 여러 가지 수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크게 나누어세 가지 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企業의 立地에 관하여 직접적인 統制를 가하는 政策이다. 公害業所에 대한 移轉命令, 工場新設에 대한 許可制, 開發制限區域의 設定 등이이와 같은 직접적인 統制政策이다. 둘째, 企業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에 立地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政策이다. 地方移轉事業體에 대한 金融・稅制上의 혜택, 地方工業團地入住企業에 대한 地方稅 稅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째, 工業團地의 조성이다".

本稿의 목적은 이와 같은 工業配置政策이 地方經濟의 活性化에 기여한 효과를 分析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政策方案을 모색하는 데 있다.

地域間 工業配置에 관련된 研究는 그동안 여러 學者에 의하여 研究되어 왔다. 朴杉沃과 James Wheeler와의 共同研究(1982)에서는 製 造業 雇傭水準의 변천추이를 計量的 方法으로 分析하였다. 崔相喆과 宋丙洛의 研究(1984)에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本論文의 草稿를 읽고 유익한 비평을 하여 준 郭泰元, 金鍾基 博士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직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오류도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道路,港灣,水資源開發 및 下水道 등의 社會間接資本 施設에 대한 投資도 이러한 政策의 일부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고려는 本稿에서 제외 하였다.

서는 首都圈地域內에 있는 製造業體가 首都圈의 주변지역이나 타지역으로 移轉하는 데 있어서 工業配置政策이 기여한 역할을 설문조사에 의하여 分析하였다. 黃明燦의 硏究(1982)에서는 人口移動, 立地條件의 改善, 產業構造의 轉換 등의 세 變數가, 地域隔差의 變動係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立地條件, 즉 政府의 立地政策은 不均衡化의 방향으로 作用하였음을 밝혀 내었다.

이상에서 言及된 論文 이외에도 工業配置政策과 관련된 研究가 다수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研究는 대체로 地域間의 隔差와 총체적인工業配置政策과의 관계를 計量的으로 分析하는 데 그 主要目的이 있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個別的 政策의 效果를 分析하기보다는 工業配置政策이라는 總體的인 政策의 效果를 分析하였기 때문에 각기다른 政策手段에 대한 個別的 分析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工業配置政策의 制度的 發展을위한 政策樹立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研究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工業의 地域間 配置에 대하여 政府가 간섭하게 되는 理論的 根據로 흔히 公平性과 效率性이 提示된다. 自由市場經濟下에서 公平性은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政府의 역할이 필요하다. 工業立地的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地域間에도 工業化를 하게 된시점의 차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천 등의 이유 때문에 地域間 隔差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地域間 工業化 정도의차이는 필연적으로 地域間의 所得隔差를 수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首都圈과 嶺南圈을核으로 工業配置가 치중됨에 따라 相對的으로

太白圈,湖南圈의 工業化는 정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地域의 1人當所得 역시 낮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工業의 配置에 대하여 政府가 干與함으로써 地域間 工業의 均衡있는 發展을 기하게 되며 이는 또한 地域間 所得分配의 衡平化를 촉진한다.

工業配置政策의 다른 또 하나의 目的은 經濟의 效率性을 높이자는 것이다. 즉 企業의 立地決定에서 市場의 失敗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公害 產業이 住居地域에 入住하는 것은 社會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企業은 이러한 側面을 고려하지 않고 立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政府의 干與가 필요하다. 둘째, 工業의 集積은 人口의 過密化 現象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社會的 費用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首都圈地域에서 야기되는 交通問題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都市의 크기가 適正規模를 초과하면 單位當 輸送量을 처리하기 위한 公共財의 費用이 증가되다.

이와 같이 都市의 크기에는 適正規模가 있어서 그 이하에서는 集積에 의한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나 그 이상에서는 規模의 不經濟가 발생한다. 市場機能만으로 이러한 規模의 不經濟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政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세째, 工業이 한 地域으로 集中되면 필연적으로 勞動力, 즉 人口의 移動이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따른 社會的 費用이 중대된다. 人口集中地域의 住宅問題, 고향을 떠난 失鄕民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地域構成員間의 상이한 年齡分布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의 사회적 문제 등이 이러한 社會的 費用의 몇 가지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人口의 移動

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工業의 配置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結論的으로 工業配置政策의 목적은 公平性과 效率性을 조화있게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흔히 工業配置政策의 목적을 公平性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對價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견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工業配置政策이 經濟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는 方便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工業配置政策을 수립할 때는 效率性과 公平性에 대한 조화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工業配置政策은 大別하여 다 음의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施行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大都市圈 특히 首 都圈의 人口集中을 방지하기 위한 對策이다. 首都圈의 급격한 人口增加는 公害, 住宅, 交 通, 安保 등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 문에 이에 대한 對策으로서 工業配置政策이 施行되었다. 둘째, 地域間의 均衡있는 發展이 다. 60年代 이래 우리나라는 據點成長方式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首都圈과 嶺南圈을 축으로 한 地域은 급격한 성장을 하였으나 餘他의 地 域은 相對的 所得隔差,失業率의 上昇, 故鄉 을 떠난 移住民들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는 곧 落後地域住民의 불만의 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對策으로 製造業의 地方移 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구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목적이 항상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서울中心地에 있던 工場이 서울의 주변지 역으로 移住하게 되면 大都市의 人口分散이라 는 목적은 달성하게 되나 首都圈 이외의 落後 地域의 발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어떤 政策을 評價함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 대한 效果分析은 구분되어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本章에서는 工業配置政策이 미친 영향을 後者에 주안점을 두고 分析하고 자 한다. 다시 말하면 本章에서는 工業配置政策이 大都市圈 人口分散에 미친 영향보다는 落後地域의 活性化에 끼친 영향을 밝히는 데그 주된 목적이 있다.

工業配置와 관련된 政策은 여러 가지 立法 措置에 그 根據를 둔 것인데 그중에서도 核心 이 되고 있는 立法措置는 工業配置法과 地方 工業開發法이다. 工業配置法은 1977年度에 制 定된 것으로 그 목적은 "工業을 合理的으로 配置하여 적정한 工業立地를 조성하고 工場의 再配置를 促進함으로써 過度한 企業의 集中을 방지하여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과 國民福 祉增進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同法에 明記되어 있다. 同法에서는 工業配置基本計劃의 樹立, 工場의 立地, 工場의 再配置 등에 관한 規定 이 있어서 우리나라 工業配置政策의 骨格이 되고 있다. 地方工業開發法은 1970年度에 制 定된 것으로 그 목적은 "工業의 適正한 地方 分散을 촉진하여 地方間의 經濟的 隔差를 완 화하고 雇傭機會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 고 표현되어 있다. 同法에는 地方工業開發 奬 勵地區의 관련하여 指定要件, 造成을 위한 支 援, 財產處分, 租稅減免 등의 규정이 있다.

上記한 두 가지 法令 이외에도 產業基地開發促進法,地方工業法,都市計劃法,中小企業 進興法,輸出自由地域設置法 등이 工業配置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이와 같은 法令을 근거로 하여 施行되는 工 業配置政策은 序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類型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工場立地에 대한 直接的인 規制 및 統制, 둘째, 稅制上의 支援 등에 의한 立地誘因, 세째는 工業團地의 造成이다. 이러한 政策이 각각 獨立的인 것은 물론 아니다. 工場立地에 대한 統制는 工業團地의 造成과 관련되어 있으며 稅制支援 중 일부도 工業團地와관련되어 施行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政策手段 구분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論理展開의 편의상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여 政策의 내용 및 효과를 本稿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 章에서는 우리나라 工業의 地域間 分布의 推移를 살펴봄으로써 1960年代 이후 地域間 隔差가 深化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第3章부터 第5章까지는 우리나라의 工業配置政策을 세 가지 手段別로 分類하여 制度의 現況과 그 効果에 대하여 檢討하였다. 第6章에서는 앞에서 定立된 假設, 즉 移轉促進政策이 落後地域을 活性化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立證한다. 第

7章은 結論 및 이로로부터 導出한 政策建議 가 실려 있다.

Ⅱ. 우리나라 工業의 地域間 分布

本章에서는 60年代 이후 우리나라 工業地域間 分布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된 1962年부터 1983年의 기간중 우리나라의 國民總生產은 不變價格 基準으로 5倍 이상 성장하였으며, 1人當 國民總生產은 87달러에서 1,884달러로 증대되었다. 이 기간동안에는 產業構造에도 큰 변화가 있어서 1962年度에 製造業部門의 附加價値가 國民總生產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9.1%였으나 1983年度에는 29.0%로 중대되었다. 반면에 農水產業部門의 附加價值의比重은 43.3%에서 16.3%로 감소되었다.

〈表 1〉 地域別 人口 및 人口增加率

(단위: 千名, %)

		人口		人	П	比	年平均	增加率	
		1960	1970	1980	1960	1970	1980	1960~70	1970~80
全	國	24,989	31, 434	38, 124	100.0	100. 0	100. 0	2. 29	1. 93
서	웉	2,445	5,525	8,518	9.8	17.6	22.3	8 . 1 5	4. 33
釜	山	1, 164	1,876	3,217	4.7	6.0	8.4	4.77	5.39
京	畿	2,749	3,353	5,024	11.0	10.7	13. 2	1.99	4.04
江	原	1,637	1,865	1,823	6.6	5.9	4.8	1. 30	-0.23
忠	北	1,370	1,480	1,451	5.5	4.7	3.8	0.77	-0.20
忠	南	2,528	2,858	3,009	10. 1	9.1	7.9	1.23	0.51
全	北	2,395	2,432	2,329	9.6	7.7	6.1	0. 15	-0.43
全	南	3,553	4,005	3,848	14. 2	12.7	10. 1	1.20	-0.40
慶	北	3,848	4,556	5,051	15. 4	14.5	13. 2	1.69	1. 03
慶	南	3,018	3, 119	3,383	12. 1	9.9	8.9	0.33	0.81
濟	州	282	365	471	1.1	1. 2	1.2	2.58	2, 55

資料: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 第2篇 人口定着 基盤의 造成(科을:國土開發研究院, 1982), p.3

이와 같은 급격한 經濟成長과 產業構造의 변천과정에서 地域間의 人口 및 產業의 分布 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表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釜山을 중심으로 한 大 都市圈域의 人口는 급격한 성장을 한 반면 餘 他地域의 인구는 감소 내지는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0年의 全國人口에 대한 地域 別 人口比重을 볼 때 서울, 京畿, 釜山, 濟州 를 제외한 全地域에서 1960年에 비하여 減少 하였다. 附言하면 2次, 3次產業이 集積되어 있는 大都市圈域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한 반면 1次產業이 상대적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 고 있는 全羅道와 忠淸道 地域의 人口는 감소 내지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地域別 製造業의 分布 또한 많은 변화가 있 었다²⁾. 이를 地域別 製造業從業員과 附加價

値 및 이들의 構成比가 산출되어 있는 〈表 2〉 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從業員數를 기준 으로 하면 1960年에 서울・京畿地域과 釜山이 포함된 慶南地域 比重은 46.6%인 반면 1970 年에는 그 比重이 56.8%로 증가되어 서울・釜 山을 중심으로 한 地域으로의 製造業集中現象 이 심화되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1970年代 에도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1980年에는 서울・ 京畿・釜山・慶南地域 製造員 從業員이 全國 製造業從業員數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73.2% 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製造業偏重現 象에서 70年代에는 60年代와 다른 특징을 보 이고 있다. 즉 60年代에는 大都市, 즉 서울과 釜山의 比重이 증가한 반면 70年代에는 서울 의 比重은 감소하고 釜山의 比重은 거의 변화 가 없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60年代에는

〈表 2〉 製造業의 地域別 分布

			1	960		1970				1980				
		製造業	從業員	製造業附	加價值	製造業	從業員	製造業附	加價值	製造業從業員		製造業附加	製造業附加價值	
		(千名)	(%)	(百萬원)	(%)	(千名)	(%)	(百萬원)	(%)	(千名)	(%)	(百萬원)	(%)	
全	國	275	100.0	21,866	100.0	861	100.0	549,793	100.0	2,015	100.0	11,856,589	100.0	
서	울	64	23.3	675	30.9	292	33.9	183, 132	33. 3	445	22. 1	2, 193, 110	18.5	
부	산		•••	} ·	•••	137	15.9	82,260	15.0	319	15.8	1,317,589	11.1	
경	기	28	10.2	2,302	10.5	104	12.1	61, 102	11. 1	479	23.8	2,770,843	23.4	
강	원	9	3. 3	891	4. 1	19	2.2	5,824	1. 1	23	1. 1	173, 130	1.5	
충	북	7	2. 5	131	0.6	20	2, 3	19, 463	3.5	40	2.0	221,066	2.3	
충	남	22	8.0	1,272	5.8	45	5.2	41,008	7.5	88	4.4	555, 068	4.7	
전	북	17	6.2	1,088	5. 0	36	4.2	23, 578	4. 3	55	2.7	313, 445	2.6	
전	남	17	6.2	964	4.4	42	4.9	16,334	3.0	67	3.3	781,548	6.6	
경	북	44	16.0	3, 100	14. 2	99	11.5	45, 441	8.3	263	13. 1	1,656,891	14.0	
경	남	65	23.6	5, 308	24. 3	60	7. 0	69, 925	12.7	231	11.5	1,811,058	15. 3	
제	주	2	0.7	59	0.3	5	0.6	1,726	0.3	4	0.2	12,841	0. 1	

資料:經濟企劃院,『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년도.

²⁾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간의 產業分布의 變遷를 알기 위해서는 製造業뿐만 아니라 農水產業, 서비스業 등의 推移가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하나, 이중에서도 製造業의 分布가 地域經濟에 가장 큰 영향은 주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 만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製造業體의 集中現象이 大都市에서 나타난 반 면 70年代에는 대도시 주변지역으로의 集中現 象이 나타났다.

製造業의 大都市圈 集中現象에 따라 大都市 圈 以外地域에서의 製造業의 成長은 둔화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製造業從業員의 比重은 1960年에는 6.2%, 1970年에는 4.2%, 1980年에는 2.7%로 감소되었다. 물론 製造業從業員의 絕對數는 그 기간동안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이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製造業附加價值를 기준으로 하여 各道別 製造業構成比를 살펴보아도 製造業從業員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유사한 추세임을 〈表 2〉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60年代와 1970年代의 우리나라 製造業의 成長은 大都市圏域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大都市圏域 이외의 지역에 서는 製造業이 별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는 곧 혼히 제기되고 있는 國土의 兩極化現象이 동기간중에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立地統制政策

立地統制政策은 크게 분류하여 공장의 新設 또는 增設에 대한 許可와 移轉命令으로 구분 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政策의 現况 과 效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대한 申告 및 許可

工業配置法에 의거하면 공장 대지면적 또는 건축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을 新設" 또 는 별設하고자 할 때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신고에 대해 商工部長官은 소정의 審査基準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審査基準은 다음과 같다.

- 製造業種別 工業建築面積에 대한 垈地面 積의 比率
- 2) 工場用地에 綠地帶 등 環境施設의 설치
- 3) 特定地域에 관한 製造業種別 立地條件
- 4) 公害業所의 立地制限
- 5) 工業配置基本計劃의 地域別 配置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위의 기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事業計劃의 조정변경을 명할수 있다. 따라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許可制를 실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할수 있다. 同制度는 英國의 工業開發許可制度(industrial development certificate)와 유사한 제도로 工業立地에 대한 모든 統制權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政策이 地域間 均衡開發에 이용될 수 있는 根據는 立地基準 3) 항과 5) 항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5) 항에 명시된 바와같이 工業配置基本計劃의 地域別 配置를 심사기준으로 택함으로써 공업을 낙후지역에 立地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施行過程을 보면 이러한措置의 대상을 大都市圏域에만 적용되고 있다. 보다 엄밀히 표현하면 이러한 공장의 신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製造業은 영위하는 경우 도 해당됨.

설 및 증설에 대한 통제는 수도권역에 국한 되어 운영되고 있다.

工業配置基本計劃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首都圈整備法에서는 수도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공업의 재배치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수도권내에서의 企業의 분산, 즉 開發制限地域으로부터 開發誘導地域으로 企業이 신설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하겠다. 따라서 공장의 신설 또는 중설에 대한 許可制는 기업이 수도권내의 어느 지역에 立地할 것인가에 대한 統制手段으로서만 이용되고 있는 반면 낙후지역으로 공업의 立地를 촉진하고자 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 移轉命令

工業配置法 第15條에 의거하면 商工部長官은 移轉促進地域에서 移轉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移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移轉命令은 미리 移轉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 移轉時期 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고한 후 施行되며 移轉命令을 받은 공장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移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現行 工業配置法上에는 移轉對象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업종만이 移轉對象이 되고 있다. 移轉命令 시행시 고려되는 두 가지 기준은 地域經濟의 安定的・均衡的 發展과 國防上・國民經濟上의 필요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移轉하여야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工業配置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移轉命令을 企業의 立地를 통제하는 수단중

가장 강력한 방편으로 그 대상이 法令上으로 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大都市 圈의 公害業所에 대한 초치에 한정되고 있다.

大都市圈의 公害業所에 대한 移轉命令이 19 70年부터 1980年까지의 사이에 127件이 있었는바 115件은 京畿地域으로, 6件은 慶南地域으로 移轉하였다. 따라서 移轉命令에 의한 工業의 再配置效果는 공해업소를 대도시로부터 그주변지역으로 移轉시키는 데 국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許可制와 移轉命令은 法의 취지상 地域開發을 위해 工業을 再配置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施行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단이 낙후지역 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 정이다. 立地統制政策이 이와 같이 매우 조심 성있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市 場經濟를 왜곡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 해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 政策運用에 있어서도 直接的인 統制手段이 낙후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사용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통제수 단보다는 間接的인 誘因施策이 資源分配의 왜 곡을 줄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地域經濟 活性 化를 위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수단보다는 다음 章에서 어급될 間接的 誘因手段을 사용 하는 것이 國民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N. 立地誘因政策

落後地域 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각종 誘因

施策이 施行되고 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誘 因施策의 現况과 效果를 분석한다. 本章에서 고려된 誘因施策은 地方移轉準備金制度, 地方 移轉 사업의 施設投資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 또는 一時償却,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 得稅, 特別附加稅 및 法人稅의 면제, 地方稅 의 면제이다. 本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 한 誘因制度가 갖는 총체적인 地方移轉促進效 果에 대한 논의가 있다.

1. 地方移轉準備金制度

同制度는 租稅減免規制法 第41條에 구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企業으로 하여금 大都市圈 안에 소재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移轉하는 데 소요되는 資金을 충당하기 위하여 準備金을 설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地方移轉準備金 은 당해 課稅年度 종료일 현재의 工場施設價 額의 10% 이내에서 積立이 허용된다. 準備金 을 益金으로 算入하는 시기는 적립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移轉에 소요 된 금액의 1/3씩 3년간 益金에 산입한다. 準 備金이 이전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準備金을 설정한 후 4년째가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그 초과분을 益金으로 산 입한다. 이 경우 法定利子相當額을 所得稅 또 는 法人稅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러한 準備金制度의 혜택은 기업이 당해년 도에 내야 할 세금을 연기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립된 금액에 부 과될 세금만큼을 無利子로 적립기간동안 대부 받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이를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積立額이 x일 때 당해년도의 稅額減少에 의한 이득은 xt이다. 여기서 t는 法人稅率로 現稅法上 30%(이윤이 5천만원 이 상인 경우) 또는 20%(이윤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積立額을 4년이 경과한 후 1/3씩 3년간 益金에 산입하게 되면 기업은 세액감소 액만큼을 모두 납세하게 된다. 납세의 시기를 연장해 주는 이러한 積立金制度의 혜택은 積立額 1單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t - \frac{t}{3(1+r)^4} - \frac{t}{3(1+r)^5} - \frac{t}{3(1+r)^6}$$
.....(1)

여기서 r은 적립기간 중 적용되는 年割引率이다. 年割引率을 10%로 가정하면 積立額 1單位에 대한 혜택은 이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약 11.3%이며 이윤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약 7.5%이다.

積立額이 移轉費用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액에 대하여 加算金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계산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移轉費用을 적립하는시기에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이 기업의 割引率보다 높은 한 기업은 積立을 移轉費用이 초과하도록 계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이 移轉費用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를 과대하게 計上한 경우에는 積立額이실제 移轉費用을 초과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고려는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끝으로 積立額의 上限線이 工場施設價額의 10%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移轉費用이이려한 上限線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移轉費用이 上限線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準

備金制度의 혜택은 移轉費用 1單位에 대하여 式(1)에 표기되어 있는 만큼이며, 移轉費用이 上限線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準備金制度의 혜 택은 上限線 이내의 移轉費用에 대하여만 부 여되다.

2. 地方移轉事業의 施設投資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또는 一時償却

租稅減免相制法 第43條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지방으로 工場施設의 전부를 移轉하여 사업을 시작한 때,移轉後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事業用 資產에 대하여는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혜택이 적용된다.

- 1) 當該投資金額의 100분의 6(國產機資材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 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
- 2) 當該資產의 취득가액의 50%를 移轉한 남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一時償却

移轉에 따른 投資를 y라 하고 稅額控除率을 s라 하면 稅額控除에 따른 納稅額의 감소는 y·s이다. 따라서 納稅 전을 기준으로 할 때 同制度에 의한 投資 1單位에 대한 혜택은 다 음과 같다.

$$\frac{s}{1-t}$$
(2)

이윤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이 國產機資材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면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投資 1單位에 대해 약 14%임을 알 수 있다.

一時償却을 선택한 경우의 혜택은 減價償却에 있어서 定率法을 사용한 경우와 定額法을 사용한 경우와 定額法을 사용한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施設材의 耐用年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정하에서 定率法이 定額法보다 유리하므로 定率法의 경우만을 선택하여 一時償却의 혜택을 알아보자. 定率法下에서 投資 1單位當 現在價值는

$$Z(\hat{\delta}) = \frac{\hat{\delta}}{r + \hat{\delta}} (1 - e^{-(\delta + r)T}) \quad \dots (3)^{4}$$

여기서 $\hat{\delta}$ 는 稅法上 耐用年數를 減價償却率로 환원한 것이고, r은 割引率이며, T는 稅法上 耐用年數이다. T와 $\hat{\delta}$ 의 相關關係는 다음과 같다.

$$\hat{\delta} = -ln(0.1/T)$$
(4)

그리고 50%의 一時償却이 허용된 경우 投 資 **1**單位當 現在價值는

$$Z(\hat{\hat{\boldsymbol{\delta}}}) = \left\{ \frac{1}{2} + \frac{1}{2} \cdot \frac{\hat{\boldsymbol{\delta}}}{(r + \hat{\hat{\boldsymbol{\delta}}})} (1 - e^{-(\hat{\boldsymbol{\delta}} + r)T}) \right\}$$

$$(5)$$

따라서 投資 1單位當 50% 一時償却에 의한

〈表 3〉 50% 一時償却의 惠澤

<u>할인율</u>	0.05	0. 10	0. 15	0.20	0. 25	0.30
5	0. 0252	0. 0342	0.0422	0. 0493	0. 0556	0.0612
10	0.0342	0.0493	0.0612	0.0708	0.0787	0.0852
20	0.0493	0.0708	0.0852	0. 0953	0. 1027	0. 1084
25	0.0556	0. 0787	0.0931	0. 1027	0. 1096	0.1148

⁴⁾ 數式 처리의 편의상 連續模型을 가정하였다. 실제의 減價償却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連續模型은 실제에 대한 近似值로서 耐用年限이 길어질수록 誤差는 작아진다.

總租稅減免額의 現在價值는

$$B = \left\{ \frac{1}{2} - \frac{1}{2} \cdot \frac{\hat{\delta}}{(r + \hat{\delta})} (1 - e^{-(\delta + r)T}) \right\} \cdot t \tag{6}$$

t:法人稅率

이다. 앞의 공식으로부터 投資 1單位當 혜택을 몇 개의 割引率과 耐用年限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表 3〉에 있다. 〈表 3〉로부터 割引率이 10%, 일반적인 機械類에 대한 耐用年限으로 볼 수 있는 10년의 耐用年限인 경우,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4.9%임을 알 수 있다.

3.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 特別附加稅 및 法人稅의 稅除

租稅減兇規制法 第42條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당해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移轉補償金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및 法人稅를 면제한다.

讓渡所得稅란 讓渡時와 購入時 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購入時보다 가격상승이 큰 경우는 이에 부과되는 稅額도 크게 되며, 따라서 同制度에 의한 혜택 또한 크다. 반면에 購入時보다 讓渡時에 가격상승이적은 경우는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적어진다. 또한 讓渡所得稅率은 대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同制度에 의한 혜택 또한 달라진다.

4. 地方稅의 歿除

地方稅法 第110條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지방으로 移轉한 경우 지방에서 취득한 不動産에 대하여 登錄稅 및 取得稅를 면제한다. 現稅法上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3%, 취득세는 2%이므로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부동산가액의 5%이다.

5. 地方工業獎勵地區에 입주한 企 業體에 대한 地方稅免除

地方稅法 第110條에 의하면, 工業配置法 規定에 의한 誘致地區에 입주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부동산가액의 5%이다. 특기할 사항은 同制度는 앞에서 제시된 稅法上의 支援과는 그 성격이다르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제시된 稅制上의支援은 모두 大都市圈에서 지방으로 移轉하는기업에게 부여되는 혜택인 반면 同制度는 地方工業獎勵地區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된다. 즉, 신규기업체이거나 大都市圈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移轉하여 온 기업에게도 그혜택이 부여된다.

6. 誘因施策의 移轉促進效果

앞에서 大都市圈에서 지방으로 移轉하는 事 業體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內容과 그 혜택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支援制度의 移 轉促進效果를 검토해 보자.

논리 전개의 편의상 먼저 立地的 特性에 대

하여 中立的인 事業體를 고려하자. 여기에서 중립적인 사업체란 大都市圈에 위치하건 지방 에 위치하건 事業體 運營上 차이가 없는 사업 체를 일컫는다. 이러한 사업체에게는 원료구 입, 제품배달, 인력고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에 立地함으로써의 損益이 大都市圈에 立 地함으로써의 損益과 상쇄되어 대도시와 지방 의 立地的 與件이 동일하다.

중립적 사업체일지라도 移轉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이 필요하다. 첫째, 既存施設을 移轉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生產工場의 경우 현재의 生產施設을 철거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데는 많은 비용이소요된다. 둘째, 移轉할 수 없는 施設이나 토지・건물 등을 매각하고 새로 구입하는 데 따른 去來費用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용이 따르겠으나 우선적으로 이상의 두 가지 비용에 대하여 現行稅制上의 혜택으로 얼마만큼 보상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로 하자.

前項에서 설명하였듯이 移轉費用에 대하여는 準備金制度의 혜택이 없다. 그러나 準備金制度의 혜택은 移轉費用의 일부만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移轉費用 전부를 보상하여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移轉費用에 관한한 現稅制上의 혜택만으로는 中立的 事業體長지방으로 移轉시킬 수 있는 誘因策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移轉할 수 없는 資本財에 대한 去來費用을 생각해 보자. 移轉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매각한 資本財의 現時價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資本財의 時價가 같은 경우 이러한거래에 따르는 諸稅와 公課金만 면제된다면移轉에 따르는 去來費用은 仲介料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새로운 공장 구입에 따른 取得稅・登錄稅의 면제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資本財의 매각과 구입에 따르는 去來費用은 現稅制上의支援에 의하여 상당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

現稅制上에는 이러한 去來費用의 면제뿐만 아니라 移轉業體가 새로이 투자하는 시설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나 一時償却이 허용된다. 준비금제도나 양도소득세, 지방세의 면제가 移轉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소극적 대책이라면 投資稅額控除(또는 一時償却)는 移轉하는 기업체에 부여되는 積極的 誘因策이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투자가 많을 경우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커지며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을 경우는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적어진다.

결론적으로 現行稅制下에서 地方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移轉費用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準備金制度에 의하여 보상되나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移轉에 따른 施設投資에 대하여 稅額控除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부담과 혜택을 비교함으로써 기업은 移轉與否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移轉費用은 기업이 직접 지불하여야 하는 可視的인 비용인 반면 稅額控除나 一時價却의 혜택은 세액감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지불해야 할 移轉費用 100萬원이 稅額控除에 의한 혜택 100萬원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稅額控除나 一時價却은 기업이 공제할 稅額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收

益性이 불확정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심각하 다. 稅額控除의 혜택은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향유할 수 있기 때문 에 그 혜택의 의의가 그리 크지 않다. 반면에 移轉費用은 사업의 收益性 與否를 막론하고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비용 지불을 꺼린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의심하는 기업 에게는 稅額控除에 의한 혜택의 期待値가 지 출해야 할 移轉費用보다 클지라도 移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稅額控除나 一時償 却에는 現稅制上에 綜合限度의 適用對象이 되 므로 현재 종합한도를 초과한 기업에게는 實 利益이 없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기업이 稅額控除나 一時償却을 향유하기 위하여 移轉 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移轉에 따르는 비용이 앞에서 제시한 移轉費用과 去來費用만 있는 것은 아니다. 移轉을하는 동안 操業을 중단하게 됨에 따르는 不利益, 기업체와 같이 이주해야 하는 중업원에 대한 보상 등 여러 가지의 불이익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업의 移轉에는 기업 자체가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旣存從業員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操業을 중단하게 됨에 따르는 불이익 등의 간접적인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기업은 객관적으로 볼 때 立地與件이 좋은 곳으로 移住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영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現行 稅制上의 誘因施策만으로는 立地에 대하여 中立的 企業體의 경우에는 이전을 유도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立地的으로 지방이 불리한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는 더욱 어

렵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現行 稅制上의 支援은 立地的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전에 따르는 비 용의 부담이 과다하여 이전하지 못하는 기업 에게는 移轉誘發效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에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上 場企業을 대상으로 地方移轉準備金의 利用實 態를 조사한 결과 總 318個 기업중 2個의 기 업만이 準備金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로부터 알 수 있듯이 地方移轉에 따르는 稅制 上의 惠澤은 거의 利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現行 稅制上의 支援을 통한 地方 移轉誘發效果는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 려 이러한 支援制度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移轉命令을 받은 기업체의 不利益을 감소시켜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겠다.

V. 工業團地의 造成

工業團地란 기업을 집단적으로 誘置하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造成・開發된 일단의 工業 用地를 말한다. 工業團地를 조성하여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包括的 經濟開發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入住企業體에도 도움을 준다. 즉 入住企業體들은 상호접촉을 극대화 내지 전문화함으로써 기업간의 集積利益을 얻으며 公共施設에대한 支援을 받는다.

工業團地를 조성하는 목적을 大別해 본다면 첫째,國家基幹產業이나 主要施策事業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과,둘째,首都圈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공장을 분산시키고 지방 및 工業寡少地域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工業團地는 어디에 조 성하느냐는 것과 공업의 지역간 배치와 밀접 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工業團地의 現况과 地域間 配置를 조사하여 工業團地의 造成이 地域經濟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工業團地에 入住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들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前章에서 언급된 地方移轉에 따르는 稅制上의 惠澤이 부여된다. 또한 각 團地의 類型別로 入住業體에 대한 支援이 있다. 産業基地開發區域에 대하여는 특정대상사업의 경우 金融支援을 하고 있다. 中小企業示範團地의 경우 우선육성업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輸出自由地域에 입주한 기업은 外資導入法上에서 부여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表 4〉에는 1983年 현재 전국적으로 旣造成

된 主要工業團地 44個所를 團地의 類型別로 분류하여 각각의 設置根據法, 지정단지수, 총 면적, 총종업원수, 총생산액 등을 수록하였 다. 공업단지중 조성면적으로 보나 종업원수로 보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產業基地 開發區域은 주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產業基地로 개발되었다. 產業基 地開發區域은 1985年 현재 전체 44개 공업단 지 조성 총면적의 79%, 총종업원수의 43%, 1983년도 총생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세분하여 중화학기지와 특 수기지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表 5〉에 수록되어 있다. 地方工業開 發獎勵地區는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으로 地 域間의 所得隔差를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지방공 업개발장려지구는 〈表 6〉과 같이 전국에 산재 되어 있다. 中小企業示範團地는 중소기업진흥 을 위해 설치되 것으로 모두 6個所에 지정되

〈表 4〉 工業立地開發制度

	根	his	法	既造成主	造成對象面積(于m²)¹)	總從業員 數 ¹⁾	總生產額的
	從	據	伍	(지정단 지수)	造品	式	未造成	計	(千名)	性 (10億원)
① 產業基地開發區域	産業基地開 포) 및 石 (62년 공포)	油化學エ	(73년 공 業育成法	11(21)	95, 6	644	54, 511	15 0, 155	257. 6	11, 211
(韓國輸出工團 1, 2,3團地)	輸出產業工	 朝開發進	成法	1(1)	1,9	78		1,978	64. 0	1,886
② 地方工業開發獎勵 地區	地方工業開	發法(70)	년 공포)	15(25)	22, 1	61	2, 461	24,622	97. 3	1,695
③ 工業地域	都市計劃法((71년 공	-王)	10(16)	10, 4	74	218	10,692	137. 7	2,514
④ 工業誘致地域 및 中小企業示範團地	工業配置法(小企業進興)			5(11)	9	76	125	1, 101	6.4	38
⑤ 輸出自由地域	輸出自由地 王)	域設置法	(70년 공	2(4)	1, 1	133		1, 133	40. 1	581
⑥ 農漁村地域工業開 發促進地區	農漁村地域》 (84년 공포)	所得源開)	發促進法	0(7)		0	0	0	0	0
계				44(85)	132, 3	366	57, 315	189,681	603. 1	17,925

註:1) 旣造成主要團地 44個所에 대한 數值

2) 蔚山石油化學團地

資料:商工部,『工業團地現况』, 1985.

었으나 이중 천안, 정읍, 나주공단만이 정상 수입하여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다. 수출자유 운영되고 있다. 輸出地域에서는 外國人投資企

지역은 마산과 이리 등 2個所에 있다. 業이 원료 또는 반제품을 관세없이 자유로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업단지에 관한 개략적

〈表 5〉 產業基地開發區域의 開發現况10

團 地 名		地域別	造成	對象面積	(千m²)	入 住業體數	從 業 數	1983 生産額		
		262300	造成	造 成 未造成 計		(個)	行都	(10億원)		
반	월	냥	<u>:</u>	경기	6,687	1,434	8, 121	638	31. 4	462
H	평	공	단	강원	50	1,280	1,330	2	0.3	210
여	천	-37	단	전남	11,990	4,485	16, 475	34	5.4	2,821
구	υÌ	FO	댇	경북	12,506	190	12,696	229	50. 1	1,227
五	항	7	단	"	4,821	1,721	6,542	76	13. 2	452
창	원	3	EL.	경남	17, 332	8,572	25,904	128	45. 2	1,226
울 /	산 • ¤	王	등 단	"	29,252	22, 269	51,521	118	69.1	2,814
온	산	<u> </u>	단	//	5,246	11,686	16,932	15	5.6	996
죽			도	//	2,149	1,825	3,974	1	3.8	91
으			垩	"	3, 101	89	3, 190	2	30.0	402
울선	<u></u> 노석유	화학	공단	11	2,510	960	3,470	20	3.5	510
	7	4			95,644	54,511	150, 155	1,263	257.6	11,211

註:1) 査業基地開發區域으로 지정된 21個所 중 앞의 〈表 1〉의 既造成主要團地 11個所에 대한 資料.

資料:商工部,『工業團地現况』,1985.

〈表 6〉 地方工業開發獎勵地區의 開發現况1)

團 地 名	地域別	造成	對象面積((千m²)	入 住 業體數	從 業	1983 生産額
图 地 石		造成	未造成	計	(個)	(千名)	(10億원)
춘천지방공단	강원	494		494	27	1.8	35
원주지방공단	"	397		397	22	1.7	48
청주지방공단	충북	2,116	641	2,757	80	18. 2	369
충주지 방 공 단	"	21	1,222	1,243	3	0.2	1
대전지방공단	충남	1,256		1,256	87	12.0	272
전 주 지 방 공 단	전북	1,326	_	1,326	60	10.6	241
이리지방공단	"	1,108		1,108	90	10.5	159
군 산 공 단	"	2,943	208	3, 151	31	2.0	94
광주지방공단	전남	2,771		2,771	211	10.2	145
하 남 공 단	"	1,534		1,534	76	0.6	3
목포지 방 긍 단	"	460		460	39	5.5	59
순천지방공단	"	592		592	10	5.7	56
는 공 공 단	경북	3, 309		3,309	76	2, 7	24
양 산 공 단	경남	1,547		1,547	67	7.7	162
진 주 상 평 공 단	"	2,287	390	2,677	217	7.2	27
계		22, 161	2,461	24,622	1,096	97.3	1,695

註:1) 地方工業開發法으로 지정된 25個所 중 앞의 〈表 1〉의 旣造成主要團地 15個所에 대한 資料. 資料:商工部,『工業團地現况』,1985.

설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공업단지들이 지역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로 하자. 〈表 7〉에는 地域別로 工業團地의 分 布狀况이 수록되어 있다. 〈表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 • 경기지역과 부사이 포 함된 경남지역은 조성면적의 59%, 업체수의 53%, 종업원수의 63%, 생산액의 59%를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工業團地의 偏重現象은 製造業의 偏重現象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공업단지의 조성 에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按配가 결여되 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업단지의 偏重 現象은 〈表 2〉에서 알 수 있듯이 産業基地開 發區域의 경우에는 더욱더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工業團地造成은 集積의 이익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역간의 균형있는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地域間의 不均衡的인 工業發展에 가장 큰 원

인이 되고 있다. 더우기 그 규모에 있어서나 經濟的 波及效果가 큰 產業基地開發區域이 주로 영남권에 편재되어 여타지역의 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地方工業獎勵地區는 이러한 공업단지 偏重現象을 다소 시정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나 그유치대상업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경공업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支援策의 未備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효과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W. 製造業의 地域間 移轉實態

앞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工業配置政策이 大都市에 있는 企業을 移轉토록 하는데 치중되고 있으나 그 實效性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역 설하였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假說을 1970~ 80年 期間中의 企業體에 移轉實態를 살펴봄으

〈表 7〉 工業團地의 地域別分布1) (1981년 1월 현재)

	造成	對象面積(刊	-m²)	業體數	從業員數	1983
	造成	未造成	計	(個)	(千名)	生産額 (10億원)
총 계	137, 287	111,325	248, 612	4,213	575.3	17,480
서울특별시	2, 163		2, 163	322	68.0	1,931
부산직할시	934	-	934	86	0.8	_
경 기	13,854	26,738	40,592	1, 199	87.5	1,684
강 원	1, 100	2,433	3,533	118	3.9	293
충 북	2, 137	2,300	4,437	83	18. 4	370
충 남	2, 165	1,527	3, 142	141	12.7	278
전 북	5, 898	241	6, 139	209	27.2	550
전 남	18,752	14, 499	33, 251	445	324	3, 107
경 북	21,850	4,473	26, 323	950	115.6	2,505
경 남	65,047	59, 124	124, 171	650	208. 5	6,760
제 주	-	- '			_	_

註:1) 全國工業團地 80餘個所 중 상공부가 집계한 69個所에 대한 統計資料임.

資料: 商工部,『工業團地現况』, 1985.

로써 立證하고자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上記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工業配置政策이실시되기 이전, 즉 70年代 初盤以前과 70年代中盤以後를 분리하여 事業體의 이전실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資料의 제약 때문에 이와같은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도 기업체의 이전은 극히드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역설된 가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고생각된다. 즉 工業配置政策이 施行된 70年代中盤以後가 포함된 통계에 의하면 事業體의이전 자체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며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대도시로부터 大都市圈域으로 이전한 것이 밝혀졌다.

〈表 8〉에는 1970~80年間 국내기업체의 地域間 移轉內譯이 수록되어 있다.〈表 8〉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總 1,092個 事業體

가 지역간에 이동을 하였다. 그중에서 大宗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서울地域에서 仁川이나 京 畿道로 이전한 업체로, 이들을 제외한 移轉事業體는 318個에 불과하다. 製造業分野의 사업체가 1970年度에는 약 2만4千個였으며 1980年度에는 약 33個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이지역간에 이전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있다. 전북지역의 예를 들면 1970~80年間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하여 온 기업체는 8個業體,타지역으로 이주해 간 업체는 4個業體에 불과하여 企業體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다고 판정된다.

〈表 9〉에는 移轉後의 所在地別 移轉事業體 의 移轉事由分布가,〈表 10〉에는 이전하기 전 의 所在地別 移轉事由分布가 나타나 있다.

이 중에서 企業體의 자발적인 意思에 의한 동기라 할 수 있는 사업상의 편의, 集團化에

〈表 8〉 地域間 移轉事業體

(단위:個)

													(217	1 ・ 1座ノ
轉入地	서울	釜山	大邱	仁川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二
서 울		2	1	10	28				1		1			43
釜 山	3		1							1		3		8
大 邱	2										5	1		8
仁川	102	1	1		24									128
京 畿	672	6	2	30			1			1				712
江 原	6													6
忠 北	1	1	1		5			1			1			10
忠 肓	17	1	1	1	4				1			2		27
全 北	5	1			1					1				8
全 南	3				2				1					6
慶 北	16	1	33		2				1			1		54
慶 南	7	65		2	6	1		1						82
濟 州														0
ā†	834	78	40	43	72	1	1	2	4	3	7	7	0	1,092

資料: 經濟企劃院,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82.

⁵⁾ 續工業센서스에 의한 調査結果가 있지만 이는 1970~80年 기간동안의 事業體 移轉을 전체적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工業配置政策의 효과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의한 이익, 기타에 해당되는 업체의 수는 697 個이며 政府施策에 의한 이전이라고 해석할 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데 국한 수 있는 政府施策 呼應이나 移轉命令에 해당 되는 업체의 수는 335個이다. 特記할 사항은 政府施策 呼應이나 이전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중 92%가 서울로부터 京畿道地域으로 이전하

였다. 따라서 工業配置政策의 效果는 企業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 前所在地別・事由別 移轉事業體

(단위:個)

前所在地	事業上便 宜	集團化에 의 한利益	政府施策 呼 應	移轉命令 (公害業所)	土地收用	其 他	計
서 울	477	14	159	113	48	23	834
釜 山	41	1	23	7	4	2	78
大 邱	26	0	8	1	1	4	40
仁 川	26	2	8	2	1	4	43
京 畿	49	2	8	3	5	5	72
江 原	1	0	0	0	0	0	1
忠 北	1	0	0	0	0	0	1
忠 南	2	0	0	0	0	0	2
全 北	4	0	0	0	0	0	4
全 南	2	0	0	1	0	0	3
慶 北	3	0	2	0	1	1	7
慶 南	5	1	0	0	0	1	7
濟 州	0	0	0	0	0	0	0
計	637	20	208	127	60	40	1,092

〈表 10〉 現所在地別・事由別 移轉事業體

(단위:個)

現所	在地	事業 上便 宜	集團化에 의 한利益	政府施策 呼 應	移轉命令 (公害業所)	土地收用	其 他	計
서	울	34	1	0	1	2	5	43
釜	口	6	1	0	0	0	1	8
大	邸	3	0	1	0	1	3	8
仁	Ш	89	6	12	10	8	3	128
京	畿	405	7	135	105	38	22	712
江	原	2	0	3	1	0	0	6
忠	北	5	1	3	0	1	0	10
忠	南	15	0	6	2	3	1	27
全	北	0	3	2	1	2	0	8
全	南	5	1	0	0	0	0	6
慶	北	29	0	20	1	1	3	54
慶	南	44	0	26	6	4	2	82
濟	州	0	0	0	0	0	0	0
計		637	20	208	127	60	40	1,092

₩. 結論 및 政策建議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工業配置政策을 立地 統制政策, 立地誘因政策, 工業團地의 造成으 로 분류하여 이러한 정책이 낙후지역 경제활 성화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첫째, 立地 統制政策으로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의 허가 와 이전명령이 있는바 그 효과는 대체로 대도 시에서 그 주변지역으로의 工業再配置에 국한 되어 낙후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는 거 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立地誘因 政策으로는 지방이전 준비금, 지방이전사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또는 일시상 각,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 가세 및 법인세의 면제, 지방세의 면제 등이 있지만 이러한 誘因施策은 立地的으로 中立的 인 企業體의 지방이전을 유발하기는 불충분하 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째, 工業團地의 造成 또한 지역경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 한 수단이나 파급효과가 큰 重化學基地나 特 殊基地가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의 격차 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경계의 활성화를 위 해 설정된 지방공업단지는 이에 따른 지원수 단의 미비로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앞에서의 假設을 立證하기 위하여 1970年부터 1980年 기간중 기업체의 이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체의 수는 모두 합해서 318個로서기업체의 이전이 工業配置政策에서 의도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工業配置政策의 효과는 대

도시로부터 대도시권역으로 기업체를 再配置 시키는 데 치중된 반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 소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行 工業配置政策의 問題點은 정책의 焦點이 기업체의 이전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신규기업이 낙후지역으로 立地하도록 하는 조치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체의 이전이란이에 따른 각종의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를稅法上의 誘因施策으로 促進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이를 强制的 統制手段으로 시행하려고 하면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여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큰 沮害要因이 될 것이다.

반면에 신규기업의 立地는 선정하는 과정에 서 그 결정을 租稅 또는 金融上의 誘因策으로 영향을 주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기업이 란 끊임없이 生成 또는 消滅되는 것이므로 낙 후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이 생성되는 것은, 즉 공업의 대도시권으로부터 낙후지역으로 재 배치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 서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정책의 主 眼點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부언하면 移轉을 중시하는 시책으로부터 새로운 기업이 落後地 域에 立地하도록 유인하는 시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政策의 方向이 旋回되어야 할 것이 다. 다른 나라의 工業配置政策은 移轉促進과 新規企業의 地方入住誘因의 두 가지 次元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後者에 중점을 두 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 점을 준다.

新規企業의 地方立地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政策方案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 째, 현재 首都圈域에서 실시되는 것과 유사 한 방법을 적용하여 全國土를 整備區域과 開發誘導區域으로 분류하여 開發誘導區域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移轉企業에 주고 있는 稅額控除나 特別減價償却 등의 租稅減免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른 租稅收入의 감소가 문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控除率이나 償却率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한편 減免惠澤을 限時的으로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外國人投資企業을 開發誘導區域에 설립할 수 있도록 誘因手段을 제공한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기업체의 설립에 있어서 緣故地에 대한 選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공업이 발달되지 못한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그지역 출신의 企業人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 부진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

답한다. 그러나 外國人投資企業은 근본적으로 地域緣故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유인책을 부여한다면 開發誘導區域으로 立地 토록 유인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外國人投資企業을 開發誘導區域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의 가능한 방안은 현행 外資 導入法上에서 租稅 休日이 허용되는 기준에 開發誘導區域에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를 포함 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향후 工業團地의 造成에 있어서 지역간의 按配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특히 各種稅制나 金融惠澤이 부여되는 特殊基地의 건설에 있어서 이를 開發誘導區域에 조성토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 建設部, 『第5次5個年計劃 建設部門 修正計劃』, 1983.
- 經濟企劃院,『第5次5個年經濟 및 社會開發計劃』, 1981.
- ______,『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1970,19 80, 1982.
- 國土開發研究院,『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 國土開發基盤의 擴充』, 1982.
- _______,『全羅北道 綜合開發計劃 (1982~19 91)』,1982.
- _____,『首都圈整備基本計劃案』, 1981.
- 徐昌源,「國土開發斗 地域隔差에 관한 研究」, 『國土研究』,1982.
- 李廷植,「全北開發 무엇이 問題인가?」, 『蘆 嶺』, 1982.12.

- 全羅北道廳,『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1981. 全北大學校,『전라북도 장기개발계획을 위한 기본구상』, 1982.
- 전주청년회의소, 『2000年代를 위한 全北圈地域開發 심포지엄』, 1984.
- 韓國產業銀行,『韓國의 產業:上,下』, 1984. 黄明燦,「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國土 研究』, 1982.
- _____,「地方化時代에 부응한 地域開發의 方向」,『國土計劃』,1984.
- Cameron, Gordon C., "The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and Regional Policy", Regional Policy, 1979.

- Choe, Sang-Chuel and Byung-Nak Song, "An Evaluation of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for Urban Deconcentration in Seoul Region". 『環境論叢』, 1984.
- Hanushek, Eric A. and Byung-Nak Song, "The Dynamics of Post-War Industrial Loc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8.
- Kwon, Won-Yong, "A Study of the Economic Impact of Industrial Relocation; The case of the ROK", Journal of Urban

- Studies, 1982.
- McCrane, Gavin, Regional Policy in Britain, 1969.
- Park, Sam-Ock and James O. Wheeler,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And Manupacturing Employment Change; The Case of the ROK", Regional Development Dialogue, 1983.
- Sweet, Morris L.,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New York, Praeger, 1981.

우리나라 醫藥產業의 現况과 技術水準向上方案

 鄭
 鎭
 勝

 韓
 培
 宣

- 1. 序
- Ⅱ. 醫藥產業의 現况
- Ⅲ. 技術水準向上方案

1. 序

1983年末 國內醫藥品 生產實績은 1兆2,500億 원으로 262個 純粹醫藥品製造會社에서 8,526 個 品目을 生産・供給하고 있다. 이는 1981年 기준으로 共產圈을 제외한 全世界市場規模의 1.5%로 世界 10位의 市場規模를 意味한다.

全世界 醫藥品의 需要는 人口增加와 抵開發國의 福祉向上에 힘입어 年平均 약 6.6% 增加하여 2000年에는 2,700億달러에 到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새로운 需要增加에 대

筆者:鄭鎭勝一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韓培宣一韓國開發研究院 研究員 한 市場占有率을 높이기 위하여 全世界 醫藥 企業들은 加一層 研究開發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需要가 예상되는 藥效 別醫藥品으로는 抗癌劑「스테로이드」製劑 등 을 들 수 있으며, 地域別로는 아직도 醫藥產 業이 발달되지 않은 南美와 아프리카 등 抵開 發國의 醫藥品 需要伸長率이 높음은 우리나라 醫藥產業이 有望成長產業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醫藥產業이 國內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規模面에서 GNP의 약 2%에 불과하나 同產

〈表 1〉 世界의 醫藥品 需要豫想

(단위: 億달러)

	1980	1990	2000	증감율 (%/년)
서 구	250	452	700	5. 3
미 국	150	240	350	4.3
아 세 아	170	330	760	7.3
동 구	120	220	340	5.3
날 미	30	120	320	12.6
아프리카	20	70	210	12. 5
호 주	10	20	20	3.5
계	750	1,500	2,700	6.6

資料: Chemical Age, June 19, 1981.

^{*} 本稿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해준 李永琪博士에게 感謝 드리며 本研究의 어떠한 미비점도 筆者의 責任임을 밝 혀둔다.

業은 硏究開發을 통해 國民健康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精密化學產業의 技術開發을 主導한다 는 점에서 그 重要性이 再認識되어져야 한다.

精密化學은 重化學工業과는 달리 에너지 및 資源節約型이며 小規模施設投資가 所要되는 技術集約的・高附加價值產業으로 우리나라의 諸與件에 적합하여 輸出有望產業으로 育成이가능한 產業이다. 또한 精密化學製品은 대부분이 他產業의 中間材로 폭넓게 활용되어 產業의 生產性提高와 品質向上을 決定하는 要素이다. 따라서 產業構造의 高度化와 製品의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통한 輸出增大와 經濟의安定的 成長을 위하여 精密化學產業은 政策的으로 시급히 育成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本報告書는 第 II 章에서 우리나라 醫藥產業의 企業規模 및 雇傭現况,生產 및 貿易,財務 및 經營分析,流通構造,技術 移轉 및 技術開發 등의 分析을 통하여 現况을 파악하였으며,第 III 章에서는 醫藥產業의 持續的 成長에 요구되는 技術水準向上을 위한 方案을 提示하였다.

11. 現 况

1. 業體規模 및 雇傭現況

1983年 우리나라 全醫藥製造產業 320¹⁾業體 의 生產規模別 構成比 現况을 살펴보면 生產 額이 100億원 이상인 30個業體가 전체 生產의 72.4%를 차지하는 반면 全體業體의 65%에

해당하는 208個 業體의 生產實績은 10億원 미 만으로 전체 醫藥業體 生產額의 3.9%에 불과 하다. 從業員 雇傭規模別로는 300名 이상 雇傭 하는 業體가 醫藥產業 全體雇傭人員에서 차지 하는 雇傭比重이 1981~83年期間中 각각 44.4 %, 49.5%, 52%로 增加하고 있다. 즉 國內 醫藥製造產業은 많은 零細業體가 亂立된 상태 에서 少數의 大企業이 先導하는 寡占의 構造 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市場構造 는 技術水準이 낮으므로 產業進入에 따른 큰 障壁이 없기 때문에 小規模零細業體들의 亂立 이 가능했었고 先頭 大企業과 零細業間의 隔 差의 深化는 주로 資本力에서 비롯된 것이다. 後述하겠지만, 즉 資本力이 큰 企業들이 外國 大企業과 商標 혹은 原料供給提携를 통하여 國內에 新藥을 導入하는 經營方式으로 外的 成長을 추구한 결과이다. 1千餘種에 불과한 原料醫藥品으로부터 8,526個 品目의 完製品을 生產하는 醫藥產業은 類似醫藥品의 범람으로 인한 過當競爭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는 特 性을 갖고 있다.

醫藥產業의 產業上 比重²⁾은 生產面에서 精密化學工業의 40.8~49.0%, 化學工業의 6.1~8.4%를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精密化學產業에서 醫藥產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1982年 기준 49.0%로서 우리나라 精密化學工業은 醫藥品產業을 主軸으로 成長 發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生產

純粹醫藥品 生產實績은 前述한 바와 같이 19 83年에 12,500億원에 육박하고 있다. 品目數 로는 前年對比 5.3%(429品目)가 증가한 8,526

¹⁾ 의약품, 소분품, 부외품, 위생용품 포함.

²⁾ 韓國化學研究所,『戰略化學製品 市場分析』, 1984.

個 品目이 生產되었으나 品目當 平均生產額은 15,000萬원으로 多品種 少量生產의 精密化學特性을 나타내고 있다. 藥效別 生產規模는 抗生劑가 제일 크며 두번째로는 大衆藥의 性格이 강한 滋養强壯變質劑(주로 드링크劑)로서成長率이 全體醫藥品成長率을 每年 上回하고 있다.

純粹醫藥品 生産의 약 9%를 차지하는 原料 醫藥品의 生產은 1970年 초반부터 政府의 原 料工業育成策에 힘입어 1970~76年 期間中 年 平均 59%를 넘는 增加率을 記錄하였으나 대 다수의 品目이 같은 系列의 基礎研究와 연결 되지 못하고 最終工程에서 一段階前 中間體률 輸入하여 간단한 最終段階를 合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1977年을 기점으로 伸長勢가 급 격히 減少하여 國產原料의 自給率은 51.8%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生產되는 巨大 原料들은 外國에서 斜陽品目의 범주에 속하는 品目으로 輸出을 통하여 生產額 伸長에는 큰 기여를 하였으나 輸出價格이 內需價의 22~72 % 수준에 불과하며 原料生產을 위한 中間體 가 外國에서 輸入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純 粹外貨加得効果面에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3. 貿 易

醫藥產業의 輸出入規模는 1976~80年 期間中 年平均약 40%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고 1980年을 前後하여 純粹醫藥品의 貿易收支는 完製醫藥品과 原料의 꾸준한 輸入增加로 인하

여 약 3:1의 輸入超過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貿易逆調現象은 輸入自由化 施策과 國 民所得의 증대에 따른 醫療費의 증대로 더욱 深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輸 出

1983年 醫藥產業은 原料 3,900萬달러와 完 製品 1,000萬달러를 81個國에 輸出하였다. 특 히 日本,美國,西獨,印度,방글라데시, 스 위스 등 대부분이 醫藥物質特許3)를 認定하고 있는 國家들에 전체의 64%를 輸出하고 있음 은 輸出品目의 대부분이 特許期間이 끝난 斜 陽品目임을 意味한다. 醫藥品 輸出의 80%를 차지하는 原料醫藥品輸出은 「사카린」(1,480萬 달러),「유로키나劑」(550萬달러),「젤라틴 캡 슐」(347萬달러)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는 반면 1983年 현재까지 物質特許가 存續되고 있는 品 目은 Cimetidine(9萬달러)과 Piperacillin(0.6 萬달러)으로서 總原料輸出額 3,867萬달러의 약 0.26%에 불과하여 아직 品目의 多樣化 및 高級原料醫藥品의 輸出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輸 入

우리나라는 1982年 이전까지 국내에서 生產 되고 있거나 治療劑가 아닌 不要不急한 完製 醫藥品 輸入을 억제하여 오다 1983年 1月 1日 부터 政策的으로 25個 醫藥品 輸入을 開放하 였으나 1983年度 完製醫藥品의 輸入은 前年對 比 1%의 증가에 그쳐 492個 品目의 2,364萬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중 10萬달러 이상 輸 入되고 있는 品目은 44個 品目으로 藥用비누와 치약을 제외하면 輸入의 당위성이 대부분 認 定되는 品目들이다.

³⁾物質特許란 特許가 化學的 方法으로 製造된 物質 그 自體에 부여되는 것으로 精密化學工業製品에 직접 關 聯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特許法 第4條에 物質特許 를 認定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醫藥品 輸入의 主宗을 이루는 製藥原料(中 間體 포함)의 輸入은 1,500餘 品目에 달하며 金額面으로 1981年度 90,630萬달러이던 것이 34% 증가하여 1982年에는 125,440萬달러로 증 가하였으며 1983年에는 4.2%가 증가한 131, 230萬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들 品目의 主要 輸入先은 日本, 스위스, 西獨, 이태리, 美國 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占有하고 있다.

政府는 1983~85年 期間中 94個 藥効群의 完製醫藥品과 43個 原料에 대하여 段階的으로 輸入開放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輸入自由化 品目들은 대부분 斜陽品目이거나 國內企業이 競爭力을 確保한 品目으로서 原料에 관한 한 輸入自由化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나 完製品의 輸入自由化는 該當品目의 國內 原料生産 意慾을 抵下시킬 가능성이 있다.

4. 財務 및 經營分析

가. 成長性

較的 무관하게 1980年代 初까지 年平均 약 30 %를 넘는 높은 伸長率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81年 이후 醫藥產業의 生產增加率 은 國內市場이 포화됨에 따라 전체적이 減少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所得增大에 따른 高價 醫藥品에 대한 購買力 上昇과 國民 醫療保險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年 10 % 내외의 成長이 예상되지만 醫藥產業이 國 内市場을 目標로 한 販賣 위주의 經營方式에 서 技術開發을 통한 輸出產業으로 企業의 目 標를 전환한다면 국내 醫藥業界는 다시 하번 高度의 成長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收益性

販賣費와 一般管理費의 높은 支出에도 불구 하고 收益性이 總賣出額의 약 4~5% 수준으 로 他業種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醫藥品의 마 진이 높을 뿐 아니라 比較的 건전한 財務構造 로 인하여 借入金融費用의 부담이 적기 때문 인 것으로 解釋되다. 그러나 產業의 成長率 減 國內醫藥企業은 國內經濟의 好・不况에 比 少의 外國合作會社의 增加 및 競爭深化에 中

〈表 2〉 年度別 醫藥品 輸出入 推移

(단위:1,000달러)

		수			출			宁			입		수임
	제약위	년 료	완제의	약품	계	원료	제 약	제약원료		약품	-37	워료	수입 총액 수출 총액
	금 액	신장율	금 액	신장율	Ai	원료 구성	금 액	신장율	금 액	신장율	계	원료 구성	총택
1975	10,064		2,330	142. 5	12, 394	81. 2	40,00	5 - 8.9	3, 194	2.8	43, 199	92. 6	3. 5
1976	13, 347	32. 6	4, 181	79.4	17,528	76. 1	38, 42	3 - 4.0	4,233	32. 5	42,656	90.0	2.4
1977	16,605	24. 4	5, 279	26. 3	21,884	75. 9	48, 37	9 25.9	5,834	37.8	54, 213	89. 2	2. 5
1978	22,743	37. 0	6,411	21. 4	29, 154	78.0	72,95	50.8	10,683	83. 1	83,638	87. 2	2. 9
1979	33,421	47. 0	6,574	2. 5	39, 985	86. 0	96,76	5 32.6	15, 721	47. 2	112, 486	86.0	2.8
1980	35, 190	5. 3	7,548	14. 8	42, 731	82. 4	93,73	-3.1	12,933	-17.7	106, 668	87.8	2.5
1981	36, 147	2. 7	10,662	41.3	46,809	77. 2	90,62	8 -3.3	13,068	1.0	103,696	87.4	2. 2
1982	40,972	13. 3	8,432	-20.9	49,404	82. 9	125, 43	38.4	23, 399	79. 1	148, 838	84. 2	3.0
1983	38,687	-5.6	10,394	23. 3	49,061	78, 8	131, 22	4.6	23,639	1.0	154, 867	84. 7	3. 1

資料:藥業新聞,『'83 藥事總鑑』.

른 販賣促進費의 增加와 輸入自由化 政策 등 으로 인하여 收益率은 점차 下落될 것으로 예 상된다.

다. 安定性

우리나라 醫藥企業은 일부 上場企業의 경우 株式市場을 통한 增資로 自己資金을 조달하지 만 대부분은 金融借入 또는 會社債發行을 통 하여 資金을 調達하고 있다. 최근 많은 企業 의 資金需要가 增加하고 있는 이유는 保健社 會部 規定에 의한 KGMP(우수의약품 제조관 리기준)의 强制實施에 따른 工場建設, 外國企 業體들이 국내 提携企業에게 合作會社 設立을 강요함에 따라 발생하는 資金需要와 一部企業 의 附設研究所의 設立 및 擴充에 따른 施設投 資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醫藥企業의 負債比率은 每年增加하여 1978年 161%에서 1983年에는 190%에 달하고 있으나 全製造業中 時計製造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가장 높은 自己資本比率을 보유하고 있으며,企業의 明滅이 심한他產業과는 달리 法定管理企業인 三省製藥(株)을 제외하고는 醫藥企業의 不實化나 파산이 많지 않다.

라. 活動性

活動性面에서 보면 1982年 統計를 기준으로 볼 때 全製造業 總資本回轉率이 1.2인 데 비 해 醫藥業이 1.1로 낮아 總資本 및 自己資本의 回轉과 外上賣出의 回數가 느려짐에 따라 醫藥業界의 活動性은 점차 鈍化되어 가고 있으며 자금압박도 증대되고 있으나 賣出營業利益率로 본 收益性은 16.21%로 全製造業의 平均 7.40%보다 높음으로써 低賣出高利潤型을

나타내 주는 指標라고 할 수 있다.

마. 生產性

醫藥業은 附加價值率이나 從業員 1人當 附加價值面에 있어서 製造業과 石油化學工業에비하면 높은 高附加價值業種이다. 그러나 從業員 1人當 賣出額이 製造業 전반과는 비슷하나 石油化學工業의 절반 정도인 것은 醫藥業이 非裝置와 少量多品種產業이라는 점 외에우리나라 醫藥業의 改善課題인 비대한 販促社員의 存在를 立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5. 流通構造

人間의 生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醫藥品의 製造, 去來, 造劑 및 投藥 등 流通上의 取扱은 法에 規定된 資格과 免許를 所持한 者에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醫藥企業들은 研究開發을 통한 市場確保보다는 販賣指向的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을 뿐 아니라 最終消費者에게 醫藥品을 去來, 造劑하는 藥局의 수가 過多하여 醫藥品流通過程에서 不合理한 販賣競爭을 誘發하고 있다.

1982年 藥師免許를 所持한 藥師數는 26,307名에 달하며 이중 64.6%인 16,995名이 就業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日本 및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世界的으로도 매우 높은 藥師人力을 保有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특히 國內藥師의 대부분이 1人 自營藥局을 經營하는 경향이 높아 藥局 1個當 人口數는 世界最下의수준에 머물러 藥局間의 過當競爭誘發要因이되고 있다.

醫藥企業의 亂立과 同種・類似製品의 生産 으로부터 발생되는 極深한 市場競爭에서 生存

또한 醫藥品中 藥事法에 의하여 規定된 國家檢定 醫藥品, 결핵치료제 등 주요 치료제는 專門誌 이외의 大衆廣告가 禁止되어 있으며 비록 法에 의하여 廣告가 規制되지 않는 抗菌劑·드링크劑의 誤·濫用으로 인한 부작용이 認定되는 製品은 大衆廣告를 禁止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內醫藥業界의 1982年度 總廣告費 支出額은 總賣出額의 9.4%로서 美國의 5%와 日本의 2.8%에 비해 매우높다. 國內生產醫藥品中 廣告의 大宗을 이루는 品目은 비타민제, 소화효소제, 소염진통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무좀치료제, 피부연고제 및 치질용제 등이며 品目에 따라서는 短時日內에 市場占有率을 增大시키기 위하

〔圖 1〕 醫藥品流通構造

여 廣告費가 生產額의 2倍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國內生產醫藥品中 大衆醫藥品의 比重이非正常的으로 높아 國內醫藥業의 廣告가 販賣增大를 위한 主要手段이 되고 있음은 事實이나 廣告費의 過多한 支出은 企業經營의 상당한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數年前醫藥企業間에 廣告費 자제를 위한 合意가 이루어진경우가 있으나 1個月도 못 가서 과기된 사실과英國의 경우 廣告費를 賣出額의 9% 이내에서規制하는 法을 設定한 이래 醫藥企業의 財務構造의 建實化가 이루어졌음은 國內醫藥業界와 政策樹立者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하겠다.

이상의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하여 政府는 1984年 9月 1日부터 標準小賣價格制度를 實施하여 流通마진率을 30~35%로 정하고 上下 10%의 범위내에서 販賣業者가 價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制度는 去來秩序上의問題點들을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으나 醫藥品 製造會社가 二元化된 販賣方法을 유지하면서 病・醫院을 통한 直去來와 할증 및 할인 販賣가 계속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없다. 특히 同制度는 流通段階別 마진을 明示하지 않고 있으며 醫藥品製造業體의 類似都賣行為를 稅制上 規制치 않음으로 인하여 病・醫院에 대한 直去來를 더욱 深化시킬 가능성마지 있다.

이러한 不合理한 流通構造는 企業間의 극심 한 競爭으로 販賣先에 대한 過多한 外上賣出 을 감수하면서 販賣額을 늘리려는 醫藥業體의 苦肉策에서 起因된다.

〈表 3〉에 의하면 매출채권의 增加가 賣出額 과 總資本의 增加를 比率面에서뿐만 아니라 絕對額에서조차 上廻하고 있음은 심각한 사실 이라 할 수 있다. 前述한 대로 醫藥企業이 賣 出額 總利益率 및 納入資本利益率과 純利益率 에서 他業種의 추종을 不許할 정도로 높은 것 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利益이 매출채권으로 남는 경우 企業은 새로운 投資나 研究開發을 위한 現金動員能力을 상실하게 되며 계속적인 販賣競爭의 악순환을 맞게 되므로 이러한 外 上賣出의 폐습을 일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政府의 政策樹立이 절실히 요망된다.

6. 技術移轉

醫藥業界의 技術移轉은 政府의 許可를 받은 原料供給과 商標 사용으로 대표되는 品目 및技術提携와 合作會社를 통한 技術導入으로 구분된다. 1982年 國內 62個 醫藥會社는 237個의 外國會社와 技術 및 品目提携를 통하여 687個 品目을 生產하고 있으며 이미 設立된 30個 合作會社 중 生產活動을 하고 있는 15個業體의 生產品目 339個를 합치면 全體品目 8,097個의 13.4%에 불과하나 生產金額面에서技術移轉을 통하여 生產되는 品目의 比重은 훨씬 크다. 예컨대 1982年統計에 의하면 國內市場에서 20億원 이상의 販賣實績을 가진 44個 巨大品目(滋養强壯變質劑 및 드링크類 제외)중 技術 및 品目提携(16個)와 合作生產

品目(8個)을 합친 24個品目의 生產金額은 86, 052百萬원으로 賣出額 20億원 이상 品目 總賣 出額 157,752百萬원의 54.5%에 달하고 있다.

가. 合作投資 現况

國內에서 生產活動을 하고 있는 15個 合作會社의 1983年 生產實績은 1,469億원으로 전체 生產額의 11.7%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合作會社의 市場占有率은 現在 工場을 設立중이거나 앞으로 設立될 약 20個의 合作會社들이 生產活動을 시작할 경우 急增할 것으로 예상된다.

合作會社의 增加原因은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外國企業과 技術 및 品目提携를 통하여 國內企業이 生產하던 品目 중 成功品目에 대하여 外國企業이 合作會社의 設立을 强要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앞으로의 漸進的인 輸入自由化와 物質物許 導入을 염두에 둔 國內企業이 外國의 技術先을 確保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合作會社의 증가는 國內醫藥業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合作會 社의 外國企業은 賣出額 및 研究開發投資規模 에서 世界 30大企業群에 속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이들과 技術 및 品目提携로 急成長할 수 있었던 國內醫藥企業들의 市場占有率은 크

〈表 3〉 醫藥 上場企業의 賣出債券과 資本金 推移

(단위:百萬원, %)

	총자본		매출채권	매 章	매 출 액		음과 외상	매출금	자	본 총	계
	회전율 (회)	회 전 율	회 전 율 (회)	금 액	증가율	금 액	전년비 증가액	전년비 증가율	금 액	전년비 증가액	전년비 증가율
1980	1.3	3.8	4.2	319,009		75, 956			84,981		
1981	1. 2	3.4	3.5	338,450	6.1	96,700	20,744	23. 7	99, 105	14, 124	16.6
1982	1. 1	3.3	3.0	421,359	24.5	140, 453	43,753	45. 2	127, 517	28,412	28. 7
1983	1. 1	3.3	2.9	474, 709	12. 7	163, 693	23, 240	16. 5	143, 132	15,615	12. 2

資料:東西證卷,『'84 上場企業財務分析』.

게 縮小될 것이며, 收益率 또한 크게 減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新製品의 國內導入이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外 國에서 成功하거나 成功可能性이 있는 新醫藥 品을 國內醫藥會社가 情報를 入手하여 相對外 國企業과 品目 혹은 技術提携를 통하여 國內 에서 生産・販賣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合作會社가 國內에 存在하는 경우 충분한 需 要가 예상되는 新藥의 대부분을 外國醫藥企業 은 合作會社를 통하여 직접 生產・販賣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合作醫藥企業은 屬性上 硏究開發은 더욱 경시될 가능성이 높다". 合 作會社의 經營目標가 外國母企業의 製品中 國 內市場에서 有望한 品目을 生産・販賣하여 類 似製品을 制壓하고 國內市場을 席卷하는 것임 을 감안할 때 合作會社로부터 技術移轉效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 으로 合作會社의 國內市場占有率이 增加함에 따라 國內企業의 收益性이 惡化되어 技術開發 投資能力을 상실할 경우 國內醫藥產業의 技術 開發은 더욱 어려운 狀況에 처할 것은 물론 合作會社는 原料輸入을 통한 製劑中心의 生産 活動을 함으로써 國際收支에 否定的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나. 技術提携 現況

國內 上位 5大 醫藥企業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均 48個 品目을 外國企業과의 技 術提携를 통하여 生產하고 있으며 技術提携品 目이 많을수록 企業의 伸長率도 높다. 國內醫

(表 4) 上位 5大 內國企業의 提携現况 (1983.3. 현재)

순위	국내기업	국가수		제휴생산 품 목 수	
1	동아제약	8	24	72	31.8
2	종 근 당	6	9	35	30. 3
3	유한양행	7	15	60	25. 4
4	동화약품	4	5	30	31.3
5	영진약품	6	19	43	20.5

藥企業이 技術提携를 통하여 製品을 生產・販賣하는 이유는 첫째 新藥의 경우 國內에서 一定期間(보통 1년)의 獨占的 新藥保護라는 特惠를 받으면서 國內市場을 先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둘째로는 醫藥品製造許可를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生理學的 實驗資料를 外國의 提携先으로부터 提供받아 許可期間과 費用을 節減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國內 醫藥企業들은 新藥導入을위하여 競爭하고 있으며 結果的으로 外國企業에 유리한 조건으로 契約을 締結하여 國家的으로 막대한 損失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技術提携의 主要內容은 商標權 實施와 製劑 및 品質管理技術에 국한되어技術導入形態가 國內醫藥產業의 技術水準向上에 미치는 效果는 국히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國內醫藥企業들은 技術水準向上과는 무관한 品目을 技術提携하여 販賣活動에 치중함으로써 企業의 外的成長을 이룩하여 行態面에서 合作企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技術開發

하나의 新藥을 成功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⁴⁾ 李東石,「우리나라 醫藥產業의 技術移轉과 技術蓄積 에 관한 研究」, 연세대, 경영대학원 碩士論文 [우리나 라 合作會社의 研究開發費 및 研究員의 規模는 같은 規模의 國內企業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나타냈음].

는 높은 위험도 아래에서 장기간에 걸친 막대 한 投資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新製 品開發의 1次過程은 新物質의 發見 및 物質의 藥理活性 硏究에서 시작된다. 일단 開發된 物 質의 特性이 認定될 경우 企業은 特許申請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약 3 ~5年이며 費用은 全體研究開發費의 약 30% 가 所要된다. 發明者는 第2段階로 物質이 人 體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 위하여 各種의 毒性檢查⁵⁾(toxicology test)를 행하게 되며, 동시에 物質을 보다 經濟的으로 大量生產하기 위한 秘法技術(know how)의 開發에 注力한 다. 이와 같은 절차는 4~6年이 필요하며 新 藥開發費의 약 55%가 投入된다. 1~2次過程 을 통과한 物質을 治驗藥(investigated new drug)이라고 부르며 第3段階로 4次에 걸친 臨床實驗을 통하여 新藥의 製品化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시에 新藥發明 者는 大單位 生產工場의 設立 및 關聯政府機 關에 新藥製造申請(new drug application)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第3段階過程은 약 3~ 4年이 所要되며 總硏究開發費의 약 15%가 소 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新物質 開發 을 위한 全過程에는 약 10~12年의 기간이 소 요되며 최초의 發明된 物質이 복잡한 實驗過 程을 통하여 製品化될 가능성은 약 1/6,000~ 1/7,000에 불과하며 製品이 市場에서 成功할 確率은 약 1/35,000로 新藥開發의 위험도는 매우 높다. 또한 投資費用에 있어서도 이러한

確率과 利子率을 감안한다면 약 5,400百萬달 러로 추정된다⁶⁾. 이상의 新藥開發過程과 各段 階別 國內 技術陣의 研究能力 및 施設狀况을 要約하면 〈表 5〉와 같다.

1983年 우리나라 醫藥產業의 研究開發投資는 損益計算書上 賣出額 對比 0.2%이며 上位20個企業의 경우는 약 1%에" 불과하다. 이는 世界 30大 醫藥企業의 8.5%, 美國과 日本의11.5%와 8.7%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絕對額의 차이는 每年 增加하고 있다.

企業單位의 研究開發投資額을 比較하면 우리나라의 最大企業의 研究開發投資額이 180萬 달러로서 賣出額 對比 1.1%에 불과하여 外國의 大企業에 비하면 미미한 狀況이라 할 수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國內醫藥企業의 研究開發活動이 先進外國企業들이 新製品開發을위하여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막대한 投資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製法特許制度》下에서 위험부담이 적고 小規模投資가 가능한先進外國技術을 逆엔진니어링(reverse engineering)하는 활동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研究所를 소유하고 있는 17個 醫藥企業을 중심으로 研究開發上의 여러 가지 問題點을 分析해 보면, 첫째로, 前述한 바와 같이 研究開發投資額의 規模가 작을 뿐 아니라 研究開發費 중 人件費의 比重이 약 40%를 점하는 등 分配上의 問題도 심각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研究를 위하여 실제로 投入되어야 할 材料費의 比重이 낮음으로써 대부분의 研究開發 內容은 trouble shooting 등의 통상적인 業務에 국한되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두번째 問題는 研究人力이 質量面에서 確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國內醫藥業界의 研究人力은 總 669名으로서 美國의 22,675名과 日本의 18,428名에

⁵⁾ 急性, 亞急性, 催奇性, 發癌性, 耽溺性

⁶⁾ R.W. Hansen, "The Pharmaceutical Development Process: Estimates of Development Costs and Times and the Effects of Proposed Regulatory Changes, Issues in Pharmaceutical Economies", D.C. Heath and Co., 1979.

⁷⁾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調査의 경우 1.17%이퍼 李東 石의 조사는 0.93%임.

〈表 5〉 新藥開發段階의 國內學界 現况

	물 질 발 견	전임상시험	임 상 시 혐	판 배 전 력
기 간	3~5年	4~6年	3~4年	2~3年
총개발비에 대한 추정비중치	30%	55%	15%	
최종과정까지 확률	0.8%			제품화 성공 1 ~ 1 6,000 7,000 대형상품화 성공 1/35,000
과 정	신약설계 균확보 자연물 배양 추출 신약합성 생활성물된리 구조절정 실험 실험 특히신청	약효 약리 실험 대사실험 안정성(독성)실험 물성실업 제제연구 대량생산(합성・발효・ 추출)연구	공장건설	게 조 판 매
각 과정의 관련 과학자	전 공 국내능력 ·경험 기업기업 내 외 신약설계 무 약긴 유기합성 약간충분 미생물학 약간충분 모절분리 무 약긴 구조결정 간단한 실험실 변리사 약간충분	전 공 · 경험 기업기업 기업 기	내 의 다 이 의 다 이 의 의 사이	전 공 기업내 능 력 판매직원 충분

資料: D Bartling, 『Development of a Drug』 KDI, "醫藥產業技術水準評價設問".

〈表 6〉 主要國의 醫藥產業 R&D 投資額

(단위:百萬달러, %)

			(W1) • PA	124, 707
		R & D(A)	매출액(B)	A/B
한	국1)	3.5	1,610	0. 2
미	국2)	1, 131	10,777	11.5
일	본 ³⁾	942	10,828	8. 7

註:1) 1983年 資料.

- 2) 1979年 資料.
- 3) 1981年 資料.

비해 3~4%의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硏究人力의 學力別 分布는 獨立 Project를 수행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博士級이 17名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이는 美國의 4,745名(全體의 20.9%)에 비하면 미미한 상태이다. 國內의 博士學位 所持者 17名 중 海外誘致는 2名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Part-time으로 會社在職 중 國內大學에서 學位를 받은 것으로 밝

⁸⁾ 製法特許관 物質特許와 對應되는 概念으로서 工程技術의 發明에 주어지는 特許이며 우리나라에서도 認定되고 있다.

형지고 있으며, 1983年 國內에서 1,061名의 藥學士가 輩出되었으나 이들은 藥土資格試驗 위주의 敎育을 받았기 때문에 醫藥企業의 硏 究所에서 활용할 수 있는 資質있는 人力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외에 新物質의 開發過程에서 필수적인 藥理活性施設(screening center), 毒性檢查施設(toxicology center)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臨床實驗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할때 國內 醫藥企業에 의한 新藥開發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한

〈表 7〉 世界醫藥企業의 R&D投資(1983~84)

(단위:百萬달러)

	R & D 투자(A)	매출액 (B)	A/B (%)
Hoechest	28.8	2552	9
Ingelheim	22.3	1239	18
Smith Kline	19.4	2005	10
Sandoz	18.9	1450	13
J & J	17.5	1176	15
Takeda	9.2	1297	7. 1
국내최대기업	1.8	154	1. 17

資料:Scrip.

꾸준한 노력은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져야 한다.

参考로 日本의 新薬開發費는 美國의 약 50% 水準인 58億円으로 추정⁹되고 있으며 現在 研 究中인 治驗藥(investigated new drug)은 世 界에서 제일 많이 保有하고 있다. 物質特許 實 施年度인 1976年을 계기로 治驗藥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0年에는 美國의 7.4倍에 달하고 있다. 日本의 新藥開發 主要戰略은 첫 째, 成功率이 높은 部門에 集中投資함으로써 Pennicillin이나 Cephalosporin系列에 특히 많 은 新藥開發成果를 거두고 있다. 둘째, 新藥 開發에 投入되는 費用을 절약하기 위하여 外 國企業과 동등한 위치에서 共同研究體制를 構 築하고 있으며 좋은 예로는 Takeda-Abott, Fujisawa-Smith Klive, Otsusa-Dow, Shionogi-Eli Lilly Takeda-Gruntal, Takeda-Roussel, Eisai-Sandoz 등을 들 수 있다.

〈表 8〉 研究人力比較(醫藥)

(단위:名,%)

		한 국1)		구-1)	п	1	-	7-2)	ģ	1	본 ³⁾				
	i	`	<u>. </u>												
		인	원	구	성	인	원	구	성	શે	원	구	성		
박	사		17		2. 5	4,	4,745		20.9		_		-		
석	사		108		16. 2	3,	045	1	3.4		_		_		
함	사	l	368		55 . 0	5,	5,495		4. 2	-					
학 사	이 하		176	2	26.3	9,390		4	1.4	_			_		
합-	계		669		100	22,	22,675		100	18, 428			100		

註:1) 1983年 資料.

2) 1978年 資料.

3) 1981年 資料.

⁹⁾ 吉永俊明『醫藥產業界』, 1980.

Ⅲ. 技術水準向上方案

지금까지 量的으로 括目할 만한 成長을 持 續하여 은 國內醫藥產業은 新藥創製를 통한 海外需要의 擴大 없이는 產業이 當面하고 있 는 國內外의 環境을 극복하기 어려운 限界點 에 到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안으로는 零細 한 醫藥企業의 亂立과 商標만 다른 類似品目의 大量生産으로 인한 過當競爭, 歪曲된 流通構 造와 過多한 廣告費의 支出 및 販促人員의 增 大에 다른 收益性의 惡化 및 研究開發의 소 흘, 合作企業의 市場占有率增大로 인한 國內 企業의 收益率低下 등과 밖으로는 現在 段階 的으로 推進되고 있는 輸入自由化政策과 언젠 가는 實施하게 될 物質特許의 導入 등은 國內 醫藥産業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企業과 政策當局이 新製品開發 을 위한 硏究開發의 분위기 造成에 노력한다 면 醫料保險의 擴大實施와 海外需要의 增加에 힘입어 다시 한 번 高度의 成長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되며, 이를 위하여 醫藥產業 技術水準向上方案을 크게 두 가지로 集約되는 當面 問題點에 대해 각각 提示하고자 한다.

첫째, 零細醫藥企業의 亂立으로 인한 販賣 競爭은 過多한 廣告費의 支出과 肥大한 販賣 促進人員의 雇傭, 外上賣出의 증대와 醫藥品 價格의 할인·할증 販賣를 誘發시킴으로써 醫 藥業體의 收益性를 惡化시키기 때문에 研究開 發을 위한 資金能力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 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는

- (1) 精密化學 企業間의 垂直 혹은 水平結合을 通한 醫藥產業의 大型化를 誘導한다. 아울리 新規醫藥品 製造企業의 設立認可條件을 强化함과 동시에 기존 醫藥業體의 施設基準도 KGMP裝置 이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藥業界의 過大廣告를 規制하고 去來秩序의 正常化를 위하여 廣告와 販促에 쓰일 수 있는 總經費를 制限하고 治療劑의 大衆廣告를 禁止하며 直販制度를 강력히 規制함으로써 價格秩序의 確立과 비대한 醫藥企業內의 販促人力을 縮小도록 하고 生產이나 硏究開發分野의人力을 强化하도록 誘導하여야 한다.
- (3) 藥學大學의 定員을 調節해야 한다. 現在 過剩供給되는 藥師는 醫藥企業의 亂立과 競爭의 間接的 要因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장차 實施되어야 할 醫藥分業制度의 土着化를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 (4) 國內市場 先占을 위하여 非正常的으로 盛行되고 있는 品目提携競爭을 規制하기 위하여 모든 처방을 一般名으로 記載하게 의무화하며 一般藥品(generic drug)의 市販을 誘導한다. 이는 外國提携先의 商標使用을 위한 品目提携를 抑制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總醫料費중 높은 藥製費의 構成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藥製費의 比重도 줄일 수 있다.
- (5) 國內 過熱競爭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新藥導入을 막기 위하여 導入時 提出하여야 하는 各種資料에 구체적인 毒性實驗方法을 자세히 名記하게 하며, 臨床實驗을 國內病院에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人種이나일상 섭취물의 種類가 다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동반하는 藥品의 流入을 防止해 줄 뿐 아니라 장래에 國內企業에 의하여

新藥開發이 시도될 경우 중요한 技術資料로 活用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둘째,一國의 技術水準向上은 自體研究陣의 研究開發努力과 海外로부터 移轉된 先進技術 의 模倣 消化 및 改補過程을 통하여 達成될 수 있으며, 이들 두 가지 方法은 獨立的이 아 닌 相互 補完的關係라고 할 수 있다. 自體研 究開發 수준이 낮은 國內醫藥產業이 이러한 두 方法의 相互 연속적 과급과정을 통한 研究開 發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하여는

(1) 國內企業이 필요로 하는 技術을 선택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適期에 導入하기 위하여는 世界에서 公表된 技術의 所在,內容,開發年度,權利所有者,生產製品의 國際市場動向과 代替技術 및 製品의 存在與否에 관한 情報가 필요하다.이를 위하여는 現在 各大學研究所,政府研究機關,그리고 特許廳 및 民間企業에 散在한 資料를 整理 補完함은 물론 이러한情報를 民間企業에게 效率的으로 供給할 수 있는 技術情報體制의 確立이 절실히 要求된다.이러한 技術情報體制의 確立은 技術導入時 國內企業의 對外協商力(negotiation power)를 强化하는 利點도 있다.

(2) 國內醫藥企業의 自體技術開發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案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產業技術의 主役을 담당하여 온 韓國科學技術院 (KAIST)이나 韓國化學研究所(KRICT) 등의 政府出捐 研究機關들은 企業의 研究活動을 支援하는 補助機能만을 담당하도록 制限하고 主

業務는 民間企業이 수행하기 어려운 公共技術 이나 硏究期間이 길고 大規模 投資가 필요한 戰略技術과 基礎科學의 研究에 치중하도록 해 야 한다. 둘째, 民間企業의 附設研究所가 企 業組織에 종속됨으로써 發生하는 有能한 研究 員의 移職現象을 減少시키고 體系的인 研究業 務를 위한 Research ladder system을 導入할 수 있도록 企業附設研究所의 獨立的 法人化가 要求되다. 세째, 國內化學研究의 장애요인 중 의 하나인 試藥센터를 擴充할 필요가 있다. 需要가 예상되는 硏究用 試藥을 適時에 供給 하도록 하는 方案으로는 外國의 유수한 試藥 會社와의 Agent確立과 國內企業間의 共同出 資로 類似機關을 設立하는 方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네째, 國內醫藥原料生產을 促進시키 는 方案으로 現在 完製品과 原料輸入關稅의 差 를 넓히고 國內에서 原料를 合成하는 경우 빈 번히 발생되고 있는 外國 醫藥會社의 덤핑輸出 을 방지하는 制度的 補完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開發된 化學物質이 製品化되기 위하여는 新物質의 特性과 毒性 有無를 檢查함은 필수 적인바 이를 위한 物質의 藥理活性(screening test)과 毒性(toxicology test)檢査를 위한 研 究所 設立이 시급하다. 이러한 施設은 앞으로 의 精密化學과 生物工學分野의 新製品開發을 위하여 필수적일 뿐 아니라 各種 化學物質이 人體와 環境에 미치는 부작용의 究明을 통한 國民保健의 向上,落後된 國內基礎科學의 活 性化는 물론 우리나라가 化學製品100을 輸出하 는 경우 先進國들이 要求하는 化學物質의 毒 性檢查資料를 國內에서 하게 됨으로써 輸出商 品의 國際競爭力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¹⁰⁾ 化學製品은 廣範圍む 意味豆 化學物質을 中間材足 小용하는 製品을 意味한다. 예를 들면, 의약, 농약 등의 精密化學과 도로, 비료 등 化學物質을 主原料로 사용하고 있는 製品은 물론 化學繊維, 電子製品 등化學物質을 副資材로 사용하는 製品도 포함.

▷ 參 考 文 獻 ◁

東西證卷,『上場企業財務分析』, 1984. 藥業新聞社,『藥事總鑑』, 1983. 李東石,『우리나라 醫藥產業의 技術移轉과 技 術蓄積에 關む 研究』. 韓國開發研究院・大韓藥品工業協會,「醫藥產 業技術水準評價設問」, 1984. 5. 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 1984. 韓國化學研究所,『戰略化學製品市場分析』, 1984. Bartling, D. & H. Hadamik, Development of a Drug Sandoz, Basel, Switzerland, 1982.

Hasen, R.W., "The Pharmaceutical Development Process: Estimates of Development Costs and Times and the Effects of Proposed Regulatory Changes, Issues in Pharmaceutical Economies." D.C. Heath & Co., 1979.

〈附表〉 比較 財務 및 經營分析

(단위:%)

				1							
			產業	제 2	돈 업	화학	석유	의	<u> </u>	f :	품·
								전	반	상 장	회사
指	標			1982	1983	1982	1983	1982	1983	1982	1983
			총 자 본 증 가 율	18.7	15. 2	10.5	11.7	19.3	20.6	25. 5	14. 7
성	장	성	매 출 액 증 가 율	12.3	17.8	9. 1	11.6	24. 5	20.9	24. 4	12.7
			순 이 익 증 가 율	-107.3	1, 799. 5	-231.8	259. 4	23. 9	34. 7	45.6	-0.8
			총자본경상이익율	1.0	3.3	2.6	5. 1	9.6	12.9	6.3	5.4
į.	61	, ,	자기자본 "	5.3	15. 5	12.8	21.35	29. 0	38.0	18.0	53.4
수	익	성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4. 4	84. 0	85.4	84.9	51.5	51.6	45.8	46.6
			매출액순이익율	0.04	1.7	0.4	2.0	4.2	5.6	5.5	4.8
			유 동 비 율	96.6	97.1	101.5	101. 3	160.2	155.0	165. 1	155. 7
안	정	성	1	385. 8	i	367.7	297.0	203. 4	190. 4	187.8	194. 0
T	78	-8	자기자본비율	20.6	21.7	21.4	25. 2	33.0	34. 4	34.8	34.0
			차 입 금 의 존 도	45.9	43. 7	42.7	39.0	34.2	33. 0	39.1	1. 2
			총 자 본 회 전 율	1. 2회	1. 2গ্ৰ	1.6회	1.6회	1. 1회	1. 3회	1.2회	1. 1회
֓.	동	성	고정자산희전율	2.4	2.5	3.9	3.6	3.6	4.5	5.5	
활	5	78	매출채권회전율	7.6	7.5	8.5	8.4	3.4	3.5	3.0	2.9
			재고자산회전율	6.1	6.7	6.9	7.8	5.4	6.3	5.8	
			부 가 가 치 율	21. 1	21.3	15.0	15.6	35. 4	35.0	34.5	_
			총자본투자효율	25.0	26.0	23.8	24.5	39.6	45.7	41.0	_
o)	, a	23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6.05	6.86	8. 26	9.84	9.61	9.41	11. 25	
생	산	성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백만원)	28. 69	32. 15	55.00	63.03	27. 12	26.93	31.50	
			종업원 1인당 인건비	2. 93	3. 29	3. 15	3.92	5. 02	4.98	5.06	
			(백만원)								
			법인세전순이익	4.0	12. 2	9.8	20.2	23.4	28. 1	28.6	_
부 :	가 가 치	의	인 건 비	48. 4	48.0	38. 1	39.8	52. 2	52.9	45.0	_
	4 4 4		급 융 비 용	25.8	19.3	28. 1	18.6	14.4	10.2	15.8	
구		성	임 차 료	1.9	1.9	1.8	1.9	2.7	2.7	3.7	_
			제 세 공 과	2.0	1.7	4.1	2.8	1.1	1.1	1.1	_
			참 가 상 각	17.9	16.9	18.0	16.6	6.2	5.0	5.7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84. 3	93. 3	96. 2	97.3	95. 7	95.8	85. 7	_
			임의적립금이입액	15.7	6. 7	3.8	2.7	4.3	4.2	14. 3	_
ું ,	여 금 처	부	이익잉여금처분								
٥	, µ -1	1ún	사내유보	82.9	85. 5	78.6	85.0	88. 1	89.8	61.6	
			배 당 금 (배 당 성 향)	17. 1 25. 2	14.5	21.4	15.0	11.9	10.2	38. 4	_
			(배 당 정 양)	45. 2	18.6	30.8	21.6	17.5	13. 4	21.6	

資料: 韓國銀行, 『'84 企業經營分析』. 樂業新聞, 『'83 樂事總鑑』. 東西證券, 『'84 上楊企業財務分析』.

多品目纖維協定(MFA)의 經濟的 效果와 우리의 對應

嚴 峰 成

- 1. 序
- Ⅱ. 世界의 繊維類産業
- Ⅲ. MFA의 主要內容
- N. MFA의 經濟的效果
- V. MFA의 改編論議와 우리의 對應方向

I. 序

纖維類製品"은 국민생활의 必需品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非熟練勞動을 이용하여 용이하 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나라 에서 纖維類產業은 工業化 初期段階의 中樞產 業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生產과 雇傭側面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纖維 類貿易에 대한 保護貿易措置는 일찍부터 汎世 界的으로 보편화되었다. 특히 兩次大戰 사이의 기간에는 大恐慌으로 인하여 纖維類需要가급격히 감소한 반면 日本이 新與 纖維輸出國으로 浮上하게 되자 保護措置는 더욱 增大하여美國은 日本과 對美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들어서 GATT, OECD의 主導下에 일반적으로 貿易自由化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纖維類貿易에 있어서는 이러한 自由化에 오히려 逆行하여 日本 및 開途國의 수출에 대한 規制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1950년대 중반 開途國의 纖維類輸出이 급증함에 따라 先進國은 이에 대한 대응책 摸索에 腐心하게 되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市場攪亂"의概念이 美國에 의해 GATT에 提起되었다. 그결과 1961년 綿製品의 輸入數量 規制를 위한「短期 綿織物 協定」(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STA)이 체결되었으며 이 協定은 그 다음해「長期 綿織物 協定」2)(Long-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¹⁾ 이하에서 纖維類라 함은 纖物類뿐만 아니라 衣類까지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LTA에 加入하여 1964년부 터 적용, 실시하였다.

Textiles: LTA)으로 발전하여 1973년까지 세차례의 延長을 거쳐 12년간 실시되었다. 이러한 協定은 纖維類貿易에 대한 多者間 協定의 嚆矢로서 市場攪亂 방지를 위한 輸入國의 選別的이고 差別的인 數量規制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綿製品類貿易에 대한 포괄적인 雙務協定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는 無差別 原則과 數量規制의 禁止 등을 표방한 GATT의 기본정신으로부터 離脫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들어서「폴리에스터」등 人造 纖維의 사용이 중대되고 貿易도 늘어남으로써 綿製品만을 規制對象으로 한 LTA下에서는 충 분한 輸入規制效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의 주도하에 1974 년 合成纖維에 대한 規制까지를 포함하는 이른 바「多品目 纖維協定」(Multi-Fibre Arrangement: MFA)이라는「纖維類 國際貿易에 관한 協定」이 체결되었다. MFA는 그후 두 차례의 延長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보통 그 순 서에 따라 MFAI, MFAII로 불린다. 현재의 MFA II 는 1986년 7월에 滿了될 예정인바 최근 MFA의 改編論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MFA가 纖維類輸出入國 經濟에 미친 效果를 분석하고 纖維類 大量輸出國인 우리나라의 MFA 改編에대한 對應方向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Ⅱ. 世界의 繊維類產業

1. 纖維類生產 및 雇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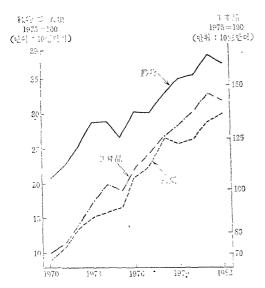
世界의 纖維類生產 및 雇傭推移는〈表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市場經濟國 전체로 볼 때製造業 總附加價值에서 纖維類와 衣類가 차지하는 比率은 1953년도에 각각 8.4%, 5.2%였으나 그 이후 持續的으로 下落하여 1980년도에는 각각 5.6%, 3.1%를 占하였다. 그리고이와 같은 纖維類 및 衣類의 附加價值比重의하락추세는 先進國과 開途國으로 나누어서 살

〈表 1〉 製造業 總附加價値 및 總雇傭에 대한 織物類 및 衣類의 比率 製造業 總附加價値에 대한 比率

	製	製造業 總附加價値에 대한 比率						製造業	總雇傭	에 대한	上比率	
	織	物	類	衣		類	織	物	類	衣	1.0	類
	1953	1970	1980	1953	1970	1980	1953	1970	1980	1953	1970	1980
市場經濟國	8.4	6.4	5.6	5. 2	3.6	3. 1	17. 4	16.5	14.8	8. 3	8.4	8. 0
先 進 國	7.4	5. 1	4.4	5. 1	3.3	2.8	12. 1	9. 1	7.2	8.6	6.8	5.7
北美	5. 1	4. 1	3.6	5. 2	3.5	3. 1	7.8	6. 7	5.7	8.6	6.9	6.6
日 本	16.5	5.8	3.9	1.6	2.0	1.9	23. 1	14. 2	10.9	3.0	4. 2	4.8
E C (9)	11.5	6. 1	5.3	4. 8	3, 2	2.6	13. 5	8. 7	6.8	9.4	7.4	5.4
기 타 서 유 럽	8.9	4.6	3.6	6.1	3. 7	3.0	10.4	6.8	5.2	9.8	6.8	4.5
開 途 國	23. 5	16. 3	11.5	6.8	5.9	4.5	29. 2	27.8	24.0	9.2	11.0	10.9
남 유 럽	24. 4	12.9	10.3	6.0	5.8	5.4	20.0	15. 5	14. 5	9.5	10.8	11.0
아 시 아	28. 9	22.9	15. 7	8. 2	6.5	5.6	34.6	33. 2	28.5	9.0	11.6	11. 3
中 南 美	19.0	12. 7	8.8	7. 1	5. 7	3.0	20.5	14. 7	12. 2	10.3	9.0	8.7
아 프 리 카	22. 5	27.4	-	2. 1	5. 2	_	32. 1	29.3	_	5.5	10.3	

資料: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圖 1] 纖維類의 世界輸出推移(1970~82)



資料: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펴보아도 마찬가지인바 이는 1970년대의 世界景氣沈滯 외에도 人口增加率의 鈍化와 纖維類需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先進國 需要增加의 鈍化 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製造業 總雇傭에서 纖維類產業의 雇傭이 차지하는 비중은 同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市場經濟國 전체로서 볼 때 1970년의 24.9%에서 1980년에는 22.8%로 하락하였다. 특히 織物類部門에서는 先進國과 開途國을 막론하고 雇傭比重이 현저히 하락했으며 이는 물론 織物類의 생산비중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이에 더하여 勞動節約的인 纖維機械의 사용이확대된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 衣類部門에 있어서는 先進國의 경우에 1970년의 6.8%에서 1980년에는 5.7%로 雇傭比重이 감소했으나 開途國의 경우에는 거

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纖維類의 附加價值 및 雇傭比重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현재 市場經濟國 全體製造業 總附加價值의 8.7%, 總雇傭의 22.8%나 占하고 있다. 특히 開途國의 경우에는 同比率이 각각 16%, 34.9%나 되어 先進國의 경우보다 纖維類가 國民經濟에서 더욱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纖維類의 貿易推移

纖維類의 世界交易量은 1982년 현재 總930億 달러에 달하며 이는 世界工產品輸出의 9%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纖維類輸出의 年 增加率은 1963~73년 기간중의 11.5%에서 19 73~82년 기간중에는 4.8%로 크게 둔화되었 다³). 纖維類를 織物類와 衣類로 나누어서 그 輸出推移를 [圖 1]에서 보면 1970~78년 기간 중 衣類輸出이 織物類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 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衣 類輸出의 急增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 이 開途國의 衣類輸出增大에 기인하는 바 크 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世界 纖維類交易의 地域別 比重을 〈表 2〉에서 살펴보자. 先進國이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織物類 輸出比重은 1950년대 중반의 80% 수준에서 1982년에는 60% 수준으로, 衣類에서의 輸出比重은 50년대의 70% 수준에서 1982년에는 38%까지 떨어졌으며 그 반면 開途國과 東歐圈國家의 輸出比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衣類分野에 있어서 開途國의 輸出比重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地域間의 纖維類 貿易收支를 〈表 3〉에

³⁾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p. 35.

서 살펴보자. 先進國은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纖維絲의 貿易收支赤字가 黑字로 反轉되어 81년 현재 衣類分野를 제의한 全品目에서 貿易黑字를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3個分野의

(表 2) 世界織物類와 衣類輸出의 地域別 比重 (세계=100, 단위:%)

		1955	1963	1973	1982
織物類	先進國	79	74	70	60
	開途國	15	18	22	30
	東歐圈	6	8	8	10
衣類	先進國	71	67	51	38
	開途國	10	15	35	48
	東歐圈	19	18	14	14

資料: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表 3〉 主要地域別 貿易收支

(단위:10億달러)

			(2:11	・10 個 セリノ
		先進國	開途國	東歐圈國家
	1963	0.73	-0.84	0.08
織物類	1973	0.68	-0.75	0. 16
	1981	3. 24	-3.12	0.26
	1963	-0.07	-0.04	-0.24
衣 類	1973	-4.06	3. 24	0.26
	1981	-16.80	12. 13	1.81
	1963	-1.48	1. 32	-0.65
繊 維 絲	1973	-0.52	0.94	-0.72
	1981	2.64	-0.35	-1.99
	1963	0. 52	-0.47	0.02
纖維機械	1973	2.25	-1.98	-0.07
	1981	2.90	-3.51	-0.29
	1963	19. 51	-18.69	0.49
工產品	1973	51. 75	-52.02	-4.65
	1981	193. 87	-207.73	-0.95

資料: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黑字額은 衣類에서의 赤字額인 168億달러의 1수준인 87億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開途國의 衣類輸出 貿易黑字는 1981년에 121億 달러에 달하였으나 同製品 生產을 위한 纖維原絲 輸入이나 관련품목인 織物, 纖維機械 등에서의 貿易赤字 70億달러를 차각하면 纖維類 貿易黑字는 51億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開途國은 工產品 전체로 보면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赤字幅 역시 크게 확대되어 1981년 현재 총적자액은 2,077億달러나 되고 있다.

Ⅲ. MFA의 主要內容

1. MFA I(1974~77년)

MFA는 纖維類輸入에 대한 選別的 規制를 허용함으로써 GATT의 無差別原則에 예외가 되다는 점에서 LTA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 나 LTA보다는 規制對象品目을 대폭 확대하 여 綿製品은 물론 毛와 人造纖維類製品까지를 포함시켰다⁴⁾. 그리고 MFA는 輸出入國間의 衡平을 고려하여 輸出國에도 秩序있는 무역확 대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LTA보 다 약간 進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MFA 는 纖維類貿易의 확대 및 점진적인 貿易自由化 具現과 이를 통한 開途國 經濟・社會 發展의 促進을 그 기본목표로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 여 先進國의 지속적인 產業構造 調整을 요구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協定事項의 遵 遂與否를 감시하기 위한 纖維監督機構(Textile Surveillance Body) 5 를 설립하기도 하였던 것

⁴⁾ 그러나 베틀織物(handloom fabrics)과 家內工業製品 (cottage industry priducts) 및 傳統土俗手製品(traditional ethnic handicraft products) 등은 그 規制對 象에서 제외되었다.

⁵⁾ 예를 들면 協定參與國들은 輸入規制措置 발동시에 TSB에 보고하여야 하며 TSB는 그것이 協定條項과 — 致하는지를 檢討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TSB는 輸 出入國間의 紛爭解決의 場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다.

MFA의 核心은 規制의 要件 및 그 方法을 明示한 協定 3條와 4條 그리고 부속서 A와 B로 集約될 수 있다. 먼저 3條에서는 市場攪 亂基準에 의한 輸入制限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輸入國은 부속서 A에서 규정하고 있는 市場攪亂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關係輸出國에 協議를 要請할 수 있으며" 이러한 市場攪亂에 근거한 輸入制限은 市場攪亂을 惹起한 特定輸出國의 特定品目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속서 A에 의하면 市場攪亂이란 國內生產者에 대한 심각한 被害의 존재 혹은 그런 被害를 일으킬 실제적인 위험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市場攪亂의 要因으로서 부속서 A는 ① 特定品目의 特定供給源으로부터의 급격한 輸入의 중가나 ② 輸入國 市場에서 類似商品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輸入品의供給價格 등을 들고 있다.

MFA協定 4條는 輸入國 市場攪亂의 실제적 위험을 除去하고 纖維類貿易의 질서있는 확대 를 위하여 相互 受諾할 수 있는 조건으로 雙 務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서 B에는 이러한 雙務協定下에서의 「쿼터」量의 決定 및 運用에 관련되는 基準實績(base level),增加率(growth rate),融通性(flexibility) 등이 規定되어 있다. 즉,協議要請 이전 2個月로부터 遡及하여 계산한 12個月間의 實際輸出實績이 基準實績이 되려 여기에다 최소한 年6%의 증가율을 감안하여「쿼터」量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融通性이란 輸出國이 規制範圍內에서 「쿼터」量을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부속서 B의 5項은 轉用(swing), 操上(carryforward),移越(carry-over)에 관한 내역을 明示하고 있다⁸⁾.

그 밖에 特記할 만한 사항으로는 1條 2項의 最小生產保障(Minimum Viable Production: MVP)條項과 8條의 迂廻輸出禁止條項을 들수 있다. 最小生產保障條項은 스웨덴을 증심으로 한 北歐地域의 소규모 국가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一名「노르덕」條項(Nordic Clause)이라고도 한다. 이는 國內市場이 협소하고 국내생산규모도 작은 나라들의 경우 여타 수입국과 마찬가지로 一律的인 最小輸入增加率을 적용하면 그 나라의 纖維產業 存立에 필요한 最小生產마저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속서 B에 규정된 最小增加率보다 낮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迂廻輸出禁止條項은 協定國들이 換積, 迂廻 輸送 또는 MFA 非參加國들의 不法行為에 의 한 MFA約定의 迂廻的 違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違反行為를 막기 위한 行政 的인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60}日 以內에 合意를 이루지 못하면 부속서 B에 규정 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1년간 一方的인 輸入 制限이 가능하다.

⁷⁾ 그러나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關係輸出國과의 協議 後 6%보다 낮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① 6%의 증가을 適用時 市場攪亂 사태가 再發할 근 거가 명백할 때

② 規制措置가 앞으로 一定期間 더 有效하게 될 경우 上記(증가율)의 적용으로 市場攪亂 사태가 악화될 경후가 있을 때

③ 輸入國의 市場規模가 적고 國內生產規模가 낮을 경우 上記 증가율이 적용되면 이러한 국가들의 企業存立에 필요한 最小生產이 위협을 받는 예외 적인 경우.

⁸⁾ 轉用이란「쿼터」總量의 限度內에서 各品目別「쿼터」量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통 年 5~7%가 허용된다. 操上은 다음期의「쿼터」量을 今期 수출에 앞당겨서 使用하는 것으로서 5%를 초과할 수 없으며,移越이란 今期의 未使用「쿼터」를 다음해로 移越시켜 使用하는 것으로서 移越과 操上을 합하여 年 10%를 넘을 수 없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MFA 下의 貿易體制는 MFA 2 條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MFA 이전의 각증 規制措置의 점진적인 철페를 목적으로 하 는 過度期的 體制였다고 할 수 있다. MFA I 施行의 初期에는 同協定의 모호함 때문에 協定 國 사이의 雙務會談은 자주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3條에 의한 一方的인 規制措置에 의존하 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차차로 協定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감에 따라 雙務的인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MFA는 綿 외에 毛와 人造纖維로 規制對象을 확대시킴으로써 規制의 强度 또한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기 쉽 다. 그러나 MFA가 체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GATT體制 밖에서 存續되어 왔던 毛製品類에 대한 각종 規制措置들과 비교해 볼 때 MFA 는 오히려 그러한 既存의 規制들을 統合하 여 規制의 틀을 정립하고 약간은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MFA [기 가동안에는 輸入國들이 「쿼터」의 基準實績, 年增加率 및 融通性에 대한 MFA의 기준 과 의무를 대체적으로 존중하였던 것으로 평 가된다.

2. MFA II(1978~81년)

MFA I 은 世界經濟의 지속적인 成長을 배경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MFA I 의 滿了에 즈음한 1975년도의 급격한 世界景氣沈滯는 MFA의 延長協商過程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美國을 포함한 대부분의 協定參加國들은 MFA를 單純延長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EC國들에 있어서는 1974~77년 MFA I 기간 중에 纖維產業의 需要沈滯와 生產性 向上의 複合作用으로 심각한 失業問題가 대두되었으며 纖維製品의 輸入도 크게 증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EC國들은 一方的 「쿼터」의 적용과 MFA로부터의 탈퇴 등으로 輸出開途國側을 위협하여 合理的 離脫條項 등을 新設・追加하여 MFA를 延長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ユ 結果 MFA II 는 累積的 市場攪亂(cumulative market disruption)概念의 도입과 合 理的 離脫(reasonable departure)條項의 新設 로 MFA [보다도 훨씬 더 規制的으로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먼저 累積的 市場攪亂이란 기 보적으로 輸入國의 市場攪亂이 모든 輸出國들 의 累積된 總輸出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輸入國은 市場攪亂을 방지하기 위해서 總輸入에 대한 上限(global ceiling)을 설정하 고 總輸入이 이 上限을 초과할 때엔 그러한 限界輸出을 한 關係輸出國의「쿼터」量에 관계 없이 當該輸出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음으로 合理的 離脫이라 함은 當事國들의 合 意만 있다면 MFA條項에서 얼마든지 離脫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基準實績,增加率,融通 性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MFA I 과 비교해 볼 때 MFA II 下에서는 대부분의 輸入國들이 規制措置를 擴散하거나 强化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規制의 대상은 輸入先進國側이 1970년대에 輸出開途國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競爭的 壓力을 받아왔던 衣類製品 쪽으로 옮아갔다.

雙務協定은 이 기간에도 貿易規制의 主要한 手段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輸入國側은 合理的 離脫條項을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輸入規制 目的을 달성하였다. 合理的 離脫條項의

⁹⁾ MFA가 GATT體制로부터의 離脫이라면 MFA II 의 合理的 離脫條項은 MFA로부터의 離脫이므로 '離脫 로부터의 離脫'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적용은 MFA上에 規定된 輸出入國間의 權利의 義務 사이의 均衡을 깨뜨린 것이었으나 輸出開途國側은 그래도 雙務協定이 一方的 規制보다는 덜 不利하다는 판단에서 그려한 措置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3. MFA III(1982~86년)

1970년대 말에는 先進國들에 있어서도 高인 플레, 경제성장의 低下 및 失業增大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加重되었다. 따라서 規制를 더욱 강화하려는 輸入先進國의 입장과 MFA의

철폐 내지는 MFA I 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輸出開途國의 입장은 MFA의 延長協商 過程 에서 팽팽히 對立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 제네바에서 MFA는 1982년 1월부터 1986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다시 延長 실시될 것이 결정되었는데 MFA Ⅲ는 合理的離脫條項의 削除 및 輸入急增防止(anti-surge)條項의 新設로 특징지워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MFA II는 MFA II下에서의 合理的 離脫條項을 없애는 대신 각 해당사항별로 合理的 離脫을 구체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基準實績의 경우,

〈表 4〉 LTA와 MFA의 主要內容 比較

	LTA	MFA I	MFA II	MFA II
規制期間	1962. 2~73. 12	1974. 1~77. 12	1978. 1~81. 12	1982. 1~86. 7
規制對象	綿織物	綿, 毛 및 人造纖維	左 同	左 同
年增加率	5% 以上	6%以上	合理的 離脫條項의 삽입으로 시장교란 발생시 6% 以下 적 용 가능	雙務協定에 근거하여 상호합의하 에 하향조정 가능
融通性	規定 없음	操上+移越=10% (记,操上은 5%以下) 轉用은 7%以上	左 同 그러나 合理的 離脫 條項의 적용으로 轉 用은 5%까지 하향 조정 가능	상호합의하에 하향조정 가능
最小生產保 障	規定 없음	北歐 3國에 대하여 막연히 규정	左 同	同條項 明文化(연장의정서 11항)
輸入基準 實績의 削減	規定 없음	左 同	실제적으로 合理的 離脫條項에 의거 적용	同規定 明文化(9항) 年增加率 조 항과 同一
輸入急增防 止	規定 없음	左 同	左 同	「쿼터」量과 實輸出物量의 차이로 인한 市場攪亂의 경우, EC는 輸 入增加率이 10%이상인 敏感品目 이며 시장점유율 1% 이상이거나 「쿼터」消盡實績 50%이상인 품목 에 대하여 융통성 조항적용 유보, 輸入上限物量의 설정이 가능
少量輸出國	規定 없음	개도국 우대조항으 로 기준이 모호하게 規定되어 있음	연장의정서 5항에 애매하게 규정	小規模 輸出國 특별우대 고려 원 최 明示(연장의정서 12항)

특별히 基準實績이 크거나 현저하게 많은 輸出을 하는 나라의 경우(여기서는 한국, 홍콩을 지칭)에는 兩當事國의 協議를 통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基準實績이 削減(cut-back)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쿼터」增加率 및 融通性 적용에 있어서도 當事國의 合意만 있다면 부속서 B에 規定된 수준보다 낮은 증가율의 적용과 融通性의 調整을 가능토록 하였던 것이다. 輸入急增防止(anti-surge)條項은 主要輸出國의 市場浸透를 막기 위해 EC國들이 MFA에 새로 도입한 조항이다. 즉, 相互 協議된 「쿼터」 내에서라도 갑작스러운 輸入增加로 초래되는 輸入國市場의 被害를 막기위한 緊急輸入制限措置를 규정한 것이다10).

MFA II 는 規制의 强度에 있어서 MFA II 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輸入急增防 止條項의 新設 등은 大量輸出國에게는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 설명한 LTA, MFA I, MFA II, MFA II의 주요내용을 요약·비교해 보면 〈表 4〉와 같다.

N. MFA의 經濟的 效果

MFA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먼저 輸入規制論者의 주장대로 MFA가 과연 纖維類 輸入을 減少시킴으로써 輸入國의 雇傭 을 중대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나를 評價해 본 다음 MFA로 인한 纖維類 價格上昇 및 產 業構造 歪曲效果, 貿易轉換(trade diversion) 效果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輸入量 및 雇傭에 대한 效果

MFA에 의해서 纖維類輸入을 규제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輸入이 증대됨으로써 輸入國의 纖維類 生產이 萎縮되고 勞動集約的인 纖維類 產業에 있어서 雇傭이 크게 減少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纖維類產業은 주로 非熟練 勞動者특히 女性勞動者를 많이 雇傭하고 있으므로 纖維類產業에서 放出된 勞動者는 다른 부문으로 흡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纖維類產業에서의 雇傭減少는 곧 全體雇傭의 減少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纖維類製品의 主要輸入國인 美國과 EC의 70년대 이후 纖維類 輸入狀況을 살펴보면 각각 〈表 5〉,〈表 6〉과 같다.

美國은 MFA가 체결되기 이전인 1970년대 初盤부터 각종 雙務協定을 통해 纖維類輸入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그 결과 1971~81년 기 간동안 纖維類 總輸入量은 年平均 0.3% 정도 씩 오히려 減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이와 같이 總輸入量이 減少되었음에도 불구하

¹⁰⁾ 輸入急增防止條項의 發動要件으로는 輸入의 急激하고 도 實質的인 증가에 의해 輸入國에 實質的인 困難이 惹起될 수 있고, 그 困難이 未消盡「쿼터」에서 발생하 며, 또한 國內產業에 심각하고도 명백한 被害를 주거 나 줄 위험이 있을 경우를 들고 있다. 이때 兩當事國 은 相互 滿足할 만한 해결책에 合意할 수 있으며 輸入 國은 輸出國에 추가적 규제에 대한 적절한 補償을 提 供하여야 한다.

고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은 持續的으로 증대 되었는데 開途國中에서도 大量輸出國인 韓國, 台灣, 홍콩으로부터의 輸入은 同期間中 年平 均 3.4% 정도씩 증가한 반면 여타 開途國은 10%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다. 한편 纖維類 總輸入 증에서 織物類와 衣類의 비중을 살펴 보면 織物類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衣類의 비 중은 계속 상승하여 1981년에는 54%에 달했 음을 알 수 있다.

EC에 있어서 低價供給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규제는 美國과는 달리 1976년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低價供給

國으로부터의 纖維類輸入 증가율은 1973~76 년 기간의 年平均 24.1%에서 1976~81년 기간에는 1.5%로 격감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同期間中 雙務協定에 의해 규제를 받는 나라들로부터의 輸入增加率은 0.9%에 불과하였으나 EC에 의해 特惠國으로 인정되는 나라들로부터의 輸入은 9.1%,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은 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상의 分析을 통해서 볼 때 美國이나 EC와 같은 主要纖維輸入國들은 MFA를 체결함으로 써 纖維類輸入을 규제하는 데 성공하여 纖維類輸入 증가율이 MFA에서 保障된 年最小增加率 6%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表 5〉 美國의 纖維類 輸入(1971~81)

(단위:100萬SY 상당)

	大海		1= 1	1	兪	ス		源	
	衣 類	織物類	合 計	きる・台 灣・韓國	라 틴 아메리카	기 타開途國	日本	中共	유럽 및 기 타
1971	2,098	3,853	5,951	1,762	293	383	1,691	0.2	1.822
1972	2,226	4,010	6,236	1,810	369	559	1,249	11	2,238
1973	2,090	3,035	5, 125	1,523	453	635	813	33	1,668
1974	1,937	2,473	4,410	1,475	422	571	861	84	998
1975	2,077	1,751	3,828	1,599	362	432	536	141	758
1976	2,428	2,560	4,987	2,040	457	696	747	153	894
1977	2,466	2,511	4,977	1,978	418	552	943	91	995
1978	2,905	2,834	5,739	2,247	605	776	853	201	1,058
1979	2,671	1,968	4,639	1,927	516	812	492	231	670
1980	2,884	2,000	4,884	2,210	461	820	461	325	608
1981	3,136	2,626	5,762	2,460	543	993	503	562	702
年增加率									
$1971 \sim 81$	4.1	-3.8	-0.3	3.4	6.4	10.0	-11.4	100+	-9.1
$1971 \sim 76$	3.0	-7.9	-3.5	3.0	9.3	12.7	-15.1	100+	-13.3
1976~81	5.3	0. 5	2.9	3.8	3. 5	7. 4	-7.6	29.7	-4.7
比 重									
1971	35. 2	64.8	100.0	29.6	4.9	6.4	28.4		30.6
1976	48.7	51.3	100.0	40.9	9. 2	14.0	15. 0	3. 1	17.9
1981	54. 4	45.6	100.0	42. 7	9.4	17. 2	8. 7	9, 8	12. 2

資料: Costs of Protecting Jobs in Textiles and Clothing,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84., p. 84~85.

¹¹⁾ 이는 아래에서 說明할 貿易轉換效果 때문이다.

있다12).

다음으로 纖維類輸入과 輸入國의 雇傭과의 關係를 살펴보기로 하자. 1973~79년 기간에 EC의 織物類와 衣類生產은 각각 4%와 1% 減少한 반면 雇傭은 각각 23%와 21% 減少하였다¹³⁾. 이 統計는 同期間中에 勞動者 1人當 生產性이 약 25% 정도 상승하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만일 輸入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서 EC의 纖維類 生產水準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生產性增加로 인하여 약 20%나

되는 雇傭減少가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이로 미루어 볼 때 輸入先進國의 纖維類產業 에서의 雇傭減少는 纖維類輸入增加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生產性增加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¹⁵⁾. 더구나 纖維類產業에서 輸入 增加로 인하여 약간의 雇傭減少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總失業의 증대로 반 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纖維類 產業에서 방출된 勞動力은 다른 產業部門으로 흡수되게 마련인 것이다. 물론 賃金이 硬直的

〈表 6〉 EC의 繊維類 輸入(1973~81)

(단위:1,000돈)

					(단위 : 1,000근)
	生海	低	費用	國家	合 計
	先 進 國	雙務協定國	特惠國	合 計	合 計
1973	254	n.a.	n.a.	572	826
1974	334	n.a.	n.a.	752	1,086
1975	306	n.a.	n.a.	855	1,161
1976	356	651	n.a.	1,093	1,449
1977	332	598	301	1,001	1,333
1978	354	598	366	1,072	1,426
1979	472	697	421	1,225	1,697
1980	526	709	396	1, 227	1,753
1981	436	687	324	1,073	1,509
增加率					
$1973 \sim 81$	6.8	n.a.	n.a.	9.4	8.7
$1973 \sim 76$	11.9	n.a.	n.a.	24. 1	20.6
$1976 \sim 81$	3.9	0.9	9.6°	1.5	2. 1
上 重					
1973	30.8	n.a.	n.a.	69. 2	100.0
1976	24. 6	44.9	n.a.	75. 4	100. 0
1981	26.8	42.3	27. 0	73. 2	100.0

註:MFA의 規制를 받는 纖維類만 포함.

資料: Costs of Protecting Jobs in Textiles and Clothing,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 84, p.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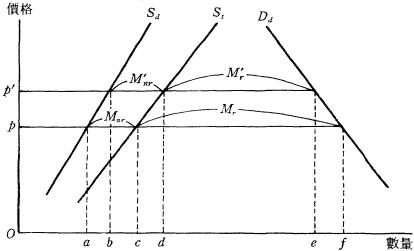
¹²⁾ 이에 대해서 輸入先進國側에서는 輸出開途國側의 製品高級化 노력 등으로 인한 輸出價格의 상승이 輸出物量 增加率의 鈍化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¹³⁾ MFA Forever: Future of the Arrangement for Trade in Textile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International Issues No.5. p. 13.

¹⁴⁾ 여기서 需要增加는 考慮하지 않았다.

¹⁵⁾ 간혹 그와 같은 生產性增加가 輸入增加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輸入量과 生產性 사이의 因果關係에 대해 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圖 2] 輸出自律規制의 經濟的 效果



 S_d :輸入國內 供給

 S_t :輸入國內 供給+非規制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

D_a: 輸入國內 需要 p: 輸入規制前 價格 p': 輸入規制後 價格

M_{nr}: 非規制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 M_r: 規制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

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調整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기는 하나 長期的으로 보면 그러한 產業部門間 勞動의 재조정은 원활한 產業構造調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經濟成長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輸入規制論者들의가장 큰 구실이 되고 있는 輸入國의 失業增大問題는 근본적으로 輸入增大로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輸入國의 硬直的인 產業構造로 인하여 새로운 雇傭機會를 많이 창출해 내지 못하는 데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纖維類의 價格上昇效果 및 貿易轉換效果

MFA下에서의 雙務協定을 통한 纖維類의輸入數量規制는「쿼터」관리를 輸出國에서 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미의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래에선 먼저 이와 같은輸出自律規制의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 各效果를 實證的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해 보기로하자.

[圖 2]는 輸入國의 市場狀況을 나타내고 있는데 S_a 와 D_a 는 각각 輸入國의 國內供給과 需要를 가리키며, S_t 는 輸入國의 國內供給 (S_a) 에 非規制輸出國 16 으로부터의 輸入을 합한 供給曲

¹⁶⁾ 輸出國은, 規制下에서 輸出하는 規制輸出國과 規制를 받지 않는 非規制輸出國으로 나누어서 고려하기로 한 다.

線이다. 현재 纖維製品의 價格水準 P에서 輸 入國의 國內生產量은 oa이며 af 만큼 輸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總輸入量 af는 非規制 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 ac와 規制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 cf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 기서 輸入國이 af이 總輸入量을 be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輸出自律規制를 통해 輸入數量 을 規制하기 시작했다고 하자. 그러면 [圖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價格은 p에서 p'로 상승 하게 된다. 그 결과 輸入國內 生產은 ab만큼 증대되며 總輸入量은 af에서 be로 줄어든다. 總輸入量 변화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 면 規制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은 cf에서 de로 감소한 반면 非規制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은 ac에서 bd로 오히려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즉 輸入國市場에서 非規制輸出國이 規制輸出國의 市場占有率을 잠식하는 貿易轉換效果가 발생 하는 것이다.

가. 價格上昇效果

MFA와 같은 輸入數量 규제조치는 前述한 바와 같이 輸入國內의 纖維類製品價格을 世界市場價格보다 높게 하여 輸入國 消費者의 부담을 加重시키며 그 差額은 일종의 經濟的 地代(economic rent)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MFA에서와 같이 輸出國이 「쿼터」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下에서는 그 經濟的 地代가전부 輸出國의 생산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MFA의 數量規制措置가 價格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업자들 사이에 있어서 「쿼터」의 讓渡에 부과되는 「쿼터」價格(quota premium)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수출업자가 「쿼터」를 양도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쿼터」價格은 일반적으로 선진국 수입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그 제품의 실제생산비와의 차액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輸入規制措置로인한 價格上昇幅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젠킨스」(1980)¹⁷⁾는 그의 연구에서 캐나다로 輸入되는 겉옷(outerwear)의 輸入價格을原價와「쿼터」價格 및 관세 등으로 분류하여分析하였다.〈表 7〉에서와 같이「쿼터」價格을輸入國到着價格(net landed cost)과 비교하여보면 台灣, 韓國, 홍콩의 경우에 각각 29%, 29%, 16%를 차지하고 있어 輸入數量規制가심각한 價格上昇效果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⁸.

또한 輸入數量規制는 주로 開途輸出國이 많이 輸出하는 低價製品에 적용되므로 그러한 低價輸入纖維類를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支出 부담을 줌으로써 所得分配를 惡化시키는 效果도 줄 수 있다고 「젠킨스」

〈表 7〉 台灣, 韓國, 홍콩으로부터 輸入되는 겉옷의 價格構成(1979)

(단위:캐나다\$)

	台灣	韓國	홍 콩
FOB 가 격	4. 41	6. 35	8.60
「쿼터」 가 격(B)	1. 57	2. 15	1. 52
관 세	1.86	2.44	3. 16
운임 및 보험료	. 66	. 66	.66
수입국도착가격(A)	5. 37	7.44	9.77
B/A (%)	29	29	16

資料: Cost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Protectionism, Glenn P. Jenkins, 1980.7.

¹⁷⁾ Glenn P. Jenkins, "Cost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Protectionism," 1980. 7.

¹⁸⁾ 영국의 경우 MFA 체결 이후 繊維類 平均輸入價는 15~40% 정도 상승하였고(British Consumer Association) 캐나다에선 1976~79년 사이에 規制國으로부터 의 輸入衣類都賣價格이 87%나 상승함으로써 非規制國으로부터의 수입의류가격 상승률 67%, 국내생산의류의 가격상승률 40%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1980)는 지적하고 있다19).

뿐만 아니라 輸入數量規制에 의한 價格上昇은 輸入國內의 경쟁력이 없는 생산자도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輸出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品이 高級化되고 高價化됨으로써 원래 高級纖維類를 생산하고 있던 수입국내 생산자와의 경쟁을 격화시켜 선진국 생산자가 오히려 低級品의 생산에 치중하게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이 產業構造調整을 마무리지을 때까지의 잠정적 규제를 목표로 하는 MFA가 纖維類의 價格을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產業構造調整을 지연시켰을 뿐만아니라 纖維類 輸出入國間의 무역마찰을 더욱 深化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貿易轉換(trade diversion) 效果

MFA에 의한 纖維類 輸入規制는 開途輸出國에게만 적용되고 先進輸出國 및 여타 特惠輸出國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圖 2]에서 본 바와 같이 開途輸出國의 輸入市場占有率이 그러한 規制輸出國에 의해 蚕食당하는 貿易轉換現象을 초래한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증 EC의 織

〈表 8〉 EC의 繊維類 輸入增加率(1976~1979) (年平均增加率)

	대상	I	1	111	그룹 V 제품	V
EC域外國	5. 7	2.4	3.8	16.8	0.0	12. 4
쌍무협정체결국	2.4	0.8	1.9	14. 1	0.4	4.2
저 개 발 국	4.0	1.9	5.5	15. 3	0.7	2.5
동 유 럽 국	0.3	0.0	9.4	4.6	0.7	4.3
지 중해 연 안국	7.9	4.6	8.1	21. 2	4.9	38.0
Lomé 협 정 국	8.8	4.7	95. 2	33. 3	16.7	

資料: 'Back Up' Study on Textiles, 섬유수출개도국단, 1984. 維類 輸入增加率을 〈表 8〉에서 보면 雙務協定 체결국들로부터의 輸入增加率은 2.4%로서 地中海 沿岸國의 7.9%와 Lomé協定國의 8.8% 보다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貿易轉換效果는 수입국측이 당초 의도했던 纖維類 總輸入의 規制를 실현하기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纖維類 製品生產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開途輸出國의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3. 綜合評價

이상 설명한 MFA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보면 MFA에 의한 纖維類의 規制는 輸入增加 를 크게 鈍化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保護貿易主義者들의 당초 주장과는 달 리 輸入國 纖維產業에서의 雇傭減少를 막는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先進輸入國에서의 雇傭減少 가 輸入增大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生產性의 급격한 증가, 勞動市場과 產業構造 의 硬直性 등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FA에서 의 輸入規制는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첫째, 輸入國內의 纖維類製品價格을 상승시 킴으로써 輸入國消費者의 부담을 加重시켰다. 특히 이와 같은 가격상승 효과는 低價製品에서 현저하여 低所得層의 支出負擔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함으로써 所得配分을 惡化시키는 효 과도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이 歪曲된 纖 維類의 價格構造는 輸入國의 纖維產業構造 조

¹⁹⁾ Glenn P. Jenkins, 前揭論文, pp. 42~44.

정을 지연시킴으로써 纖維類의 무역마찰을 深 化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MFA는 효율적 생산자인 開途輸出國에만 規制를 가함으로써 비교적 비효율적 생산자인 선진수출국 및 기타 특혜수출국의 수출을 상대적으로 늘림으로써 이른바 貿易轉換效果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 수입국의 纖維產業 보호목적도 달성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세계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開途輸出國의 輸出을 둔화시킴으로써그들의 對先進國 輸入需要를 감소시켜 세계무역의 축소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MFA는 원래 世界纖維類貿易의 점진적 자유화를 대전제로 하고 完全自由化가 이루어질때까지 纖維類貿易의 질서확립 및 輸入先進國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잠정적인 輸入規制措置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MFA下에서의 輸入規制가 초래하는 이상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MFA는 오히려 纖維類貿易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V. MFA의 改編論議와 우리의 對應方向

이 章에선 최근의 MFA改編論議를 요약・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向을 論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纖 維類 輸出推移를 간략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1. 우리나라의 纖維類 輸出推移

纖維類產業은 勞動集約的 產業으로서 그동 안 우리나라의 主宗輸出產業이었을 뿐만 아니라 雇傭面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纖維類產業은 1983년 현재 製造業 總附加價値와 雇傭의 15%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總輸出에서의 비중은 70년대를 통하여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최근에도 25%나 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莫重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纖維類의 輸出推移를 〈表 9〉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MFA 成立 이전인 1960년에서 1972년 사이에 總輸出은 年平均 42 %씩 증가된 데 반하여 纖維類 輸出增加率은

〈表 9〉		鹼出額	및	輸出物量	推移
125 0/	作品小庄大兴	和山口	ᆽ	那四沙里	עניבונ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60}_{\sim 72}$	1973 ~77	1978 ∼83
總	輸增	出 加	額(億\$) 率(%)	0. 3 65. 7					209. 9 19. 9				40.7	· 16. 0
纎	維類增總輔	輸 出加	額(億 \$) 率(%) 比重(%)	0. 04 57. 8 13. 3	61.0	44. 4	28. 1	11.3	23. 6	-4.4	2.2	56.8	• 35. 7 •	12.8
繊	維類!	輸出物 加	量(千%) 率(%)			97 26. 0	339 32. 4	667 22. 8		707 -6.4			16.8	9.2

資料:『繊維年鑑』,『化繊便鑑』 각호.

57%로서 纖維輸出 增加率이 總輸出 增加率을 上廻하였다. 그러나 MFA I 체결후인 1973년에서 MFA II 체결 전인 1977년까지의 總輸出增加率은 41%, 纖維類輸出增加率은 36%로서纖維類輸出增加率이 總輸出增加率보다 낮아졌으며 MFA II 와 III에 결친 1978년에서 1983년까지의 總輸出增加率은 16%, 纖維類輸出增加率은 13%로서 증가율이 더욱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80년대 이후로는 纖維類輸出增加率이 현저하게 鈍化되어 82년에는 負의 증가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²⁰⁾. 이러한 纖維類輸出增加率의 급격한 하락은 말할나위도 없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강화된 先進輸入國의 輸入制規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 纖維類輸出의 구조적 특징인 동시 에 커다란 問題點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美國, 日本 및 EC國들에 偏重된 輸出構造이다. 〈表 10〉을 보면 1983년중 美國, 日本 및 EC國에 輸出한 纖維類輸出이 전체 纖維類輸出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국에 偏重된 수출구조는 일반적으로 輸入規制를 유발하기가 쉽고 그 특정국의 경기면 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하여 큰 파급효과를 가짐으로써 장기지속적인 수출신장을 狙害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主要輸出市場인 美國, EC 등이 강력한 纖維類輸入規制를 시행하고 있으므로²¹⁾ 더욱 큰 어려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纖維類 種類別 輸出推移를 살펴보면 〈表 11〉과 같다. 輸出比重이 가장 높은 衣類는 60년대 이후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1982년 현재 纖維類 輸出의 42% 정도를 차지

〈表 10〉 主要國에 대한 繊維類 輸出實績 推移

(단위:百萬달러)

						C 12.11	DIST E-17
		1972~75	1976~79	1980	1981	1982	1983
美	國	205. 0	827.7	1, 113. 5	1, 468. 2	1,619.0	1,981.1
	A(%)	_	_	13.6	31.9	10.3	22.4
	B(%)	15 . 4	23.0	_		28. 1	33.9
日	本	431.5	814.6	885.0	1,018.5	974.0	722.0
	A(%)				15. 1	-4.3	-25.9
	B(%)	32.4	22.6	17. 7	16.5	16. 5	11.9
E	С	144. 5	616.2	1,048.3	1, 146. 9	1,045.6	949.8
	A(%)			17. 1	9.4	-8.8	-9.2
	B(%)	10.9	17.1	20.9	18.5	18. 2	16.3
繊維類	頁 總輸出	1,331.0	3,600.2	5,010.0	6, 190. 0	5,920.0	6,050.0
	Α	_	170.5	9.3	22. 1	-4.5	1.4

註:A:前年同期對比增減率

B:總纖維輸出中 比重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化繳便覽』.

²⁰⁾ 同期間中 纖維類輸出物量面에서의 年平均 增加率은 각각 36%, 16.8%, 9.2%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금액면에서의 증가율에 비하여 한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²¹⁾ 우리나라 纖維類輸出에 있어서 규제하의 輸出比率은 평균적으로 50%를 약간 초과하고 있으나 미국과 EC에 대한 纖維類輸出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0% 이상이나 되고 있다.

〈表 11〉 纖維類 種類別 輸出比重

(단위:%)

			1965	1971	1976	1980	1981	1982
綿	紡	織	22.4	10. 7	6. 1	8.2	5.8	6.2
化		纎	11.6	8.9	12.4	22.6	22.8	21.6
衣		類1)	32.0	37.4	37.5	35.3	37.6	41.5
其		他 ²⁾	34.0	43.0	44.0	33.9	33. 8	30.7
	計		100.0	100. 0	100.0	100.0	100. 0	100.0

註:1) 編織製品 除外 2) 編織物 包含

資料:關稅廳

하고 있다. 한편, 綿織物의 輸出比重은 70년 대 중반 이후 6% 수준에 정체하고 있는 반면 化學纖維의 輸出比重은 60년대의 10% 수준에 서 계속적으로 上昇하여 1982년 현재 22%를 차지하고 있다.

2. MFA 의 改編論議

1986년 7월에 滿了될 MFA II 이후의 纖維類 質易體制에 관해서는 GATT를 위시하여 輸出 開途國,輸入先進國들이 이미 각종 보고서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해 왔다. MFA의 改編方向에 관해서는 주로 輸出開途國과 輸入先進國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지만 輸出開途國 진영내에서도 대량수출국과 소량수출국의 입장이 다르고 수입 선진국측에서도 수입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그리고 같은 수입국내에서도 纖維類 生產業者나 輸入業者나에 따라서 주장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주장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GATT事務局은 1982년 GATT자료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서 1984년 여름에 MFA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²²⁾를 발간하였다. 그 보고서에서 GATT事務局은 MFA가 세계의 纖維類貿易과 輸出開途國 및 輸入先進國의 경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 MFA의 철폐가 가져올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MFA문제는 전반적인 세계의 무역정책 내지는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MFA를 철폐하고 GATT체제로 복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먼저 신뢰할 수 있는 잠정적 纖維類 貿易體制를 설정하는 데 각국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輸出開途國들은 1984년 7월의 「카라 치」會議 등 일련의 纖維類 輸出開途國會議를 통해서 MFA를 철폐하고 GATT의 기본원칙을 遵守한다는 전제하에 GATT體制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MFA 自體가 GATT體制로부터의 離脫일 뿐만 아니라 輸入先進國側이 실제 MFA의 운영과정에서 MFA規定조차도 위반하여 規制를 강화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輸出開途國들은無差別原則과 數量制限의 禁止, 그리고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등을 규정하고 있는 GATT

²²⁾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May 1984.

體制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입선진국측에서는 美國, EC 등과 같은 主要 輸入國들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대체적으로 GATT體 制로의 복귀를 忌避하며, MFA를 修正延長하든지 MFA와 유사한 纖維類 무역제한체제를 新設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輸入先進國側이 이와 같이 GATT體制로의 복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先進國 纖維類產業의 낮은 경쟁력에 비추어 GATT體 制下에서 輸入纖維類와 자유경쟁해 나갈 자신 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GATT 19條 긴급수입제한에 의한 輸入規制는 MFA에 의 한 輸入規制에 비해 規制發動節次도 훨씬 복 잡함은 물론 모든 수출국에 대해 無差別的으 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被規制國들로부 터 報復措置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인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MFA의 改編論議는 크게 두 가지 案으로 나눌 수 있겠다²³⁾. 즉, MFA 를 철폐하고 GATT의 자유무역체제로 복귀하 자는 것과 MFA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修正延長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案을 纖維類貿易에 대한 規制形態面에서 비교해 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案에 따르면 GATT 19條 긴급수입제한에 의해서 輸入規制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案에 의하면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수출입국간의 延長협상결과에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존 MFA規定이 대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두가지 案에 따르는 纖維類貿易에 대한 규제내용은 GATT 19條 긴급수입제한과 MFA規定의 해당조항으로서 〈表 12〉에서와 같이 요약될수있다.

3. 우리의 對應方向

MFA 下에서는 과거의 수출실적에 準하여 「쿼터」를 배분함으로써 MFA가 존속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大量輸出國은 少量輸出國이 나 新參輸出國들에 비해서 「쿼터」배분상 旣得 權을 누릴 수 있다는 利點이 있을 수 있다. 그

〈表 12〉 MFA와 GATT 19條(緊急輸入	制限)의	比較
---------------------------	-------	----

	MFA	GATT 19條
1) 規制發動의條件	市場교란(Market Disruption)	深刻한 被害(Serious Injury)
2) 基準實積	規制導入 2個月前早日 1年間 輸 入實績	없음(단,總量「쿼터」範圍內에서 輸入實績을 根據로 國別 Share配 定可能)
3) 年增加率	6%	없 음
4) 規制期間	• 3條적용時 1年延長 및 更新可能 • 4條적용時 없음	없음(被害防止 및 치유에 必要한 期間)
5) 規制方式 6) 規制對象國	雙務引引(輸出國 引引管理) 繊維輸出開途國	總量쿼터(輸入國 쿼터管理) 모든 輸出國

²³⁾ GATT事務局의 前揭報告書에 의하면 이 두 가지 案 외에도 GATT條項의 완전적용은 물론 GATT條項 자체의 자유 화까지 포함하는 세번째 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여기선 그에 대한 논의를 생 략한다.

러나 이러한 旣得權도 최근 들어서는 輸入急 增防止, 少量輸出國 優待 등 여러가지 이유에 서 크게 잠식당해 왔으며 앞으로 MFA가 다 시 修正延長된다면 더욱더 잠식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다된다.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 볼 때, MFA에서 처럼 人爲的으로 결정된 [쿼터]規制內에서 수 출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 지 不利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纖 維類製品중에서 현재로선 우리의 경쟁력이 약 하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品目들의 輸出伸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纖維產業內에서는 물론 纖維產業과 餘他產業과의 產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킴으로써 순조로운 무역확대와 경제성 장을 沮害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만약 MFA와 같은 GATT原則에 違背되는 국제무 역협정이 MFA를 先例로 하여 他產業部門의 交易에까지 확산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幼稚 産業育成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무역규범 자체가 위태로와지기 때문이 다.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보아 MFA는 원칙적으로 撤廢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MFA 改編論議의 진전상황을 볼 때 현단계에서 MFA가 撤廢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막상 撤廢된다고 하더라도 輸入先進國 등이 一方的 輸入規制 및 VER, OMA등 灰色規制措置들을 남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GATT原則으로의 복귀는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MFA를 撤廢하고 GATT 體制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또한 이를 支持해야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自由貿易體制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MFA II 가自由貿易體制로의 전환을 위한 잠정적 체제로서 좀더 GATT原則에 부합되는 협정으로 修正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MFA 改編協商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原則이 강력히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MFA의 修正延長은 궁극적으로 完全 撤廢를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하므로 MFA撤 廢의 時期를 明文化하여야 하며 원래의 MFA 이후 두 차례의 延長過程에서 新設된 모든 毒 素條項을 철폐해야 한다.

둘째, MFA를 좀더 GATT原則에 부합되 도록 修正해야 한다. 예를 들면 選別的 規制 의 근거가 되는 市場攪亂 概念을 再整立하고, 規制對象品目을 축소하며 融通性 條項을 擴大 하는 것 등이다.

세째, 이러한 MFA規定에서 또다시 離脫이 발생하지 않도록 輸入先進國의 MFA 준수여 부와 產業構造調整 여부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 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MFA의 撤廢時 적용될 GATT 原則,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와 VER, OMA 등과 같은 灰色地帶措置들을 좀더 自由貿易을 助長하는 방향으로 再整備해야 한다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朴俊性,『世界纖維產業斗 先進國 輸入規制』, 國際經濟研究院, 1981.7.
- 商工部,『多者間 纖維協定(MFA) 解說書』, 19 84.7.
- 韓國產業銀行,『纖維產業의 構造分析과 國際競爭力 强化方案』,1984.12.
- 韓國纖維產業聯合會,『纖維年鑑』,1977~83.
- _____,『纖維工業現况』1982,1983.
- Curzon, Gerard and Jose de la Torre, Juergen B. Donges, Alasdair I. MacBean, Jean Waelbroeck, Martin Wolf, MFA Forever? Future of the Arrangement for Trade in Textile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81.
- Exporters of Textiles and Clothing, "Back Up" Study on Textiles, 1983.
- GATT,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1984.

- Hamilton, Carl, "Voluntary Export Restraints, Trade Diversion and Retali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Seminar Paper No. 253, University of Stockholm.
- Jenkins, Glenn P., "Cost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Protectionism, The case of Canada's Clothing Sector", The North-South Institute, 1980.6.
- Keesing, Donald B. and Wolf, Martin., Textile Quotas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Thames Essay No. 23, 1980.
- Wolf, Martin and Hans Hinrich Glismann, Jeseph Pelzman, Dean Spinanger, Costs of Protecting Jobs in Textiles and Clothing,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Thames Essay No. 37, 1984.

海外商品先物市場의 活用方案

- 1. 序
- Ⅱ.「헤る」의 理論과 類型
- Ⅱ. 우리나라의 先物去來實績과 現况
- N. 先物去來의「시뮬레이션」分析
- V. 先物去來의 活性化方案
- W. 要約 및 結論

1. 序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先物市場을 活用하기 위하여 海外先物市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方案과 先物市場을 國內에 設立하는 方案을 들 수 있다. 本稿는 첫번째 問題인 海外先物 市場의 利用方案을 講究하고 그 理論的 背景 을 說明하는 데 焦點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經濟運用에서 國際收支問 題가 중요한 政策課題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 다. 즉, 慢性的인 貿易收支赤字를 改善하기 위하여 巨視的인 側面에서 總需要管理를 통한 輸入抑制方案이 論議되고 있다. 貿易收支改善 을 위한 巨視的인 政策方案을 實施함과 동시 에 보다 근본적인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微視 的인 政策代案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徽視的인 接近方法의 하나로서 提示될 수 있는 것이 輸出 및 輸入管理政策이라 할 수 있다. 먼저 輸出管理側面에서는 輸出商品의 附加價值를 提高하는 方案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能動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輸入管理側面에서는 施設財와 輸入原資材의國產化率을 높이고 동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輸入代錢을 減少하는 政策方案이 樹立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輸入施設財는 國內技術이 蓄積되고 高度化 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國產化率의 提 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原油를 포함한 1次商品의 輸入依存度가 매우 높은 실정에 있으나 國產 代替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輸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入管理側面에서 1次商品 輸入問題는 안정된 價格으로 필요한 物量을 適時에 確保하는 데 있다. 海外商品先物市場의 이용은 이와 같은 1次商品의 輸入管理政策의 一環으로서 檢討되 어야 할 것이다.

1983年末 現在 原油를 포함한 1次商品의 導入額은 123億弗로서 全體輸入의 約 47%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1次商品의 輸入管理問題는 貿易收支의 改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政策課題가 아닐 수 없다.

1970年代에 발생한 두 차례의 石油波動과 資源波動으로 우리나라 經濟는 이러한 外部的 인「쇼크」에 매우 脆弱함을 經驗하였다. 그리 고 우리 주위에서 原資材購買를 잘못함으로써 막대한 金額의 外貨를 낭비하고 동시에 高價 로 購入된 原資材價格이 國內物價에 轉嫁되어 物價安定을 저해한 事例가 頻繁하게 발생하고 있다. 國際市場은 構造的으로 매우 불안정한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市場構造는 앞 으로도 常存할 것인바 1次商品의 輸入依存度 가 높은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이에 대한 適切 한 對應方案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여 海外商品先物市場의 적극적인 이용을 政策代案으로 提示할 수 있다고 본다.

海外商品先物市場의 이용은「헤징」을 가능 함께 함으로써 國內實需要者들이 안정된 價格 으로 1次商品의 購買를 가능하게 하고 國家經濟의 立場에서는 무분별한 購買에 따른 外貨 浪費要因을 제거할 수 있게 되며 國內物價安定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海外先物 市場을 이용하여 적절한「헤징」을 할 수 있을 경우 國家經濟의 立場에서 外貨節約과 동시에 物價安定效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海外先物市場을 통한「해정」은 언제 나 價格變動에 따른 危險負擔을 완전히 제거 한다고 볼 수 없다. 「해정」을 적절히 驅使하 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을 수도 있게 된다. 成功的인 「해정」을 하기 위해서는 高度의 技術 및 經驗이 필요하다. 따라서 海 外先物市場을 成功的으로 이용하기 위한 前提 條件으로서 「해정」의 理論과 技法에 대한 충 분한 理解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海外先物市場 利用度는 매우 微微한 實情에 있다. 政府는 1982年 海外 先物去來管理規定을 改正하고 民間企業이 자유롭게 先物去來에 參與할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으나 별다른 增加趨勢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先物去來의 活性化方案은 시급한 政策課題라고 할 수 있다.

本稿는 海外先物市場을 보다 效率的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先物去來의理論的 背景을 검토하고 「헤장」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여 향후 先物去來의 活性化를 위한 政策代案을 제시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本稿는 第 11章에서 「헤장」의 主要理論과 類型을 說明하고 第 11章에서 우리나라 先物去來의實績을 檢討하고 있으며 第 12章에서「헤장」의「시물레이션」分析을 이용하여 그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였다. 그리고 第 12章에서 先物去來의 活性化方案을 論議하고 있으며 끝으로 第 11章에서 要約 및 結論으로 構成되어 있다.

Ⅱ. 「헤ろ」의 理論과 類型

Working(1953)의 定義에 의하면 先物去來

란 現物去來보다 制約的인 規定과 慣行下에서 「혜정」과 投機(speculation)를 目的으로 遂行 되는 去來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先物去來란 未來의 一定時點에서 引渡되는 商品에 대한 賣買行爲로 인식되고 있으나 上記 定義에 의하면 商品에 대한 所有權의 移轉과 引渡는 의미가 없으며 意圖的으로 「혜정」과 投機를 하기 위한 去來라고 볼 수 있다. 先物去來의 이와 같은 性格은 다음과 같은 資料에서 立證되고 있다. 美國의 先物市場 資料에 의하면 總先物契約中에서 現物이 引渡되는 比率은 2%이대로 推計되고 있다. 그리고 農產物의 경우收穫年度(crop-year)中에 실제 收穫量의 約 20 倍에 해당하는 物量이 先物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다.

先物市場은 「헤징」을 주된 목적으로 運營되고 있으며 投機는 「헤징」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去來形態로서 先物市場에서 「헤징」을 가능하게 하는 流動性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헤징에 관한 說明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理論으로 發展되어 왔다.

1. 保險[헤징 理論

保險「헤정」은 傳統的인「헤정」으로서 現物市場에서 價格變動에 수반하는 위험을 先物去來를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즉 現物市場에서의 商品契約과 반대되는 立場을 先物市場에서 취함으로써 現物去來에서 발생한 損益을 先物去來에서 발생하는 損益으로 補填할

수 있게 된다²⁾. 保險[헤징]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現物價格과 先物價格이 동일한 폭으로 變 動하는 것을 前提하고 있으며 이때 두 價格의 變動幅이 동일하고 去來量이 같을 때 完全「헤 정」(perfect hedging)이 되다.

相異한 두 時點인 t_1 과 t_2 에서 現物價格을 各 p_1^1 과 p_2^2 라 하면 現物去來에서의 損益(π_s) 은 去來量을 X라 할 때 다음과 같다.

$$\pi_s = X(p_s^2 - p_s^1) \cdots (1)$$

그리고 두 時點에서의 先物價格을 各各 p_s^1 라 하면 「해정」을 했을 경우의 損益 (π_h) 은 다음과 같다.

$$\pi_h = X\{(p_s^2 - p_s^1) - (p_f^2 - p_f^1)\} \cdots (2)$$

式(2)에서 t_1 과 t_2 期間中 p_s 와 p_f 가 같이 上昇하거나 下落할 때 π_h 는 항상 π_s 보다 작으며變動幅이 동일할 때 π_h 값은 零이 되어 完全「헤징」을 이루게 된다. t_1 時點에서 「혜징」을 하는 것은 t_2 時點에서 市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價格變動을 豫測할 수 없으므로 式(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物去來와 반대되는 先物去來를 同一時點에서 締結하여 契約單價를(完全「혜징」의 경우) p_s^1 에 固定시킬 수 있게 된다.

先物去來는 對象品目의 生產者,加工業者, 혹은 輸出入業者에 따라 相異한 立場에서 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現物의 購買時에는 賣渡「해장」을,그리고 現物의 販賣時에는 買入「해장」을 行한다. 賣渡「해장」은 價格이 下落할 때,그리고 買入「해장」은 價格이 上昇할 때 各各 現物去來의損失을 先物去來의 利益으로 補塡함으로써 價格變動의 불확실성을 克服하고 있다.

傳統的인 保險「헤징」理論은 1950年代 이후

¹⁾ Working(1960), Peck(1975) 參照.

²⁾ 우리나라에서 「헤정」이란 通常的으로 保險「혜정」을 指稱하고 있다.全經聯((1975),國際經濟研究院(1979), 調達廳(1983) 参照.

先物市場에 관한 經驗的 研究에서 많이 修正 되고 있으나「헤징」의 基礎理論으로서 重要視 되고 있으며 다음에서 說明할「헤징」理論의 始 發點이 되고 있다.

2. 期待收益理論

價格變動의 위험을 轉嫁하기 위한 保險[헤 징」에서 「혜징」에 참여하는 商人은 주어진 價 格條件下에서 一律的으로 各個의 與件에 따라 買入「헤징」이나 賣渡「헤징」의 立場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先物去來에 임하는 여러 部類의 대부분 商人들은 對象商品에 관한 諸 般情報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商品情報를 이용하여 價格變動에 대한 豫測을 하게 되고 이 展望을 바탕으로 「헤징」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商人이나 會社가 特定商品의 在庫 를 保有하고 있을 때 價格上昇이 예상되면 「헤 징 |을 하지 않으며 價格下落이 우려될 때에 한 해서 賣渡「헤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自意的「헤징」(discretionary hedging) 은 사실상 「헤징」과 投機가 混用된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保險「헤징」은 흔히 現物價格과 先物價格이 같은 폭으로 上昇하거나 下落하는 完全「헤징」의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헤징」에 대한 誤解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실제의 先物去來에서 完全「혜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³⁾.

첫째,「헤징」은 앞에서 설명된 保險의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價格差異를 이용하여 利潤을 추구하는 裁定去來(arbitrage)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先物去來에서 保險「해정」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比重이 작으며 대부분의「해정」은 現物價格과 先物價 格의 差異, 즉 「베이시스」(basis)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利潤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式(2)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pi_h = X\{(p_s^2 - p_f^2) - (p_s^1 - p_f^1)\}$$
(3)

式(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정」에 따른 利潤(π_h)은 두 時點에서 「베이시스」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즉 賣渡「해정」에서 「베이시스」의 上昇은 利潤을 가져오나 「베이시스」의 下落은 損失을 가져온다. 따라서 현명한 商人은 前者의 경우에 한해서 「해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헤징」은 價格變動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물론 「헤징」으로 인하여 危險負擔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으나 「헤징」 후에도 위험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式(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의 價格水準의 變動에따른 不確實性이 「헤징」으로 인하여 「베이시스」變動에따른 不確實性으로 轉換되었다. 일반적으로 價格水準의 變動보다는 「베이시스」의 變動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危險負擔이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째, 「헤정」은 반드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헤정」의 역할이 危險回避를 위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헤정」은 生產業者나 關聯商人들이 市場情報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現物價格이 先物價格에 비하여 낮고 또한 「베이

³⁾ Working(1953, 1962) 参照.

지스」의 上昇이 예상될 때 많은 商人들은 이 情報에 입각하여 賣渡「헤징」을 하게 된다. 그리고 商人들이「헤징」을 항상 一律的으로 하지 않고 選別的으로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Working(1962)은 다음과 같이 「헤징」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가. 保管「헤징」(carrying-charge hedging)

保管「헤징」은 在庫를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언고자 하는 賣渡「헤징」을 말한다. 保管「헤 징」의 效果는 價格水準의 變動을 예측하여 이 익을 추구하는 營業行態를 「베이시스」의 變動 을 예측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營業行態로 轉 換하는 데 있다. 따라서 保管「헤깅」은 「베이 시스」變動에 대한 예측이 價格水準의 變動에 대한 예측보다 용이하다고 생각될 때 채택된 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去來商品의 生 產者나 實需要者는 保管「헤징」보다는 다음에 서 설명할 選別的「헤징」(selective hedging) 을 選好하며 中間商人이 保管「헤징」을 選好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保管「혜정」은 保有在 庫에 대한 「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在庫를 보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시되고 있다.

나. 營業「헤징」(operational hedging)

營業「헤정」은 加工業者나 關聯商人들의 賣 買에 관한 意思決定을 용이하게 하는 「혜정」 을 말한다. 營業「혜정」은 통상적으로 短期間 內에 去來가 淸算되므로「혜정」期間 중에「베 이시스」는 小幅的인 變動을 보이고 있어 危險 負擔의 감소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短期間, 즉 2~3日 혹은 1日 이내에 現物價格 과 先物價格은 매우 유사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베이시스」가 價格에 비하여 變動幅 이 작기 때문에 營業「헤징」은 賣買決定을 용 이하게 함으로써 營業活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 選別的「헤징」(Selective hedging)

選別的「해정」이란 價格變動에 대한 기대에 따라 選別的으로 행하는 「해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在庫를 보유하고 있을 때 價格의 下落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賣渡「해정」을 하며 이때 「해정」의 목적은 危險回避가 아닌 損失의 防止라고 할 수 있다. 美國 糧穀市場의「해정」資料에 의하면 대부분의 集荷場에서 選別的「해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調査되고 있다.

選別的「해정」의 期待效果는 損失의 방지에 있으므로 價格豫測이 비교적 정확할 때 그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 選別的「해정」은 先物市場에서 그 성격상 많은 投機去來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라. 豫想「헤징」(anticipatory hedging)

豫想「헤징」이란 選別的「헤징」과 마찬가지로 期待價格에 따라 행하여지나 現物市場에서 相殺되는 契約을 수반하지 않는 「헤징」을 말한다. 豫想「헤징」의 목적은 期待價格의 變動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加工業者와 같은 實需要者가 미래에 소요되는 商品에 대하여 生產者가 미래에 生產될 商品을 事前에 先物市場에서 賣渡契約을 締結하는 두 가지 경우로 대별되고 있다. 따라서 豫想「헤징」은 賣買契約에 대한 일시적인 代替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5. 「포트폴리오 헤징」(portfolio hedging)理論

전통적인 保險「혜정」理論에 의하면 先物市場을 통하여 價格變動에 수반하는 危險을 投機者에게 轉嫁하기 위하여 生產業者나 加工業者들은 現物去來와 동시에 現物과 반대 방향으로 先物契約을 締結한다. 한편 期待收益理論에 따르면 關聯商人들은 現物價格과 先物價格의 相對的 變化가 유리하다고 예측될 때에 한하여 「혜정」을 함으로써 「혜정」의 목적이 市場의 不確實에 따른 危險負擔을 위희피하기한 것이 아니고 期待收益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在庫保有者는 在庫物量에 대한賣渡「혜정」의 여부를 현재의 市場價格 및 그期待價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先物去來業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많은 商人들이 價格變動의 危險을 회 피하기 위하여「헤징」을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美國의 커피市場에서 價格變動에 대한 危 險負擔이 적은 商人에 비하여 危險負擔이 많 은 輸入業者가 매우 적극적으로 「헤징」을 이 용하고 있다. 따라서 期待收益理論을 주장한 Working의 論旨와는 달리 先物去來에서 保險 「헤징」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 로 보인다.

둘째, 去來業者는 「혜정」에 임할 때 「베이 시스」의 變化뿐만 아니라 價格水準 自體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現物價格의 上昇이 예상되면 在庫保有量을 증대시키면서 賣渡「혜정」을 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先物을 買入하기도 한다. 반대로 價格下 落이 예상되면 現物買入量보다 많은 物量에 대하여 賣渡「혜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혜정」과 投機가 混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保險「해정」이나 期待收益「해정」理論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現物市場에서 去來된全量에 대하여「해정」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現物去來量 혹은 保有在庫量의 일부에 대하여「해정」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즉 市場의 需給 및 期待價格에 따라「해정」되는 物量을 自意的으로 결정하고 있다.

위에서 검토된「헤징」의 行態는 保險「헤징」 理論이나 期待收益理論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Johnson(1960)과 Stein(1961)은 두 가지 理論을 종합하여 「헤징」行態를 證券 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危險과 收益의 관계로 分析하여 「포트폴리오 헤징」理論으로 설명하 고 있다. 여기서 財務管理에서 소개되는 「포 트폴리오」理論과 상이한 점은 現物과 先物이 收益과 危險이 다른 相互代替의 관계에 있지 않고 現物市場에서 契約된 物量이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헤징」物量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다.

式(2)에서 現物去來量과 先物去來量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 X_s 와 X_f 라 하면「헤징」후의 收益은 다음과 같다.

$$\pi_h = X_s(p_s^2 - p_s^1) + X_f(p_f^2 - p_f^1) \cdots (4)$$

式(4)의 期待値는

$$E(\pi_h) = X_s E(p_s^2 - p_s^1) + X_f E(p_f^2 - p_f^1)$$
.....(5)

 t_1 과 t_2 期間 중의 現物價格과 先物價格의 分散 및 共分散을 각각 δ_s^2 , δ_r^2 , 그리고 $\delta_s f$ 로 표

시하면「헤징」收益의 分散은 다음과 같이 誘導되다.

$$Var(\pi_h) = X_s^2 \delta_s + X_f^2 \delta_f^2 + 2X_s X_f \delta_{sf} \cdots (6)$$

式(6)을 X_f로 微分하여「헤징」收益의 分散 을 극소화하는 X*값은

$$X_f^* = -\frac{X_s \delta_{sf}}{\delta_f^2} \cdots (7)$$

「헤징」比率(hedging ratio), 즉 現物去來 物量과 「헤징」된 物量의 比率(X_r^*/X_s)을 r이라 하면 式(7)로부터 다음과 같이 誘導된다.

$$r = \frac{\delta_{sf}}{\delta_f}$$
 (8)

한편 式(7)을 式(6)에 代入하면

$$Var^*(\pi_h) = X_s^2 \delta_s^2 + \frac{X_s^2 \delta_{sf}}{\delta_f^2} - \frac{2X_s^2 \delta_{sf}}{\delta_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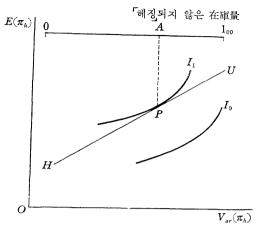
$$= X_s^2 \left(\delta_s^2 - \frac{\delta_{sf}}{\delta_f^2}\right) \quad \cdots (9)$$

 p_s 와 p_f 의 相關係數(
ho)는 $rac{\delta_{sf}}{\delta_s\delta_f}$ 이므로 式(9)에서

$$egin{align*} Var^*(\pi_h) = & X_s^2 oldsymbol{\delta}_s^2 \Big(1 - rac{oldsymbol{\delta}_{sf}^2}{oldsymbol{\delta}_s^2 oldsymbol{\delta}_s^2}\Big) \ = & X_s^2 oldsymbol{\delta}_s^2 (1 -
ho) \cdots \cdots \cdots (10) \end{split}$$

式(10)에 의하면 現物價格과 先物價格의 相關係數가 클수록「헤징」收益의 分散, 즉「혜징」으로 인한 위험의 감소가 커지게 된다. 이려한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혜징」理論이 保險「혜징」理論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保險「혜징」理論이나 期待收益理論에서 價格危險은 價格의 變動에 따른 利害의 得失로 측정되며「혜정」의 效果 역시 事後的으로 現物價格과 先物價格의 變動에서 計算되는 收益에 따라 評價

[圖 1] 「포트폴리오 헤징」



되고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헤징」理論에서는 價格危險과 「헤징」效果가 실제의 價格變動과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즉 價格危險이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價格變動에 따른 收益의 分散으로서 측정되며 「헤징」의 效果는 「헤징」으로 인하여 收益의 分散이 감소할 수 있는 事前的인 期待値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圖 1]에서 100單位의 在庫를 보유하고 있는 商人이 가질 수 있는 期待收益($E(\pi_h)$)과 危險($Var(\pi_h)$)의 組合을 나타내는 機會軌跡 (opportunity locus)은 HU와 같다. H點에서 保有在庫는 全量「헤징」되었고 U點에서는 반대로 全量이「헤징」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H點으로부터 U點으로 移動함에 따라서 期待收益과 危險度가 上昇함으로써 HU는 正의 기울기를 가지고 右上向하고 있다. 한편 $E(\pi_h)$ 와 $Var(\pi_h)$ 의 無差別曲線(Indifference curve)은 I_0 , I_1 과 같이 그려진다. 따라서 保有在庫의期待效用이 극대화되는 HU와 I_1 의 接點 P에서 「헤징」比率이 결정된다. 즉 保有在庫量 100單位 중 (100-OA)가 「헤징」되며 OA는 「헤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하게 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포트폴리오」理論에서 「혜정」과 投機는 각각의 效用函數에 의해결정되는 $E(\pi_h)$ 와 $Var(\pi_h)$ 의 最適組合을 추구하는 점에서 동일한 行態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혜정」은 損益이 발생하는 現物去來에수반되는 점이 근본적으로 投機와 구별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先物去來 實績과 現况

우리나라에서는 1次 石油波動과 資源波動이 발생한 직후인 1974年 12月에 大統領令으로 「主要物資 海外先物去來管理規程」이 制定 公 布되고 調達廳訓令으로「主要物資 海外先物去 來管理規則」40이 發表됨으로써 처음으로 先物 去來가 도입되었다. 同規程에 의하면 先物去 來를 하고자 하는 企業이 先物去來依賴人이 되고 調達廳이 先物去來委託代行者가 되어 先 物去來가 허용되었다. 先物去來에 관한 諸般 事項은 先物去來委員會를 構成하여 管掌하게 하였다. 先物去來依賴人이 委託할 수 있는 先 物去來對象品目은 小麥, 옥수수, 大豆, 생고 무, 原綿, 電氣銅, 原糖, 그리고 原毛로 국한 시켰으며 先物去來依賴人이 委託할 수 있는 去來量은 當該依賴人이 과거 2年間에 輸入한 平均數量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委託證據金을 위한 外換은 調達廳의 管掌下에 사용되도록 規程되어 있었다.

調達廳은 先物去來委託代行者가 되어 先物 去來仲介人으로 美國의 Merryll Lynch International Inc.와 유일하게 仲介契約을 締結하 고 國內의 모든 先物去來를 代行하였다. 따라 서 先物去來는 매우 한정된 範圍內에서 硬直 的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政府는 先物去來의 活性化를 기하기 위하여 1982年 1月「主要物資 海外先物去來管理規程」 과「管理規則」을 改正하기에 이르렀다. 改正 된 規程에 의하면 先物去來依賴人이 先物去來 委託代行者를 經由하지 않고 직접 先物去來仲 介人에게 去來를 委託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企業들은 종전과 같이 번잡하게 調達 廳을 經由하지 않고 先物去來를 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先物去來量도 과 거의 實績에 구애됨이 없이 調整할 수 있게 되었고 先物去來의 對象品目도 종전의 8個品目 에서 20個品目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國 內 1次商品 輸入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品目에 대한 海外先物去來가 가능하게 되었다. 同管理規則에 의한 先物去來可能品目 은 小麥, 옥수수, 大豆, 大豆油, 大豆粕, 수 수, 커피, 原糖, 原綿, 原毛, 天然고무, 原木 등 農產品 12個品目과 電氣銅, 亞鉛, 鉛, 알 루미늄, 니켈, 朱錫 등 非鐵金屬 6個品目, 그 리고 銀과 原油가 포함되어 있다.

改正된 管理規則에 의하면 先物去來依賴人의 資格에서 原資材의 實需要者인 企業 이외에도 綜合貿易商社가 포함됨으로써 중전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으로 國內企業이 海外先物市場을 이용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整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外換 使用에 있어서

⁴⁾ 管理規定은 1974년 12월 26일 大統領令 第7440號로 制定되었다가 1982년 1월 20일 大統領令 第10705號로 改正되었고 管理規則은 1975년 2월 25일 調達廳訓令 第358號로 發表되었다가 1982년 2월 26일 調達廳訓令 第542號로 改正됨.

外國換管理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先物去來 依賴企業이 所要外貨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전과 같이 調達廳에 割當된 外換 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外換計定을 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1975~83年 期間 중 우리나라의 先物去來는 調達廳을 비롯한 24個社가 先物去來計定을 開設하여 電氣銅, 亞鉛, 생고무, 大豆, 朱錫, 알루미늄, 니켈, 原綿, 그리고 銀의 10個品目에서 去來가 이뤄졌다. 年度別 先物去來 實績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年度에 電氣銅과 原綿에서 최초로 16,747톤의 先物去來가 이루어졌고 1976年度에 생고무, 1977年度亞鉛과 鉛, 그리고 朱錫, 1978年度에 大豆가추가되어 先物去來 對象品目은 매년 확대되었다. 1979年에는 다시 알루미늄과 니켈이 첨가되어 先物去來 對象品目은 9個品目으로 증가

되었고 去來實績은 121,605톤으로서 前年度보다 2倍 이상 증가하였다. 그 후 去來量은 減少趨勢를 보이다가 1982年부터 電氣銅과 大豆의 先物去來가 활발해지자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여 1983年에는 138,438톤에 달하여 가장 높은 去來實績을 보였다.

그러나 民間會社가 去來에 참여한 品目은 1980年度까지는 電氣銅, 생고무, 原綿 등 3個品目에 불과하였고 기타 品目들은 調達廳의主要物資備蓄과 관련하여 去來되었다. 民間會社들은 1981年 이후 鉛, 알루미늄, 니켈, 大豆, 銀 등의 品目에도 참여하여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전체 去來實績에서 民間部門의 占有率은 1975年에 93.3%를 기록한 후 계속 下落하여 1980年에는 전체의 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1年부터 民間占有率은 점점 증가하여 1983年末 현재 99.7%를 기록하여 거의 대

〈表 1〉 年度別 先物去來實績

(단위:%)

									(111 • /1/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1983
電氣銅	14, 253 (13, 128)	7,884 (6,385)	4,570 (4,343)	4,574 (2,363)	25, 647 (14, 543)	8,605 (100)	22,330 (15,830)	35,625 (32,625)	66,550 (66,550)
亞 鉛	_	—	750	3, 125	7,250		875	_	
鉛		_	750	3,375	11,850	—	250	750 (750)	2,550 (2,550)
생 고 무	_	4, 530 (885)	1,200	3,990	12,375	5,820 (1,320)	4,200 (2,400)	2,510 (900)	150 (—)
大 豆	_	_		39,058	58,480	17,690	6,020 (3,300)	46,265 (46,265)	68,038 (68,038)
朱 錫	_	_	30	_	110	65	225	185	
알루미늄	_	-			5,000	2,275	975	500	1,150 (900)
니 켈	_				450	48	120	630 (450)	_
原綿	2, 494 (2, 494)	3,992 (3,992)	1,361 (1,361)	$ \begin{array}{c} 227 \\ (227) \end{array} $	443	1, 134	-	_	_
銀		_	!	_		_	_		90,000온스
計	16, 747	16,406	8,661	54, 349	121,605	35,637	34,995	86,465	138, 438 90, 000온스
.,	(15,622)	(11, 262)	(5,704)	(2,590)	(14, 543)	(1,428)	(21,530)	(80,990)	(138, 038)

註:() 안은 民間部門

資料:調達廳.

부분을 民間會社들이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調達廳이 1981年 이후부터 先物去來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다.

先物去來量이 輸入量에 차지하는 比重은 〈表 2〉에서와 같이 電氣銅의 경우는 先物去來 導入 初期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去來가 이루어져 왔으며 1982年부터는 輸入量을 초과하여 先物 去來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電氣銅을 제외한 나머지 品目들은 輸入量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N. 先物去來의「시뮬레이션」 分析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海外 先物去來는 1975年에 시작된 이후 매우 저조 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는 달 리 만약 先物去來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어 떠한 經濟的 效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表 2〉 輸入量對比 先物去來實績

(단위: %, %)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輸入(A)	16,827	10,500	10,336	14,093	26, 269	18, 811	28,655	30,088	3,145
電 氣 銅 { 先物(B)	14, 253	7,884	4,750	4,574	25,647	8,605	22,330	35, 625	66,550
l B/A	84. 7	75. 1	46.0	32. 5	97.6	45.7	77.9	118. 4	189. 4
(輸入(A)	3, 105	8, 174	15, 080	15,034	3, 131	1,254	2,000	1,370	5,417
亞 鉛 (先物(B)	_		750	3, 125	7,250		875	_	_
∖ В/А			4.9	20.8	231. 6		43.8	_	_
(輸入(A)	4,582	6,569	11, 493	21,534	19,750	20,616	29,063	26,642	38,794
鉛 {先物(B)			750	3,325	11,850		250	750	2,550
l B/A	_	-	6.5	15. 4	60.0	-	0. 9	2.8	6.6
(輸入(A)	71,580	84,846	96,606	116,967	128,555	124, 325	129,355	129,810	114,811
생 고 무 (先物(B)	-	4,530	1,200	3,990	12, 375	5,820	4,200	2,510	150
l B/A	_	5. 3	1. 2	3.4	9.6	4.7	3.3	1.9	0.01
(輸入(A)	56,608	147,854	1, 148	238,601	428,022	543,340	494,531	768, 799	658, 258
大 豆 先物(B)	-	-	-	39,058	58,480	17,690	6,020	46, 265	68,038
l B/A				16. 4	13. 7	3.3	1. 2	6.0	10.3
(輸入(A)	-	627	800	1,475	1,300	1,067	2,056	2, 093	2,216
朱 錫 (先物(B)	-	-	30	-(110	65	225	185	
l B/A	-	-	3.8	-	8.5	6. 1	10.9	8.8	_
(輸入(A)	16,532	32,445	63, 380	86,513	82,803	73, 718	98, 583	10, 276	13, 799
알루미늄 (先物(B)	-	-	-	-	5,000	2, 272	975	500	1, 150
l B/A	_	-	-	-	6.0	3. 1	0.9	4.9	8.3
(輸入(A)	-	1, 763	875	1,088	1,979	2,884	4,064	2,827	2,518
リ 型 ⟨先物(B)	-	-	-	-	450	48	120	630	
l B/A		-		-	22. 7	1. 7	3.0	22. 3	_
{ 輸入(A)	176, 810	211, 783	218, 296	310,830	307,567	333, 658	322, 235	340, 288	336,778
原 綿 (先物(B)	2,494	3,992	1,361	227	443	1, 134	_	-	
B/A	1. 4	1.9	0. 6	0.07	0. 14	0. 34		-	

資料:調達廳, 商工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향후 先物去來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政策意味를 갖게 된다. 그 이유로서 先物去來의 「시뮬레이션」分析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先物去來의 活性化政策에 대한 當爲性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先物去來의活性化方案은 그 經濟的 意味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本「시뮬레이션」分析은 第 II 章에서 소개된 「헤징」理論을 기초로 하여 검토되었다. 먼저 헤징 |의 종류로서 營業「헤징」과 豫想「헤징」, 그리고 選別的「헤징」을 채택하여 각각 그 經 濟的 效果을 측정하였다.

分析對象期間은 2次石油波動이 발생한 1979 年부터 1983年까지 策定하였다. 本期間을 當初 에는 1次石油波動과 資源波動이 발생한 1973 年을 起點으로 採擇・策定하였으나 統計資料가 未備됨으로써 1979~83年間이 채택되었다.

1. 「헤징」對象品目의 選定

調達廳의「海外先物去來管理規則」에 規定된 先物去來可能品目⁵⁾ 은 農產物 12個品目,原油,

〈表 3〉 去來對象品目의 內容

(단위:千弗)

商	品 名	輸入金額 (1983)	主要上場商品去來所	最 小 去 來 單 位
農產物	小 多	\$ 333,501	CBT	5,000bu (CBT)
	옥수수	594,834	CBT	5,000bu (CBT)
	大豆	401,513	CBT	5,000bu (CBT)
	生고두	133,759	Malaysian Rubber Exchange and Licensing Board	25%(左去來所)
	原約	533,612	Liverpool Cotton Association New York Cotton Exchange	50,000 lb (New York Cotton Exchange)
	原料	203, 075	London Sugar Terminal Market, New York Coffee, Sugar and Cocoa Exchange	50 long ton(New York Coffee, Sugar and Cocoa Exchage)
	原 ヨ	58,631	Sydney Futures Exchange	1,500kg(左去來所)
	커 프	19,759	London Coffee Terminal Market, New York Coffee, Sugar and Cocoa Exchange	37,500 lb(New York Coffee, Sugar and Cocoa Exchage)
	수 수	21,598	Board of Trade of Kansas City	5,000 bu(左去來所)
2.2.2	原オ	627, 331	CME	130,000 bd ft (CME)
에너지 沓 源	原和	6, 194, 586	NYMEX	42,000 gal(左去來所)
資 非鐵金	銀	3,950	COMEX, LME	5,000 troy ounce (COMEX)
屬	銅	61,327	LME, COMEX	25 ^M _T (LME)
	亞翁	4,753	LME, COMEX	25 ^M _T (LME)
	니 켙	9,483	LME	$6\frac{M}{T}$ (LME)
	朱 銀	24,516	LME	$5\frac{M}{T}$ (LME)
	鉛	21,603	LME	25 ^M _T (LME)
	알루미늄	183, 429	LME	25 ^M _T (LME)
	計	3,236,734 (原油除外)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1983; John Parry (ed.), Guide to World Commodity Markets, 1982.

⁵⁾ 同規則 第5條 參照.

貴金屬인 銀, 그리고 非鐵金屬 6個品目으로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海外先物市場에 「해정」이 가능한 모든 商品을 포함하고 있다. 先物去來 可能品目의 輸入實績 및 商品去來所의 最小去來單位를 整理하면 〈表 3〉과 같다. 이들 品目의 總輸入額은 1983年 基準으로原油를 포함하면 약 94億弗에 달하며 原油를제외하던 약 32億弗을 차지하고 있다. 原油는世界市場 與件 때문에 英國에서는 先物去來가중단된 상태이며 美國의 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에서만이 去來되고 있으나 활발하지 못한 실정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先物去來를 하지 않고 있다.

「해정 시물레이션」對象品目으로서는 비교 적 輸入規模가 크고 戰略的으로 중요한 商品 을 選定하였다. 먼저 農產品으로서 小麥, 옥 수수, 大豆, 原糖과 原綿, 그리고 非鐵金屬 중 銅, 朱錫, 鉛, 亞鉛, 알루미늄으로서 모두 8 個商品을 選定하였다. 이들 商品의 規格 및 CCCN分類番號, 그리고 輸入實績은〈表 4〉와 같다. 여기서 選定된 非鐵金屬類는 輸入量 및 輸入金額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非鐵金屬이 일반적으로 屑, 地金, 그리고 加工製品 形態로 輸入되고 있어「헤징」對象은 주로 地金에 한정되고 있는 데 있다. 여기서 다시 地金의 輸入實績과 〈表 4〉의 輸入實績이 일치되지 않은 것은 地金 역시 細分類되어 있어「헤징 시뮬레이션」에서는 특정의 CCCN 分類에 따른 몇 개 商品만을 選定한 데기인하고 있다.

한편 選定된 對象品目의 輸出實績은 農產品의 경우 全無하며 非鐵金屬類는「혜정」對象이될 수 있는 地金의 경우 銅을 제외하면 나머지 品目은 그 실적이 미미하거나 朱錫의 경우는 全無한 狀態이다. 따라서 本分析에서는 選定된 商品의 輸入에 반대되는 賣渡「혜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輸出에 반대된 買入「혜정」은 分析의 對象에서 제외하였다.

2. 基本假定

賣渡「해정 시뮬레이션」分析을 위해서 다음 과 같은 基本假定이 도입되었다.

1) 標本期間은 1979~83年임. 단, 알루미늄

〈表 4〉	헤징]	對象品目의	選定

± 0	HE 44 (CCONIVE)	輸入實績(1983)		
商品	規格(CCCN分類)	數量(%)	金額(千弗)	
小 麥	No. 2 soft red (1001-0200)	1,853,949	333,501	
옥수수	No. 2 yellow (1005-0100,-0200)	4,057,371	594,834	
大 豆	No. 1 yellow (1201-0400)	658, 290	183,705	
原糖	cane, raw (1701-0101)	801,905	203,074	
原綿	$1\frac{1}{16}$ inch (5501-0100, -0200, -202-203, -0204)	336,777	533,611	
銅	unwrought (7401-0401)	28,737	46,696	
朱 錫	unalloyed (8001-0201)	2,216	24,400	
鉛	refined lead, excluding lead alloys(7801-0300)	22,223	11,183	
亞 鉛	unalloyed (7901–0200)	4,887	4,207	
알루미늄	unalloyed (7601-0100)	91,750	137,357	

資料:關稅廳、『貿易統計年報』、1983。

과 原糖은 1981~83年인 6).

- 2) 分析期間 중의 各年度 月別「헤징」物量 은 營業「혜징」과 豫想「혜징」의 경우 實 際輸入量과 동일함. 그러나 選別的「혜 징」에서는 賣渡「혜징」이 이루어지는 달 만이 동일함으로써 年間物量을 基準할 때 輸入物量과 「혜징」物量이 일치하지 않음.
- 3) 對象品目의 規格과 基準價格은 〈表 5〉와 같음.
- 4) 現物契約은 引渡月을 基準으로 2個月 전 에 그 당시의 時價로 契約이 締結됨.
- 5) 賣渡「헤징」에 따른 모든 附帶費用을 勘 案하지 않음.

3. 營業「헤징」(operational hedging)

營業「헤징」은 第 II 章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去來에 있어서 現物去來와 반대되는 입 장을 先物市場에서 취함으로써 意思決定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本分析에서는 現物契約과 동시에 2個月 滿期의 先物을 同一物量으로 賣渡하였다가 滿期가 되면 淸算하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따라서 賣渡「혜정」후의 年間 去來收益은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pi_{h} = \sum_{i=1}^{12} X_{i}(p_{t+2} - p_{t}) - \sum_{i=1}^{12} X_{i}(p_{t+2}^{f} - p_{t}^{f})$$

$$= \sum_{i=1}^{12} X_{i}[(p_{t+2} - p_{t}) - (p_{t+2}^{f} - p_{t}^{f})]$$
.....(11)

예상한 대로 營業「헤징」으로 인한「헤징」收益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패턴

〈表 5〉 對象品目의 規格과 基準價格

	目 規 料		基準	價 格
品目	放		spot	future
小 麥	No. soft red (bu)		Saint Louis	CBT
옥수수	No. 2 yellow (")		Centrall Illinois	CBT
大 豆	No. 1 yellow (")		"	"
原 糖	cane, raw (lb)		New York	NYCSCE ¹⁾
原 綿	$1\frac{1}{16}$ inch (")		Memphis	NYCTN ²⁾
銅	refined, unwrought, ingot	$(\frac{M}{T})$	LME	LME
朱 錫	unwrought, unalloyed, ingot	(")	"	"
鉛	refined, excluding lead alloyed, ingot	(")	"	"
亞 鉛	unwrought, unalloyed, ingot	(")	"	"
알루미늄	unwrought ingot	(")	"	"

註:1) NYCSCE: New York Coffee, Sugar and Cocoa Exchange

2) NYCTN: New York Cotton Exchange를 表示함.

資料: New York Times, 1984.

⁶⁾ 알루미늄과 原糖에 대해서는 1979~80年 期間 중의 價格資料를 入手할 수 없었음.

을 보이지 않고 있다. 完全「헤징」이 이루어진 해는 없으며 5年間 8個品目에 대해서 14번 損失을 본 반면에 26번 收益을 올림으로써 營業「헤징」은 전반적으로 收益을 올리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分析되었다. 따라서 營業「헤징」 은 現物去來에 따른 위험을 항상 除去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分析結果를 검토할 때 保險「헤징」의 機能은 충분히 遂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豫想「헤징 |(anticipatory hedging)

本分析에서 豫想「헤징」은 年中 어느 時點에

서 年間需要量을 月別로 配定한 다음 이를 先物市場에서 買入「헤정」을 한 후 月別로 現物市場에서의 契約量이 引渡됨에 따라 月別로 先物市場에서 買入先物을 賣渡淸算하는 것을 말한다. 豫想「혜정」에서 鑛產物은 每年 1月에그리고 農產物은 收穫月에 年間所要分(實際輸入量)을 月別로 買入「혜정」을 하게 된다. 이때 農產物의 月別 先物價格"은 일반적으로 1年후의 先物價格이 公表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非鐵金屬類는 3個月 先物價格만이 入手되어便法으로 每年 12月까지의 月別先物價格은 每年 1月 現物價格과 3個月 先物價格으로부터計算된 月別 Contango에 의해 推定하였다. 8)

〈表 6〉 營業「헤징」에 의한 損益

(단위:農產物;弗,非鐵金屬;₤)

			1979	1980	1981	1982	1983
小		麥	-1,973,240	-294,238	13, 325, 600	9,826,020	5, 335, 210
옥	宁	宁	-10,210,000	2, 106, 750	16,039,700	13,316,800	-8,526,360
大		豆	1,871,300	4,661,630	3,289,270	2,535,080	4,024,930
原		綿	121, 498	-74,031	84,737	219,015	103,670
	銅		134, 433	16, 143	-33,130	-3,668	28,577
朱		錫	71, 495	-19,490	116,260	-145,851	-52,589
	鉛		-11,904	-39,847	-13,768	1,036	7,589
亞		鉛	1,877	192	3, 067	2, 105	899

〈表 7〉 豫想「헤징」에 의한 損益

(단위:農產物;弗, 非혫金屬;£)

			1979	1980	1981	1982	1983
小	3	麥	775,098	-20,809,200	-40, 102, 100	-28,802,500	-26,176,300
욕 -	个 台	수	19, 746, 200	-32,917,300	-86,979,100	115,554,000	10,290,400
大	3	豆	-9,101,380	-9,837,490	-26,018,000	7,550,650	-20,413,500
原	糸	绵	1,720,560	-780,674	-290,943	850,001	89,721
Ś	銅		1,230,020	-494,332	2,921,420	-1,536,850	328,002
朱	ŝ	湯	292,770	-439,499	2,550,940	-479,897	123, 440
Ś	鉛		1, 615, 320	-2,752,100	1,225,840	-1,110,540	-883,297
亞		沿	−100,638	-83 , 545	119,435	-61,564	5 79, 750

⁷⁾ 農產物의 收穫月은 小麥 7月, 옥수수 10月, 大豆 9月, 原糖 5月, 原綿 9月로 각각 策定됨.

⁸⁾ 月別 Contango란 月別 Carrying charge, 즉 保管費用으로서 3個月間의 價格「마진」을 月別로 配分計算하여 推定됨.

이와 같이 計算된 豫想「헤징」에 의한 損益은 〈表 7〉과 같다. 이 計算結果에 따르면 5年間 8個品目에 대해서 22번 損失이 발생하였으며 18번 利益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豫想「헤징」은 損失의 確率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豫想「헤징」이 빈번한 손실의 발생에 따른 危險度는 높으나 利益이 발생할 때는 그 利差水準이 營業「헤징」의 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리고 豫想「헤징」은 保險「헤징」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營業「헤징」과 같이 價格變動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 選別的「헤징」

選別的「헤징」은「헤져」(hedger)가 市場狀況에 따라 期待價格을 형성하여 選別的으로「헤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選別的「헤징」은 엄밀하게 投機去來와 구별되지 않은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先物去來에종사하는 當事者들은 市場情報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情報에 근거를 둔 價格豫測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헤져」가 賣渡「헤징」을 하지 않고 投機者의 입장을 취하며, 반대로 價格下落이 豫測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賣渡「헤징」을 하게 될 것이다. 選別的「헤징」은 이와 같은「헤징」行態

〈表 8〉 選別的「해장」에 의한 損益(25%)

(단위:農產物;弗,非鐵金屬;£)

		1979	1980	1981	1982	1983
小	麥	1,581,160	-1,898,910	13, 325, 600	9,826,020	6,655,280
옥 수	수	-2,934,250	4,599,430	16,039,700	15,326,500	-1,512,480
大	豆	2,623,480	8,682,870	3,821,920	-2,847,220	6, 368, 220
原	綿	201,846	155,764	-84,737	260,929	147,621
鉧	I	473, 445	-16,144	345,652	544, 216	383,701
朱	錫	104,535	31,810	139,900	-50,029	4,039
鉛	Í	134,693	42,393	62,900	-1,036	62,333
亞	鉛	11,584	-4,233	24,050	4, 103	77,233

〈表 9〉 選別的「헤징」에 의한 損益(50%)

(단위:農產物;弗,非鐵金屬;£)

		1979	1980	1981	1982	1983
小	麥	4, 625, 340	3, 099, 790	14, 798, 700	9,826,020	8,431,760
욕	수 수	9,089,000	11,013,100	16, 112, 700	15,835,300	3,983,700
大	豆	2,786,280	10,592,220	3,821,920	3,089,810	9,484,290
原	綿	214,051	396,612	84,737	260,929	218,875
	銅	972, 195	488,644	937, 142	647,800	884,543
朱	錫	178,575	31,810	348, 178	72, 799	210,349
	鉛	259,849	77,967	148,040	7, 131	96,053
亞	鉛	13,236	12,716	28,070	4, 103	167,908

를 반영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本分析은 事後的인 資料를 이용하여 選別的 「헤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實驗을 하였다.

먼저 賣渡「해정」의 경우 價格上昇이 예측되 면「해정」을 기피하게 되므로 주어진 標本期 間 價格의 實績値를 과찰하여

- 1) 價格豫測의 正確度가 25% 수준의 確率 을 보이는 경우
- 2) 價格豫測의 正確度가 50% 수준의 確率을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을 假定하여 計算된 選別的「헤징」에 의한 損益은 각각 〈表 8〉, 그리고 〈表 9〉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價格豫測의 正確度가 確率上 25%에 이를 때 5年間 8個 品目 중 損失은 9번에 결쳐서 발생하게 되고 31번은 利益을 實現하고 있다. 그리고 確率이 50%에 이르면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 品目 全期間 중「헤징」收益이 實現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事後的인 分析으로서 事前的 인 分析과 비교할 때 큰 의미는 없으나 選別 的「헤징」의 强點을 示唆한다고 할 수 있다. 즉 賣渡「헤징」에서 價格豫測의 正確度가 確率 上 50%에 이른다면 價格下落時에 賣渡「헤징」 을 통해서 現物市場에서 발생한 損失을 충분히 補償하고도 오히려 收益을 實現할 수 있는 것 으로 分析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選別的 「헤징」에 의한「헤징」收益의 實現이 어디까지 나 期待收益「혜징」理論에 입각한 事後的인 分 析結果임을 留意해야 할 것으로 본다.

V. 先物去來의 活性化方案

先物去來가 1974年 12月부터 導入된 이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原資材의 實需要者인 國內企業이 先物市場의 機能 및 役割에 관하여 대부분 익숙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輸出入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綜合貿易商社마저도 先物市場의 利用度가 매우 낮은 편이며 農產物을 포함한 많은 資源을 輸入하는 企業들 역시 先物去來를 외면하여 왔다".

둘째, 先物去來의 여러 가지 技法에 익숙해 있는 專門家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民間企業에서 이 부분의 專門家를 養成하지 않은 데 主要原因이 있다. 그동안 調達廳에서는 Merryllynch에 擔當人員을 파견하여技術을 습득하게 한 바 있으나 制度上 專門家로서 한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음에 따라調達廳에서도 專門人力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몇 綜合貿易商社에서는專門家를 養成하기 위하여 美國에 訓鍊員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향후 專門人力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세째,國內의 市場構造가 製造業 分野別로 獨寡占體制가 많이 유지됨으로써 企業間의 市 場을 통한 價格競爭이 비교적 脆弱하였다. 이 러한 현상은 原價上昇要因이 발생될 때 價格 을 통하여 消費者에게 어려움 없이 轉嫁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企業의

⁹⁾ 第四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電氣銅의 경우는 先物去來가 비교적 활발한 편임.

입장에서는 原價上昇要因을 事前에 對備하여 防禦함으로써 價格競爭에 대비하는 노력이 缺 如되어 있다. 따라서 原資材를 正常價格水準 보다 높게 購買하여도 生產原價에 반영되어 결국 消費者負擔만이 높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企業 내부에서 自生的으로 輸入原資 材價格의 上昇要因을 제거하는 노력이 缺如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째, 原資材의 實需要者인 각 企業의 購買單位가 少量일 경우 企業體의 입장에서 「헤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單位契約量이 少額일 경우도 國家的인입장에서 보면 큰 額數에 달하게 되므로 制度的으로 少量購買를 흡수하여 大量購買를 誘導할 수 있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헤징」에 임할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1974年 12月 先物去來에 관한 管理 規程이 마련된 이후 1982年 1月 同管理規程이 改正되기 이전까지 先物去來는 調達廳이 委託 去來者가 되어 執行하여 왔다. 따라서 實需要 者인 企業體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레드 테이프」(red-tape)가 많기 때문에 先物 去來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先 物去來란 價格時勢의 움직임에 대하여 기민하 게 대응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行 政節次가 機敏性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有效適切한 先物去來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時時刻刻으로 변하는 商品時勢의 情 報網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綜合貿易商 社나 기타 企業들이 地域別 先物 및 現物時勢 의 움직임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情報시스템 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곱째, 調達廳은 備蓄物資의 海外購買와 관련하여 1975年부터 先物去來를 실시하였으 나 1982年부터 이를 중닦하고 있다. 그 이유 는 先物去來, 즉 賣渡「헤징」에서 損失을 입었 을 때 先物去來擔當者의 責任問題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先物去來에서는 現物去來 와 바대되는 입장에서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 고 損失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行政體 系上 損失이 발생할 경우 責任追窮이 문제가 되어 결국 1982年度부터 先物去來를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備 蓄物資의 購買時 특히 최근과 같이 現物時勢 가 전반적으로 下落勢를 보일 때 반드시 先物 去來를 수반해야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調 達廳에서는 先物去來를 독자적으로 施行할 수 있는 별도의 制度的인 措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1982年 海外先物去來管理 規程이 改正되면서 사실상 民間企業이 자유롭 계 海外先物去來에 참여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가 마련된 셈이나 市場의 潜在力에 비추 어 볼 때 그 去來規模가 매우 낮은 수준에 와 있다.

海外先物去來의 潜在市場은 매우 큰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 管理規則에 選定된 品目을 중 류별로 정리하여 그 輸入規模를 살펴 보면 先 物去來對象品目의 1983年 輸入實績은 原油를 제외하고도 약 32億弗에 이르고 있어 先物去 來의 潜在市場은 매우 큰 것으로 推定되고 있 다. 이와 같은 潜在市場을 바탕으로 先物去來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된 여 러 가지 障碍要因을 제거하고 다음과 같은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綜合貿易商社의 活用

국내에는 현재 9個의 綜合貿易商社가 있어 輸出 및 輸入의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1984年 현재 綜合貿易商社의 輸出比重은 1984 年 현재 우리나라 總輸出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輸入比重은 總輸入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政府는 綜合貿易商社의 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制度的으로 제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完製品備蓄金融이 가능하고 海外支店의 外貨保有限度가 철폐되었으며 原資材輸入要件이 開放되어 있다. 따라서 綜合貿易商社는 유리한 입장에서 輸出入業務에 중사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 綜合貿易商社는 日本의 原資材 輸入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原資材輸入에 있어서도 주요 供給先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82~84年 期間 중 우리나라의 小麥과 옥수수 輸入에 있어서 주요 供給先別 比重을 보면 〈表 10〉과〈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麥은 1984年에 65.0%, 그리고 옥수수는 1982年과 1983年에 각각 17.9%와 9.0%를 供給하여 왔다.

한편 우리나라 綜合貿易商社의 供給實績을 보면 1984年 현재 小麥은 2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옥수수는 1982年의 25.3% 수준 에서 1984年에는 77%로 供給比重이 증가하고 있다.

非鐵金屬類의 輸入에 있어서 綜合貿易商社가 차지하는 比重은 統計資料의 未備로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나 알루미늄塊의 경우는 綜合貿易商社가 1983年 현재 總輸入의 약 28% 를 輸入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옥수수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綜合貿易商社의 原資材 輸入比重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

〈表 10〉 小麥의 供給先別 輸入實績

(단위:%)

	1982	1983	1984
總 輸 入 量 供 給 量	1,795.3(100)	1,853.9(100)	1,881.1(100)
國內綜合商社 日本綜合商社 기 타	380. 4(21. 2) 1, 247. 4(69. 5) 167. 5(9. 3)	174. 5(9.4) 1,527. 1(82.4) 152. 3(8.2)	451. 7(24. 0) 1, 223. 2(65. 0) 206. 2(11. 0)

註:() 안은 構成比를 표시함.

資料:關稅廳,『貿易統計月報』,各年度.

(株)鮮京.

〈表 11〉 옥수수의 供給先別 輸入實績

(당위:%)

			(E11 • 717
	1982	1983	1984
總輸入量供給量	4,749.1(100)	4,057.4(100)	2,852(100)
國內綜合商社日本綜合商社	1,203 (25.3) 850 (17.9)	3,166 (78.0) 365 (9.0)	2, 195(77.0) 4(—)
기타	2,696 (56.8)	526 (13.0)	653(22.9)

註:() 안은 構成比를 표시함.

資料:關稅廳,『貿易統計月報』,各年度.

(株)鮮京.

나 최근부터 漸增하는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1982年에 改正된 海外先物去來管理規程에 의하면 綜合貿易商社는 예외적으로 實需要者 가 아니더라도 先物去來에 참여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다. 따라서 綜合貿易商社의 原資 材輸入機能을 강화함으로써 先物去來의 活性 化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로서 다 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綜合貿易商社는 일반적으로 人的資源 이 풍부하고 동시에 資金力이 뒷받침되어 있 어 先物去來에 종사할 수 있는 專門人力의 養 成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둘째,綜合貿易商社는 海外支店이 세계적으로 散在하여 있고 종합적인 通信網이 잘 構築되어 있어 新規投資가 없이도 先物去來에 관한 情報의 蒐集과 管理에 필요한 情報網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세째,國際先物市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購買單位가 一定量 을 넘어서야 한다. 國內 實需要者의 購買量이 少量일 때는 先物去來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綜合貿易商社의 輸入機能이 강화되면 이러한 少量注文을 集合하여 大量購買가 가능 하게 되며 동시에 賣渡「헤징」을 수행할 수 있 게 된다.

이상과 같이 綜合貿易商社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先物去來에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國內 先物去來의 活性化는 綜合貿易商社에서 그 시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2. 輸入推薦部署의 活用

原資材의 輸入節次는 一般商品과 같이 먼저

輸入契約을 締結하고 I/L(Import of Licence)을 發給받기 위해서는 商品에 따라서 主務部 署나 協會의 推薦을 받아야 하고 自動承認品 目은 곧바로 I/L을 發給받을 수 있다. 海外先 物去來管理規則에서 選定된 先物去來對象品目을 輸入推薦部署의 自動承認品目으로 分類하면 〈表 12〉와 같다.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서 農產物中 커피,原綿,原毛,생고무,原木이 있으며 非鐵金屬은 朱錫,鉛,니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 머지 12個品目은 該當協會나 關係部處의 輸入 許可를 필요로 하고 있다.

먼저 協會의 推薦을 요하는 商品에 대해서는 關聯協會에서 輸入推薦時 輸入物量과 價格條件을 檢討한 다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

〈表 12〉 輸入推薦部署

商	品	名	推	薦	部	署
小 麥-	一食 用 飼料用		畜產業	上粉工業は 生協同組み お會(飼協	今中央會	會(畜協)
옥수수-	-加工用 飼料用		韓國욱 畜協,	- - 个 - 加 -	工協會	
大 豆-	飼料用		畜協,	5同組合ロ 何協 禁品輸出		>
大豆油〈 大豆粕	/醫療用			部長官 飼協	山八 励旨	
原期別原綿			大韓製	上糖協會		
原 毛 ペコテ 原 木	(/		輸入自	動承認品	記目	
銀 -	-工業用		大韓鎌	業會		
	其 他		商工部			
	알루미늄,	亞鉛		鐵金屬製		ì
朱錫,翁原 油	다, 니켈			動承認品 油協會	古目	

資料:商工部,『輸出入期別公告』,1984.

에 따라 賣渡「헤징」을 條件附로 하거나 勸誘하는 방식을 採擇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關聯協會는 該當商品의 市况과 商品情報에 대한專門性을 具備하고 있으므로 先物去來의 活用에 관한 절차를 輸入推薦時 檢討하도록 許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契約量이 少量일경우 集算하여 大量의 共同購買를 推進하면서역시「헤징」을 慫慂할 수 있다.

自動承認品目일 경우는 協會의 推薦을 요하지 않고 各個企業에 自動的으로 I/L이 發給되고 있으므로 關係部處에서 직접적으로 契約量을 調整하고 先物去來를 慫慂하기란 期待하기어렵다. 따라서 先物去來를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原資材의 경우 다른 商品과 分離하여 該當協會로부터 契約量과 「해정」與否에 대한檢討를 일단 依賴한 다음 輸入承認을 發給하는 方案을 提示할 수 있다.

3. 商品會社(假稱)의 設立

先物去來를 活性化하기 위한 制度的인 方便 으로서 商品會社(假稱)의 設立을 提議할 수 있다. 商品會社는 初期에는 半官半民의 性格 을 갖도록 組織할 수도 있고 순수한 民間「베 이스」에 의해 運營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가. 商品會社의 性格

商品會社는 모든 原資材輸入時 I/L發給 이 전에 商品會社의 推薦을 요하는 强制型과 이 와는 對照的으로 위와 같은 强制規程을 넣지 않고 단순히 原資材輸入에 附隨되는 여러 가 지 業務를 諮問하는 諮問型으로 그 性格을 구 분할 수 있다.

商品會社가 强制型의 性格을 가지고 있을

때 先物去來는 쉽게 活性化될 수 있다. 왜냐하면 專門家로 構成된 商品會社에서 原資材輸入時「헤징」을 條件附로 推薦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헤징」이 적절한 時期에 原資材를 購買할 때는 該當商品의 輸入時 全量賣渡「헤징」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留意할 점은 强制型이라도 營業「헤징」이 아닌 選別的「헤징」이 採擇될 경우에는 모든 輸入에 있어서「헤징」이 强要되는 것은 아니라고 불수 있다. 商品會社가 强制型의 性格을 가질때 先物去來는 短時日內에 定着될 수 있는 長點이 있으므로 先物去來를 導入하는 初期 즉, 先物去來가 아직 土着化되지 않은 狀態에서採擇할 수 있다고 본다.

諮問型은 原資材輸入時「헤징」與否를 단순히 諮問하는 方法으로서 民間企業들이 專門家가 부족할 때의 隘路點을 補完하는 方便이라고불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헤징」與否는企業 스스로가 결정하게 된다. 이 方法은 先物去來의 早期定着에는 强制型과 비교할 때 效果的인 方法이라고 할 수 없으나 民間企業 스스로에 決定權을 賦與한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諮問型은 美國이나 日本에서 盛行되고 있는 商品諮問會社(commodity consulting firm)와 같은 機能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商品會社의 機能

商品會社의 機能은 그 性格이 强制型이냐 혹은 諮問型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機能을 가질 수 있다.

첫째,國際商品市場의 需給情報를 入手하여 이를 分析하고 最短時日內에 이를 關聯業界에 傳達하며, 특히 現物時勢 및 先物時勢의 動向 과 長・短期 豫測値를 提供한다. 둘째, 先物去來에 관한 각종 情報를 提供함과 동시에 商品會社의 性格에 따라 「해정」義務를 賦課하거나 諮問을 提供한다. 즉 先物의 賣渡市場과 賣渡時期, 그리고 淸算時點 등에 관하여 情報를 提供하게 되다.

세째,商品單位組合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少量輸入을 集算하여 大量購買를 위한 輸入代 行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혜정」을 할 수도 있다. 이때의 輸入代行은 綜合貿易商社를 經 由할 수도 있으며 單位組合에 推薦한 수 있도 록 함으로써 綜合貿易商社가 單位組合, 그리 고 商品會社間에 서로 競爭的이 아닌 補完的 인 관계에서 그 機能을 發揮하도록 한다.

네제,商品專門家를 育成하여 綜合貿易商社 나 一般企業에 排出하며 동시에 各 企業體의 擔當要員을 敎育・訓練하는 機能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調達廳의 備蓄業務를 移管받아 備蓄物資의 購買時 자유롭게 「해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備蓄物資의 收買 및 管理 그리고 放出業務를 遂行함으로써 民間次元에서 市場機能을 補完하는 價格政策을 實施하도록 한다.

여섯째,海外商品去來所에 직접 進出하여 去來所 會員으로 活動함으로써 國內先物去來 를 용이하게 推進할 수 있다.

海外先物去來를 活性化하기 위하여 위에서 提示된 세 가지 政策代案, 즉 綜合貿易商社의 活用과 商品別 輸入推薦部署의 活用, 그리고 商品會社(假稱)의 設立方案은 그 機能上 相互 補完的으로 發展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政策方案의 혜택은 여러 가지 誘引 策과 積極的인 弘報活動을 同時에 講究하면서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Ⅵ. 要約 및 結論

本研究는 先物去來의 理解를 提高하기 위하여 「해정」理論을 檢討하고 「해정 시뮬레이션」 分析을 통해서 「해정」의 經濟的 安當性을 立 證하였으며 나아가서 海外先物去來의 活性化 方案을 提示하였다.

일반적으로 「헤징」은 保險連繫의 性格이 강한 營業「헤징」과 豫想「헤징」, 그리고 期待收益理論에 따른 選別的「헤징」으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 營業「헤징」과 豫想「헤징」은 「베이시스」의 變化에 의해「헤징」의 效率性이 결정되며 選別的「헤징」은 「헤져」가 投機業者와 같이 期待價格을 形成하여 「헤징」을 함으로써期待收益의 實現與否에 의해「헤징」의 效率性이 測定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原資材輸入國으로서 現物市場에서 必要物量을 買入하는 立場이므로 先物市場에서 대부분 賣渡「혜정」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賣渡「혜정」의 經濟性을 分析하기 위하여 輸入比重이 비교적 큰 8個品目을 選擇하여 1979~83年 期間中의 實績資料를 이용해 營業「혜정」과 豫想「혜정」, 그리고 選別的「혜정」을「시물레이션」하였다. 對象品目은 農產品으로서 小麥, 옥수수, 大豆, 原糖, 原綿, 그리고 鑛產品으로서 銅, 朱錫, 鉛, 亞鉛, 알루미늄이 포함되었다. 標本期間中의 現物價格 및 先物價格資料와 月別 輸入量은 實績資料와 동일하게 採擇하였다. 「시물레이션」 結果에 의하면 營業「혜정」은 예상과 같이 價格變動危險을 완전히 除去할 수 없었으나 保險「혜정」으로서

의 經濟的 效果가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러나 豫想「헤징」은 保險「헤징」의 역할을 충분히 遂行하지 못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리고 選別的「헤징」을 통해서는 全對象品目에 대해서 期待收益을 實現할 수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우리나라의 海外先物去來는 1次石油波動 및 資源波動이 발생한 이후 1974年 12月 海外先物去來管理規程이 制定되면서 처음으로 紹介되었다. 同規程에 의하면 調達廳이 先物去來의 委託者가 되어 民間企業을 代理하여 先物去來에 參與케 하였다. 同規程이 制定된 이후 주로 調達廳의 備蓄物資의 購買와 관련하여 先物去來가 이루어졌으며 民間企業의 利用度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政府는 海外先物去來의 活性化를 위하여 1982年 同規程을 改正하여 民間企業이 자유롭게 先物去來에參與할 수 있게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으나 現在까지 注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海外先物去來가 活性化되지 못한 理由는 國內民間企業들이 先物去來에 익숙치 못하고 專門家가 부족한 데 가장 큰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購買量이 少量일 경우가 많아「헤징」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國內市場構造가 獨寡占體制로 서의 性格이 강하여 海外에서 발생한 原資材 價格의 上昇分이 큰 抵抗없이 國內物價에 轉 嫁됨으로써 價格競爭이 誘發되지 않은 데도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海外商品先物去來 潜在市場規模는 매우 큰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1982年에 改正된 海外先物去來管理規則에 의하면 海外先物去來가 가능한 品目이 20個品目으로서

1983年 現在「혜정」이 가능한 細目別 商品의 輸入實績은 原油를 제외하고 約 32億弗에 달 하고 있다.

現時點에서 海外先物去來를 活性化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方案을 提示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綜合貿易商社는 우리나라 輸出入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綜合貿易商社의 輸 入比重은 輸出比重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 으나 향후 輸入比重은 높아질 것으로 豫想되 며,특히 原資材輸入機能이 日本의 경우와 같 이 强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綜合貿易商社는 世界 各地域의 支社를 통한 情報網이 確保되 어 있고 先物去來에 從事할 수 있는 專門人力 의 養成에 있어서 유리한 位置에 있다. 그리 고 綜合貿易商社는 大量購買의 利點을 살릴 수 있으므로 先物市場에 용이하게 參與할 수 있다. 따라서 海外先物去來의 活性化는 綜合 貿易商社 機能의 强化에 着眼點을 주고 推進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海外先物去來對象品目에서 輸入自動 承認品目을 제외한 殘餘品目은 I/L發給時 各 商品의 該當協會나 關係部署의 推薦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該當協會나 關係部署 는 該當商品의 國際市况에 관하여 계속적인 調査業務를 遂行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輸 入推薦部署를 이용하여 先物去來를 慫慂할 수 있다. 그리고 購買量이 一定水準을 下廻할 경 우 共同購買를 斡旋하고 이에 따른 先物去來 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세째,商品會社(假稱)를 設立하여 우리나라 의 原資材輸入에 관련되는 모든 附帶業務를 遂行케 할 수 있다. 특히 海外先物去來에 관 한 專門家를 確保하여 海外先物去來對象品目 의 輸入時에는 I/L 發給 이전에 諮問을 받도록 規程化하고 이러한 過程에서 商品會社는 先物 去來를 誘導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商品 會社가 設立된다면 現在 調達廳에서 主管하고 있는 原資材備蓄事業을 遂行할 수 있으며 備 蓄物資의 購買時에는 자유롭게 「헤징」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商品會社의 最大利點은 專門性을 최대한 發揮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半官半民 혹은 순수한 民間機構로 運營될 수 있다.

위에서 提示된 세 가지 方案은 相互補完的 으로 施行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海外商 品先物去來를 擴大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인 태도를 가지고 活性化 方案을 摸索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다.

▷ 參 考 文 獻 ◁

- 關稅廳,『貿易統計月報』,各月號. 大韓貿易振興公社,『过过金屬去來所 現况』, 1977.
- _____,『美國의 商品去來所 現况』, 1973.
- _____, 『世界의 商品去來所』, 1974.
- 全經聯,『先物去來의 現况과 活用方案』,1975. 調達廳,『先物去來의 活用』,1982.
- 韓國貿易協會,『貿易統計年報』, 各年度.
- Chicago Board of Trade, Action in the Marketplace, 1973.
- Chicago Mercantile Exchange, Trading in Tomorrows, 1978.
- Cootner, P.H., "Returns to Speculations; Telser versus Keyn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JPE)*, August 1960, pp. 396~404; "Rojoinder," pp. 415~418.
- Research Institute Studies (FRIS), 19
 76, Supplement, pp. 65~105.
- Chicago Board of Trade, "Commodity Trading Manual," (Chicago, Ill.: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1980.
- Emevy, W.L. and Seymour Gaylinn(eds.), Commodity Year Book, N.Y. Commodity Research Bureau, 1983.
- Gold, Gerald, Modern Commodity Futures

- Trading, N.Y.: Commodity Research Bureau, 1959.
- Goss, B.A. and B.S. Yamey, *The Economics* of Futures Trading, N.Y.: John Wiley & Sons, 1976.
- Gray, Roger W., "The Characteristic Bias in Some Markets," *FRIS*, Nov. 1960, pp. 296~312.
- _____, "The Search for a Risk Premium,"

 JPE, June 1961, pp. 250~260.
- Houthakker, H.S., "Can Speculators Forecast Pric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57, pp. 143~151.
- Johnson, Leland, "The Theory of Hedging and Speculation in Commodity Futur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June 1960, pp. 139∼151.
- Labys, W.C. and C.W.J. Granger, Speculation, Hedging and Commodity Price Forecasts, Mass.: D.C. Heath and Company, 1970.
- Larson, A., "Estimation in Hedging and Speculative Positions in Futures Markets," *FRIS*, 1961, pp. 203~212.
- Parry, John(ed.), Guide to World Commodity Markets, N.Y.: Kogan Page, 1982.

- Peck, Anne, "Reflections of Hedging on Future Market Activity," FRIS, 1980, pp. 327∼349.
- _____, Selected Writings on Futures Markets, Vol. II, 1977.
- Robert, G.J., *The London Metal Exchange*, London: Woodhead-Faulkner, 1976.
- Rockwell, Charles, "Normal Backwardation, Forecasting, and Returns to Commodity Futures Traders," FRIS, Supplement, 1967, pp. 107~130.
- Schwager, J.D., A Complete Guide to the Futures Markets, N.Y.: John Wiley & Sons, 1984.
- Seidel A.D. and P.M. Ginsberg, *Commodities Trading*, New Jersey: Prentice-Hall, 19 83.

- Shaw, J.E.B., A Professional Guide to Commodity Speculation, N.Y.: Parker Publishing Company, 1972.
- Stein, Jerome, "The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Spot and Futures Prices," *AER*, December 1961, pp. 1012~1025.
- Telser, Lester G., "Futures Trading and the Storage of Cotton and Wheat," *JPE*, June 1958.
- in Wheat, Corn, and Soybeans," FRIS, 1980, pp. 351~359.
- Working, Holbrook, "Futures Trading and Hedging," *AER*, 1953, pp. 314∼343.
- Markets and Prices," AER, 1962, pp. 431~459.

私學財政의 實態와 政策課題

 村
 垣
 求

 金
 明
 淑

- I. 問題의 提起
- Ⅱ. 私學財政의 實態斗 評價
- Ⅲ. 私學財政 關聯政策의 現况
- N. 私學財政擴充을 위한 政策課題
- V. 要約 및 結論

I.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 敎育에 있어 私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私學의 중요성이 크며, 따라서 私學의 發展은 敎育發展에 있어 주요한 政策課題이다. 다양한 敎育理念을 추구하는 私學은 국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敎育에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敎育財政上 公學을 보완하는 機能을 수행함으로써 敎育的・經濟的측면에서 國家發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筆者: 朴烜求一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및 研究調整室 長,金明淑一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近代教育의 成長過程에서 우리나라의 私學 은 敎育發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近代敎育의 發芽 過程에서 私學은 新教育의 導入에 선구적 역 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民族의 自主性鼓吹 와 外來文化의 導入에 기여한 바 크다. 또한 일제치하에서는 抗日運動의 求心點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中等敎育의 보급확대와 高等敎 育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특히 해방 이 후 敎育人口가 量的으로 크게 확대되고 敎育 에 대한 社會的 需要가 급격하게 팽창되는 과 정에서 敎育需要의 큰 부분이 私學의 擴大를 통해 충족되었고 이에 따라 敎育의 量的 擴大 가 가능하였다는 점은 여타 開發途上國에서의 敎育發展過程과는 상이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私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指摘되어 야 할 점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敎育發展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고 또한 오늘의 우리나라 敎育에 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私學은 財政 的인 면에서나 非財政的인 學校運營의 측면에 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私學法人은 대부분 財政規模가 영세하여 學校 設立에 따르는 投資 이외에는 실질적인 學校 運營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도한 公共教育財政이 義務教育에 대한 財源捻出과 公學에 대한 財政支援에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어서 私學에 대한 公共支援은 私立中學校에 대한 제한적인 財政支援의 범주를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私學의 절대적 財源인 公納金은 平準化施策,物價政策 등의 교육적, 비교육적 국가정책 목표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私學財政 自立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私學財政이 취약하고 公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됨에 따라 敎師, 敎育施設 등 제반교육여건의 公私學間의 隔差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私學財政自立을 위한 政策代案의 必要性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財政測面에서의 私學運營實態를 파악하고 앞으로 私學의 財政擴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私學의 財政現況에 대한 分析에 있어서 本研究는 私學의 歲出歲入構造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公私學間의 學生 1人當

教育費의 比較分析을 통해서 私學財政問題의 背景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私學財政의 擴充方案을 모색함에 있어 私學財政上 主要收 入源인 納入金,公共財政支援,法人支援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運用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 토하고자 하였다.

私學財政의 實態와 評價

1. 韓國私學教育의 現位置

우리나라의 近代敎育은 私學에 의해 導入· 育成되었으며 해방 이후 교육에 대한 公共投

〈表 1〉 私立學校數 推移

\-\ -/	. —			
	中學	高 校	專門大	大 學
8. 15	33			10
1952	232	109		37
1957	424	256		40
1962	438	252		36
1967	575	365	28	54
1972	718	441	40	54
1977	718	600	77	57
1982	746	723	93	76

資料:文教部,『文教統計年報』

〈表 2〉 私立學校 現况(1983)

	全量	豊 學 校	私	立 學 校	私 學	比 率
	學校	學 生	學校	學 生	學校	學 生
大學(校)	校 99	名 617,050	校 78	名 449,880	78.8	72. 9
專門大	122	208,020	105	189, 300	86.0	91.0
高 校	1,514	2,052,384	745	1,213,641	49.2	59. 1
中校	2,317	2,727,020	728	901,754	31.4	33. 6
國 校	6 , 525	5,048,780	75	26, 986	1.1	1.5

資料: 文教部,『文教統計年報』.

資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私學의 量的 擴大는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敎育에 있어 私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해방 이후 私學의 量的 擴大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民學校를 제외한 모든 學校 級別로 고루 나타난 현상으로 이는 公共部門 의 敎育投資擴大가 敎育의 需要膨脹에 비해 크 게 부족하였고 이러한 공백은 私學의 擴大에 의해 보완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우리 와 비슷한 經濟水準의 나라들보다 모든 學校 級에서 就學率이 높다는 점은 公共部門의 敎 育投資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私學의 擴大 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판단되며 이 점은 우리 나라의 私學을 評價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가주하여야 할 것이다.

〈表 2〉에는 우리나라의 各學校級別 私學의 比重(1983年 基準)이 제시되어 있다. 義務敎 育의 범주인 國民學校水準에서는 私學의 比重 이 극히 미미하나 中等敎育 이상에서의 私學의 比重은 매우 크며, 특히 高等敎育에서는 敎育 의 70% 이상이 私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 다. 中等敎育에 있어서도 高等學校의 경우 私 學의 比重이 中學校보다 상당히 높고, 또한 私 學의 比重은 大都市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表 3〉은 각국의 敎育에 있어 私學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여주고 있는데 私學의 比重이 높은 경우는 日本,臺灣 등 東아시아國家들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儒敎國家에서 敎育에 대한 社會的重要性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인 배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東아시아國家들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中等敎育에 있어서의 私學依存度는 日本,臺灣보

資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私學 다도 우리나라가 매우 높다는 점이 指摘되어의 量的 擴大는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야 할 것이다.

2. 私學財政의 槪况

本節에서는 各級學校別로 私立學校의 歲入 歲出構造, 公私學間의 教育費 比較 등을 통해 서 私學財政의 實態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私立中學校

中學校의 경우, 平準化施策 이후 公私學 공 히 같은 수준의 納入金이 적용되고 있으며 政 府가 책정한 基準運營經費에 맞추어 私學에 대하여는 公納金에 의한 財源과 基準經費의 差를 財政에 의해 支援해 주고 있다. 따라서 私立中學의 主要收入源은 納入金과 政府補助 金으로서 이들이 1984년 私立中學 總歲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8.6%, 17.5%이다(表 4 참조). 우리나라 私立中學校의 1984년 總歲 出規模는 2,050億원에 달하며 이중 人件費가 83.6%, 運營費가 11.4%로서 人件費 외에 一 般管理, 敎材使用 등을 위한 財源은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財產造成費가 1984년 歲出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新設學校 建築 費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私立中學에서 施 設管理나 新規資產取得을 위한 支出은 미미한

〈表 3〉 國別 私學比重

(단위:%)

			年度	初	等	中	等	高	等
日	7	本	1982		0.5		27. 7		73. 7
美	Į	國	1976		12.5		7.3		21.4
27	랑 2	스	1976		5.8		19. 9		4.9
臺	Ĭ	彎	1982		1.1		18.9		64.2
韓	Į	國	1984		1.4		59. 7		76.3

資料:韓國教育開發院 內部資料.

것으로 보인다.

中學校 수준에서 學生 1人當 公教育費의 수준을 公私學間에 비교해 보면〈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級地別로 學生 1人當 總公教育費는 公學이 私學보다 일률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公學에서의 學校新設에 대한 施設投資가 감안된 것으로 經常費面에서 學生 1人當 教育費를 비교하면 全級地에서 公私學間에 뚜렷한 隔差를 발견할 수는없다. 즉 대부분의 私立中學이 財政缺陷補助에 의해 財源을 충당하고 있어 經常費面에서 公私學間의 均衡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私立中學에 있어 施設與件改善을 위한

投資가 미흡하여 施設의 老朽化가 심각하고 특히 農村私立中學의 施設與件은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歲入面에서 私學法人의 學校運營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有數財團에서 운영되고 있는 私學은 政府의 財政支援을 최소화하고 財團의 投資에 의해 부족한 財政을 충당하고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부족분을 政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中高竝立學校에서는 中學校의 경우에 政府補助가 다름으로 해서 高號俸敎師들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轉補,活用하고 있다. 또한 中學校敎育의 義務敎育化에 대한 政府施策이 거

〈表 4〉 私立中學校 教育費 豫算1)

(단위:百萬원, %)

歲		入	歲		出
	1983	1984		1983	1984
計 納 入 金 轉入,補助金 借 入 金 其 他	197, 243 79. 9 15. 7 2. 5 1. 8	205, 376 78. 6 17. 5 2. 1 1. 8	計 件 費 費 費 整 整 整 整 費 費 數 產 数 成 他	197, 243 83. 2 11. 8 2. 6 0. 3 2. 0	205,376 83,6 11.4 2.6 0.5 2.0

註:1) 教費 및 育成會費 豫算. 資料:文教部,『文教統計年報』.

〈表 5〉 公私學間 1人當 公教育費(中學校, 1984)

(단위 : 干원)

	1 糸	及 地	2 \$	汲 地	3 á	汲 地
	公	私	公	私	公	私
學生 一人當	305. 2	228. 7	297. 8	251. 7	314. 4	278. 6
	187. 3	192. 4	229. 7	213. 2	241. 7	244. 2
	30. 2	32. 4	29. 3	31. 8	29. 6	29. 2
	217. 5	224. 8	259. 0	245. 0	271. 4	273. 4
學 生 負 擔 率(%)	62. 7	83. 7	40. 3	47. 7	31. 5	36. 7
教 員 平 均 號 俸	9	9	10	9	9	9
教員當學生數(名)	43	44	36	37	34	32

資料:各市道 教育委員會.

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私學에 대한 處方이 불투명하여 私學法人이 中學校에 대하여는 施 設補修 등의 投資를 기피하고 있어 私立中學의 施設與件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나. 私立高等學校

〈表 6〉에 나타난 私立高等學校 歲入構造를 보면 納入金(90%)과 補助金(5%)이 95% 수 준이며 이중 補助金은 實業系 高等學校에 대 한 政府財政支援으로 실제 대부분의 人文系 單一學校에서 學校運營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納入金에 의존하고 있다".

歲出部門에서 私立高等學校의 人件費는 總歲出의 71.4%(1984년)로 私立中學校의 경우보다 人件費比重이 낮다. 따라서 私立高校가私立中校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納入金 수준이 中學校보다높아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納入金收入에 의해 독자적인 學校運營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高號俸教師의比重이 높은 역사가 긴 일부 傳統私學에서나또는 學生規模가 작은 地方學校의 경우에 상

〈表 6〉 私立高等學校 教育費 豫算1)

(단위:百萬원, %)

歳		入	歲		出
	1983	1984		1983	1984
計 納 入 金 轉 入,補 助 金 借 入 金 其 他	385, 314 90. 1 4. 9 0. 4 4. 4	417, 116 89. 8 5. 1 0. 2 5. 0	計 件 營 運 生 整 整 整 費 費 費 費 費	385, 314 71. 3 16. 1 4. 2 5. 3 3. 2	417, 116 71. 4 16. 2 3. 6 6. 0 2. 7

註:1) 教費 및 育成會費 豫算. 資料:文教部,『文教統計年報』.

〈表 7〉 單位高等學校 公教育費 比較(1984年 豫算)

			「가」校 (新興私立)	「나」校 (傳統私立)	「叶」校 (農村私立)	「라」校 (서울公立)
•	級 生 1人當 學 ^点 1人當 公教		45 2,750 32.5 357,507	30 1,800 33.3 352,141	15 896 33. 2 310, 931	49 2, 950 31. 3 351, 273
豫 納 法	算 規 入 人 轉	模(千원) 金 入 金	938, 146 (88. 6) (6. 4)	633, 854 (86. 3) (4. 3)	278, 594 (95. 9) (0. 2)	1, 036, 257 — —
人 運 施	件 營 設	費費	(84. 9) (10. 7) (4. 4)	(87. 6) (12. 1) (0. 3)	(82. 3) (17. 7) (0)	(83. 2) (16. 1) (0. 7)

¹⁾ 기타 항목은 대부분 전년도 移越金으로, 法人轉入에 의한 學校運營支援은 미미하다.

당한 財政的 어려움이 있다.

〈表 7〉에서 학교 배경이 상이한 3개의 私立 高等學校의 學校概況과 豫算規模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들 資料로부터 公立高等學校와 對比 되어 있는 私立高等學校 財政에 대한 몇 가지 관단을 유추할 수 있다.

「가」校는 서울의 소위「新興私立」高校로서학교규모가 크고 法人財團의 學校運營에 대한支援이 總豫算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學校運營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교이다. 「가」校의 1人當 教育費는 비슷한 규모의公立校인「라」校보다 높다. 그러나「가」校의경우에도 人件費가 納入金의 96%에 달해 法

人支援이 없다면 이 학교의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校는 서울에 위치한 역사가 오랜 傳統私學으로 高號俸敎師의 比重이 높아 納入金이 人件費에도 못미치고 있어 學校運營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法人轉入金이 全體運營豫算의 4.3% 로서 他私學에 비해 轉入金이 높기는 하지만 學校運營을 위하여 일부 借入金등 外部財源으로 經常費가 충당되고 있다. 「다」校는 2級地學校로서 納入金 依存度가 96%에 달하나 人件費比重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1級地보다 納入金 수준이 낮고 法人轉入金이나 國庫補助가 거의 없어 學生 1人當 公

〈表 8〉 公私學間 1人當 公教育費(人文系高等學校, 1984)

(단위:干원)

	1 級 地「か」	1 級 地「나」	2 級 地	3 級 地
	公 私	公私	公私	公私
學生 人 費費費費費 人運經常費費	477. 9 359. 6 283. 7 268. 1 51. 4 66. 9 335. 1 335. 0	259. 6 228. 7 36. 0 56. 5	401. 2 318. 1 301. 8 248. 6 42. 3 54. 4 344. 1 303. 0	439. 2 279. 1 326. 2 218. 0 50. 1 55. 1 376. 3 273. 2
學 生 負 擔 率(%) 教 員 平 均 號 俸 教員當學 生 數(名)	65. 5 92. 9 8 10 31 34	69. 8 93. 7 10 11 32 33	56. 0 93. 5 12 12 28 32	45. 3 87. 5 9 13 28 33

資料:各市道 教育委員會.

〈表 9〉 公私學問 1人當 公教育費(實業系高等學校, 1984)

(단위: 주원)

									(21)	カ・!ゼ/
			1 級	地「가」	1 級	地「나」	2 着	汲 地	3 \$	汲 地
			公	私	公	私	公	私	公	私
學生	公 教 育	費	545.8	316.8	575.0	373 . 5	621. 9	345.8	596. 1	_
í	人件	費	362.8	218. 3	377.4	263. 2	421.2	268.5	416.9	_
人	運營	費	120.0	72.3	102.5	84.5	96.6	64.9	76.4	-
人當	經常		482.8	290.6	479. 9	347.8	517.8	332. 1	493.3	_
學	生 負 擔 率(%	(45. 3	85.8	31.3	80.1	29. 6	80.8	32, 9	_
教	員 平 均 號 作	奉	9	10	12	11	8	11	8	
教	員當學生數(名)	27	34	23	31	22	30	23	_

資料:上同.

敎育費는 都市私學에 비해 크게 뒤진다.

高等學校 수준에서 公私學問 學生 1人當 公 敎育費를 비교한 결과가 〈表 8〉 및 〈表 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人文高校의 경우 學生 1 人當 公敎育費는 全級地에서 公學이 私學보다 월등히 높으나 中學과 마찬가지로 施設費 부 분을 제외한 學生 1人當 經常費는 1級地에서 는 公私學間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2級地와 3級地에서는 私學의 學生 1人當 經常費가 公學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 이는 地方學校의 納入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적절한 財政支援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經常費의 公私間 隔差는 주로 學生 1人當 人件費의 隔差로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公私學 間의 敎育隔差가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私學에서 運營費 節減의 방편으로 人件 費를 절약하려는 의도에서 低號俸敎師를 선호 하기 때문에 모든 級地에서 私學敎員의 平均 號俸이 公學보다 낮고 따라서 敎員 1人當 學 生數도 私學이 公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表 9〉에 나타난 實業系 高等學校의 公私學 教育費를 비교해 보면 全級地에서 總公教育費 면에서나 經常費 면에서도 公學의 學生 1人當 教育費가 私學의 수준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 實 業系 高等學校에서 私學運營의 어려움이 크며 私學教育이 公學에 크게 뒤집을 알 수 있다. 公 私學間의 隔差는 人件費와 一般運營費 면에서 공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따라 敎員 1人當 學 生數,實驗實習 수준 등 主要敎育指數上에서 私學이 公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을 의미한 다.

다. 私立大學

1980년 이후 大學人口가 팽창하고 納入金수준이 점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私立大學의 總豫算規模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1984년 예산기준으로 私立大學의 歲入歲出規模는 7,124 億원에 달하며 私立專門大學의 경우에는 1,380 億원이다.

1984년을 기준으로 私立大學 歲入中에서 納入金收入은 전체의 82.0%, 借入金이 6.9%,轉入金 및 寄附金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私立大學 運營豫算의 상당부분이 借入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8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난 學生定員을 수용하기 위한 外廓施設建設에 드는 費用을 충당하는 데 資金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歳出構成面에서 1984년의 私立大學 豫算을

〈表 10〉 私立大學(校) 教育費 豫算1)

(단위:百萬원,%)

歲		入	歲		出
	1983	1984		1983	1984
計 納入金및手敷料 轉 入,寄附金 借 入 金 其 他	663, 170 80. 9 8. 2 8. 4 2. 5	712, 382 82. 0 8. 7 6. 9 2. 3	計 件 費 費 費 學 生 造 選 一 選 一 選 一 選 一 選 一 選 一 選 一 選 一 選 一 選	663, 170 44. 8 12. 1 18. 7 23. 9 1. 1	712, 382 45. 9 12. 3 18. 8 21. 6 1. 8

註:1) 教費 및 期成會費 豫算. 資料:文教部,『文教統計年報』.

보면 人件費가 全體歲出의 45.9%, 財產造成 費斗 21.6%, 學生經費計 18.8%, 一般運營費 가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學生經費는 주로 奬學金支給額으로서 1980년 定員擴大 이 로 지불토록 규정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財 産造成費가 大學總歲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70년대에는 10% 수준에 있었으나 80년대에 들 어와서 20%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私立 大學敎育費의 상당부분이 外廓施設建設에 투 입됨으로써 敎育의 質的改善을 위한 敎授要員 擴充, 敎育機資材 確保 등에 대한 投資가 상대 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는 單位大學의 學生規模가 크게 증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外廓施設投資 의 所要가 점차 줄어든다면 敎育의 質的改善 을 위한 投資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생 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學生 1人當 公教育費를 公私立大學間에 비교해 보면 〈表 11〉에서 보듯이 1983년의 경우 私立大學의 學生 1人當 教育費는 公學의 87% 로서 이 隔差中 상당부분이 學生 1人當 人件 費의 隔差에서 유발된다. 表에 나타난 바와 같 이 私立大學의 敎員 1人當 學生數는 39名으로

〈表 11〉 國公・私立間 1人當 公教育費(大學校, 1983)

(단위 : 干원)

	國・公立	私 立
學生 一人當	1, 261 550 334 884	1, 177 488 346 834
學 生 負 擔 率(%) 教 員 平 均 號 俸 教員當學生數(名)	46. 8 12 32	74. 9 11 39

資料: 文教部,『文教統計年報』.

公學에서 보다 크게 높아 敎育의 質的隔差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敎育費의 學生 負擔率 면에서 公學이 46.8%임에 비해 私學 의 負擔率은 75%에 달해 大學敎育에 있어서 도 公私學間의 質的 不均衡과 아울러 學生負擔 면에서도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이 지 적되어야 하겠다.

3. 私學法人 財政實態

우리나라의 私立學校法에 의하면 私立學校의 設立法人은 그가 설치, 운영하는 學校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와 當該學校의 經營에 필요한 一定規模의 財產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同法의 精神은 私學經營에 있어學校運營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學校法人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일정규모의 收益財產을 보유함으로써 이에서 발생되는 收益을 學校運營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同法을 통해 私學法人의 財政支援義務를 명기하고 있다.

收益用 基本財產의 法定規模는 1976년 설정 된 수준이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各學校級別로 는 〈表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에 나타난

〈表 12〉 收益用 基本財產의 法定規模

大 學:學生定員當 20萬원								
專門大學:學級當	水產海洋系 工 業 系 實 業 系	990萬원 600萬원 510萬원						
初中等學校:學級當(千원)								
	서울•釜山	市地域	<u>其他</u>					
國 民 學 校	1,200	1,100	1,000					
中 學 校	1,300	1,200	1,100					
人 文 高 校	1,400	1,300	1,100					
實業高校	2,000	1,800	1,600					

기준에 의하면 서울地域 30學級規模의 人文私立高等學校의 法定保有財產은 4,200萬원이며 1萬名 定員의 私立大學의 法定保有財產의 模規는 20億원에 달한다. 현행규정상 學校法人은 收益用 基本財產에서 발생되는 純利益中 80/100을 學校運營에 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學校法人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林野, 田畓, 垈地 등 收益이 크게 기대되지 못하는 不動產으로 구성되어 있어 法人의 保有財產에서 발생하는 收益이 學校財政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文教統計年報』에 나타난 私學法人의 財政 狀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의 경우 法人財產收入의 규모는 먼저 中等私學法人에 서 338億원으로 이중에서 運營費補助,施設費 補助,年金 및 醫療保險負擔金支援 등의 형태 로 學校運營에 法人側에서 투입하는 轉出金의 규모는 131億원이다. 이는 同年의 私立中等教 育 總歲入의 2.2%로 學校法人의 學校運營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충분하지 못함을 나타낸 다. 대학의 경우에는 法人의 財產收入이 41億 원으로 收益用財產에서 발생하는 收益規模는 영세하지만 病院 등의 附帶事業을 통한 法人 收入의 규모가 커서 실제 學校經營에 대한 轉 出金의 규모는 1983년 약 382億원으로 이는 私立大學 總教育費의 5.7%에 달한다.

참고로 美國의 경우를 보면 1980년도 私立 大學豫算中 保有財產에서 발생하는 收入이 전 체의 5.1%이며 病院 등 附帶施設收益이 전체 의 23.3%로서 總私立大學 歲入에서 法人의 調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8.4%이다³⁾.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學校 法人은 法人의 保有資產이 대부분 영세하며 保有資產이 土地 등의 低收益性 資產을 大宗 으로 하고 있어 法人의 財政이 취약하고 法人 의 學校運營에 대한 支援이 미미하다.

資本主義의 歷史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社會 經濟構造上 學校法人이 방대한 收益資產을 보 유하고 收益資產에서 발생되는 收益을 學校運 營에 대폭 투입함으로써 私立學校敎員을 육성 하는 상황을 일반적인 規範으로 인식할 수 없 다. 美國의 경우 私學財政 특히 私立大學의 財政에 있어 基金(endowment fund) 收益金や 私學總收入의 5.1% 차지하고 있다. 일부 有 名私學은 基金收益이 전체 學校收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私學財 政運用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國 家經濟規模가 커지고 國富의 規模도 확대될 것이며 또한 國民所得의 增加와 可處分所得의 增加로 學校法人 자체의 資產增加의 個人 또 는 法人의 寄附行爲의 增加로 인한 私學財政 擴充을 점진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 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여건에서 私學의 保有資產規模를 획 일적으로 정하고 資產收益의 一定比率을 學校 運營에 支援토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이 무시 된 형식적인 行政이 아닌가 생각한다.

²⁾ 文敎部 內部資料에 의하면 學校法人 保有財產中 林野, 田畓, 垈地 등의 低收益性 不動產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의 경우 53.1%임.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US Dept. of Education, 1983.

Ⅲ. 私學財政 關聯政策의 現况

1. 納入金運用과 國庫支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中等私學을 예외로 하면 私學은 學生納入金 收入에 거의

〈表 13〉 納入金 現况(1984)

(단위:원)

		1		級 ・邑	^丸)	<u>t</u>	2 紀	及地 訂)	3 (島)	級地與,僻地)
+	學校	196, 800 (5, 700)				,000 700)				
(等學校立 公文系) (實業系) 私立	324, (6, 8 324, (6, 8 324, (6, 8	000 (00) 000 (00)	1 (5, 7 68, 5, 7	000 00) 000	(5, 4) 157, (5, 4) 290,	, 600 400) , 000 400) , 000		186, 000 (5, 000) 140, 400 (5, 000) 238, 800 (5, 000)
綜		人		文		K	自		然	系
合	新入生	國 846、	立	私 1 1		立 000	04.8	立 000	私 1	立 175,000
大學	2 學年 3 學年 4 學年	766, 765, 725,	000 000	1,0 1,0	69, 54,	000 000 000	868, 864,	, 000 , 000 , 000	1, 1,	088,000 078,000 064,000

註:1) 학도호국단비 제외

2) () 안은 入學金

3) 大學은 最高額 基準

資料:文教部,『教育財政現况』, 1984.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私學 納入金 수준은 私學教育의 質과 바로 연결되 며 따라서 私學納入金의 策定은 政策的으로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各級學校 納入金은 〈表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公・私學別,級地別,系列別로 구분 책정되고 있다. 먼저 公・私學別로는 平準化推進下의 中等教育을 예외로 하면 私學의 納入金이 公學보다 높다.級地別로는 1級地(市・邑地域)의 納入金이 가장 높고, 2,3級地(面地域,島嶼・僻地地域)로 갈수록 納入金이 낮아진다.系列別 納入金은 高等學校의 경우 人文系가實業系보다 높으며,大學의 경우 自然系가 人文系보다 높으나 私學에 있어서는 그 差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表 14〉에는 1972~83年 기간동안의 各級學校 納入金의 變化推移가 제시되어 있다. 消費者物價指數와 비교할 때 納入金指數는 中學校의 경우 대체로 비슷하게 增加하였으나 高等學校와 大學의 경우 消費者物價指數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納入金指數의 增加는 各級學校「敎育價格指數」의 增加에는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各級學校의 納入金은 當該學校에서 敎育運用을 위해 購買하는 財貨나 서비스의 價格에 비해서는 낮은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것

〈表 14〉 納入金의 變化 推移

	納入金		指數全國		教 育	價 格	格指數	
	中	高	大	消費者物價指數	中	盲	大	
19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5	151.9	168. 2	234. 9	160.8	190. 2	189.9	188.8	
1978	254.9	304. 2	365.8	233.8	410.0	379. 1	358. 3	
1980	328.4	408.0	431.4	355.8	660.9	625.8	523.6	
1982	470.8	632. 2	658.1	462. 9	915.8	841.0	751. 9	

이다4).

다음에 私學에 대한 國庫支援을 살펴보면 〈表 1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國策事業 支援을 제외한 一般經費支援의 경우 中等私學 을 제외할 때 그 額數가 극히 미미하다. 1984 年 政府豫算에 의한 私學支援은 總額 740億원 의 규모로 私立中學校 財政缺陷支援이 大宗을 이루는 一般經費支援 400億원과 技術教育振 興,特殊學校補助,勤勞靑少年支援 등을 포함 하는 國策事業支援 340億원으로 大分된다. 中

〈表 15〉 私學에 대한 國庫支援(1983~84)

(단위 · · 百萬원)

	-t- 246 F7	豫	 算
	事 業 名	1984	1983
ī.	一般經費支援	40,299	39, 413
	私立中·高等學校 財政缺陷 支援	37,664	38,818
	私立國民學校 教員 人件費 支援	635	595
	私立大學 施設擴充 融資利差補塡	2,000	
I.	國策事業支援	33, 899	37, 035
	產業 및 技術教育振興	11,346	15, 692
	特殊學校 補助	6,463	5, 795
	勤勞青少年教育 支援(特別學級)	3, 131	2,943
	外國語教育 支援	332	387
	國樂教育 支援	18	20
	私立學校 教職員 年金事業 및 醫療保險 支援	12,609	12, 198
솓	計 	74, 198	76, 44 8

資料:文教部,『豫算概要』,『教育財政現况』, 1983, 1984.

教育價格指數=(人件費指數* 人件費)

+(運營費指數*運營費)

《表 14〉의 教育價格指數는 위 式의 人件費指數의 運營費指數에 各各 '教育公務員給與指數'의 一般政府 消費支出中 '教育費支出「더플레이터」'를 代入하여 算出한 것이다(教育價格指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D.K. Halstead, Inflation Measure for Schools and Colleg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취조).

等私學 財政缺陷支援은 平準化實施 이후 教員 俸給平準化 등으로 私立學校 財政所要는 크게 增加한 반면에 私立學校 納入金은 公立學校와 동일하게 策定하고 그 引上을 物價政策的 次 元에서 최대한 억제함에 따라, 私學의 財政缺 陷을 國庫에서 補填하기 위한 것으로서 1971年 이래 그 額數가 매년 增加하고 있다(表 16 참 조). 中等私學 財政缺陷支援을 처음 실시 이 후 그 方式에 있어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 으나 현재는 個別私學의 入學金 및 授業料 收 入이 人件費 및 公學水準의 運營費需要에 미 달하는 경우에 그 差額을 補填하는 이른바「綜 合補助方式」을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된 私學의 納入金運用과 國庫 支援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公學爲主의 財政政策에 따른 문제이다. 平準化地域의 中等私學에 대해서는 級地別로 公學과 均等한 納入金을 策定하고 財

〈表 16〉 中等私學 經常費補助 推移

(단위:百萬원)

Ar rin	補	助	額
年 度	計	中學校	高等學校
1971	172	172	
1972	488	488	_
1973	499	499	_
1974	1,018	1,018	
1975	2,612	2,612	
1976	5,569	5, 569	_
1977	7, 274	6,675	589
1978	8, 959	8, 959	
1979	17,607	15,028	2,579
1980	26, 255	22,677	3,578
1981	1981 18,948		
1982	31,558	31,558	
1983 38,818		38,818	_
1984	37,664	37, 664	

資料:文教部,『豫算概要』, 1984.

^{4)「}教育價格指數」已 各級教育機關이 購買하는 財貨와 서 비스의 價格指數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教育費長 크게 人件費와 運營費로 구분한다면 教育價格指數는 다음과 같이「人件費指數」와「運營費指數」의 加重平 均值로서 표시될 수 있다.

政缺陷補助에 의해서 人件費外에 公學에 준하 는 運營費를 保障함으로써 經常費面에서는 政 策的으로 公・私學의 均衡이 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施設費는 國庫補助 없이 전적 으로 私學法人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公・ 私學間 施設의 不均衡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大學과 非平準化地域의 高等學校의 경우 주로 公學에 대해서만 國庫支援을 실시하고 私學에 대해서는 公學에 비하여 納入金을 높게 책정 하여 주로 受益者負擔으로 運營하게 함에 따 라, 私學在學生은 더많은 納入金을 내고 質的 으로 낮은 敎育을 받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公學의 收容能力 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私學이 就學人口의 상당부분을 흡수함에 따라 私學이 公學의 대 행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 은 公學爲主의 敎育財政政策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무엇보다도 公學爲主의 財政政策은 公・私 學 納入金의 隔差를 통해서 公・私學 在學生 間의 衡平의 문제를 야기한다. 外國의 私學政 策運用에 있어 私學의 納入金 自律化施策에 따라 私學의 納入金이 公學에 비해 높은 수준 을 유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納入金 運用方式은 私學의 比重이 낮고 一般大衆의 教育需要가 주로 國庫로써 運營되는 公學에 의해 충분히 收容되어 높은 登錄金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私學의 學生이 모집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妥當性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高等學校教育이나 大學教育과 같이 公學의 學 生收容能力이 제한되어 있어서 私學이 과반수 이상의 學生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公・私學 間 納入金의 隔差는 教育費가 적게 드는 公學 에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私立學校에 就學 하여야 하는 많은 學生과 學父兄에게는 租稅 및 높은 登錄金의 二重負擔이 주어지게 되어 敎育費負擔에 있어 衡平에 크게 어긋나는 일 이 아닐 수 없다.

外國 특히 美國의 경우 私學의 納入金負擔이 높은 點에 대하여 비록 私學의 選擇이 완전히 自律的으로 정해진다 할지라도 租稅 및 納入金의 二重負擔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이와 같은 二重負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바우처」(Voucher)와 같은 制度의 導入이나 公納金負擔의 一部를 學父兄의 租稅負擔에서 滅免해 주는 租稅政策方案 등이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公學爲主의 財政政策은 公·私學間 納 入金의 差가 公·私學間 財政支援差에 미치지 못하고 私學法人의 財政支援이 극히 미미한 현재,公·私學間 學生 1人當 公教育費의 差 를 유발함으로써 公·私學教育의 質的 不均衡 을 초래할 뿐 아니라, 前述한 公·私學 納入 金 差에 따른 私學在學生의 不利益을 더한층 加重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로,「補助私學」을 예외로 할 때 私學財政收入이 學校別 財政需要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데 따른 문제이다. 同等한 敎育의 質을 전제로 할 때 學生 1人當 公敎育費는 平均號棒・學校規模에 따라서 單位私學別로 크게 다를 수있다. 그러나 私學財政收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納入金이 이러한 個別學校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一率的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私學間에 財政事情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예컨대 敎員平均號棒의 차이에 따라 傳統私學이 新興私學에 비해서, 그리고 學校規模의 차이에 따라 農村所在私學이 都市所在私學에 비해

서 財政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農村所在私學의 경우 農村住民의 敎育費負擔의輕減을 목적으로 都市所在私學에 비해서 納入 金이 더 낮게 책정된 한편 이와 병행하여 그 差額만큼의 財政支援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 財政的 어려움이 더욱더 심각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單位學校別로 財政收入이 財政需要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은 모든 私學에 대해서 硬直性 經費인 人件費節約의 誘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私學은 身分保障, 昇進機會 등의 측면에서 國・公立學校에 비해 優秀한 敎員의 確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人件費節約 경향까지 가세되면 敎員資質 및 敎員確保面에서 公・私學間의 隔差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2. 稅制上의 支援

私學教育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은 1970年代에 걸쳐 계속 擴大되어 현재 상당히 폭넓게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그 주요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學校運營에 직접 관련되는 國稅 및 地方稅는 非課稅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學校法人의 收益事業 및 收益用財產에 대해서는 課稅를 원칙으로 하되,非營利法人에 대한 法人稅率의 적용,財產稅重課稅의 稅除,收益事業의 所得이 學校敎育에 投入되는 경우 당해년도의 所得 범위내에서 損費處理,收益用財產의 처분에 따른 讓渡所得이그로부터 3年 이내에 學校敎育에 投入되는 경우 法人稅,特別附加稅의 稅除 등의 租稅惠澤이 부여되고 있다.

세째로, 私學客附金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損費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學校法人이 全額 出資하여 設立한 收益事業體가 그 學校法人이 運營하는 學校에 寄附하는 경우 당해년도의 所得 범위내에서 全額 損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學校事業을 위한 個人出捐資產에 대해서는 贈與稅를 死除해 주고 있다. 한편 1986年末까지를 時限附로 實業系學校의 新・增設을 위해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해서 일정한도내에서 5年間 移越하여 損金・算入하도록 하고 있다.

네째로, 醫科 및 齒科大學 附屬病院의 收入 은 敎育目的으로 사용되는 경우 法人稅가 冤 除되어 왔으며, 1986年 이후부터는 法人稅가 課稅되나 다만 公益法人에 대한 최저한의 稅 率 5%가 적용될 것이다.

私學의 育成을 위한 措置로서 私學에 대한 稅制支援의 改編이 근래에 자주 논의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私學 關聯稅制 改編에 관하여 부각되는 주요쟁점을 부석・정리하고자 한다.

가. 寄附金全額 損費處理

私學에 대한 外部資金의 迎入을 促進시켜 私學教育財源의 擴大를 기하는 方案으로서 私 學 寄附金에 대한 全額 損費處理가 거듭 主張 되고 있다. 現行稅法은 國・公立學校에 대한 寄附金은 그 全額을 損金으로 認定하는 반면 私立學校에 대한 寄附金은 指定寄附金 限度額 범위내에서만 損金으로 認定하고 있어서 私學 에 대한 寄附金의 流入을 抑制할 뿐만 아니라 公・私學 衡平에 違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私學 寄 附金의 全額 損費處理에 따른 私學支援의 擴 大效果는 企業體와 連繫를 가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일부 私立學校에 局限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1978年 指定寄附金의 限度가 두 배로 擴大됨에 따라 실제로 施行되고 있는 法 人의 總寄附金이 法人의 損費處理 限度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勘案한다면 몇몇 特定私學 을 제의할 때 寄附金全額 損費處理에 따른 寄 附金의 擴大效果는 극히 微微할 것으로 판단 되다.

또한 이와 같은 寄附金控除 限度制는 거의 모든 나라의 稅法에 一般化되고 있어서 우리 나라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며, 그 限度額을 가지고 볼 때도 우리가 결코 엄격한 것이 아 니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 個人이 非營利團體 에 寄附하는 경우 所得의 50%까지 所得控除 를 許容하고 있으나 法人의 寄附行為에 대해 서는 純所得의 5% 限度內에서만 損金으로 算 入시키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個人이나 法 人이 國家나 學校 등 非營利機關에 寄附하는 경우 所得控除를 認定하고 있으나 그 控除範 園를 所得의 25%로 制限하고 있다.

個人에 의한 寄附行為가 土着化되지 않은 狀况에서 寄附金 留置는 주로 企業體의 緣故 가 있는 私學에 局限된 問題라는 점에서 公・ 私學 寄附金稅制의 직접 비교는 그 意味가 크 지 않을 것이다.

한편 私學寄附金에 대한 全額 損費處理는 私學財政運用이 철저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變 則的 財產腦與의 方便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도 문제되는 바 크다.

나. 私學法人에 대한 法人稅 特別附加稅의 免除

私學法人이 보유한 收益用財產의 대부분이 非收益性 또는 低收益性 財產으로 그 收益性 提高를 위해서는 財產轉換이 활발히 이루어져 · 야 한다는 점에서 私學法人에 대한 法人稅 特 別附加稅의 免稅特例措置가 주장되고 있다. 그 리나 法人稅 特別附加稅의 導入目的이 法人의 不動產投機를 抑制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考 慮한다면, 私學法人에 대한 免稅特例措置는 私學法人의 不動產投機를 誘發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하겠다.

다. 學校移轉時 防衛稅 免除

人口分布의 변화에 따라 學校移轉이 불가피한 경우 法人稅,特別附加稅는 免稅되고 있으나 防衛稅는 法人稅가 賦課된 것을 假定한 額에 割增稅率이 適用・重課되고 있어서 學校移轉에 따른,稅負擔이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한 免稅措置가 要望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免稅措置는 國民皆納의 原則에 입자하여 극히限定된 경우를 제외하고 全免稅所得에 課稅하기로 한 防衛稅法의 基本哲學에 어긋날 뿐 아니라 學校法人 외의 公益法人으로 波及될 경우 稅收減少 또한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그십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라. 私學法人의 負擔 各種稅金 全額免稅

前述한 바와 같이 現行稅制는 敎育에 직접 關聯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國稅 및 地方稅의 免稅를 原則으로 하되 敎育에 직접 關聯되지 않는 學校法人의 收益事業에 대해서는 課稅하 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營利法

^{5) 1983}年의 경우 法人의 總申告所得이 3兆77億원으로 指定寄附金限度額이 3,000億원 이상이었으나 法人의 總指定寄附金은 1,293億원에 불과하여 현재의 損費處理 범위내에서도 法人의 寄附行為가 擴大될 여지는 크다고 하겠다.

人과 非營利法人의 租稅負擔을 公平하게 調整 함으로써 租稅歪曲에 의한 資源配分의 非效率 을 가능한 한 줄이고 동시에 租稅回避現象을 방지하는 데 그 基本目的이 있다. 다시 말하여 學校法人 등 非營利法人이 營利法人과 유사한 事業을 하여 營利法人이나 個人企業과 競爭을

〈表 17〉 私學의 稅金納付(1983)

	細目	1別	合計	30億2千725萬원
	小		計	16億8千717萬원
國	法	人	稅	1億3千667 "
	特	別 附	加 稅	1億6千140 "
İ	防	衛	稅	12億3千828 "
	附	加價	値 稅	2千446 "
	特	別消	費稅	5千516 ″
稅	財	產 再 評	質 稅	43 "
	其		他	7千 77 "
	小		計	13億4千 8萬원
地	財	產	稅	5億8千608萬원
	取	得	稅	2億5千649 ″
ı	登	錄	稅	1億4千200 ″
方	住	民	稅	2千746 "
	農	地	稅	1千996 "
稅	莬	許	稅	888 "
	自	動	車 稅	1億3千863 ″
	其		他	1億6千 58 "

註:571개 法人에 대한 세금납부금 총액. 資料:私學財團聯合會, 內部資料, 1983.

〈表 18〉 納付稅金의 規模別 私學法人數

	私學法人數			
納付稅額	1981	1982	1983	
10萬원미만	274	241	243	
10萬원~ 100萬원	147	164	136	
100萬원~ 500萬원	96	105	112	
500萬원~1,000萬원	12	19	28	
1,000萬원~2,000萬원	20	18	23	
2,000萬원~5,000萬원	13	13	20	
5,000萬원~1億	8	6	6	
1億원 이상	1	5	3	

資料:私學財團聯合會,內部資料, 1983.

하는 경우 營利法人에게만 法人稅를 賦課하고 非營利法人에게는 法人稅를 賦課하지 않게 되 면 稅制面에서 兩者의 公正한 競爭을 沮害하 여 資源配分의 歪曲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나 아가서 營利法人으로 하여금 非營利法人으로 형태를 바꾸어 合法的으로 租稅를 回避하게 하는 誘因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和稅原則上의 問題에도 불구하고 私學財政 難을 이유로 私學法人에 賦課되는 각종 稅金 의 全額 免除가 主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私學法人이 負擔하고 있는 稅金의 總額 自體 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財政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零細私學의 경우 納 付稅額이 극히 微微하다는 점에서 稅金全額免 除措置의 財政難 輕減效果는 疑問視된다. 私 學財團聯合會가 調査 • 集計한 바에 의하면 19 83年 571개 私學法人이 納付한 稅金의 總額이 30億3千萬원으로(表 17 참조), 私學의 全體豫 算規模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1983年 全體私學의 公敎育費 1兆5,000億의 0.2%에 해 당), 全體法人의 42.6%인 243개 法人이 10萬 원 이하의 稅金을 納付하였다(表 18 참조). 私 學의 財政難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私學法人負 擔稅金의 全額免除보다는 오히려 여유있는 法 人으로부터 稅金을 걷어들여 零細法人에 대하 여 歲出支援을 실시하는 政策이 효과적인 代 案이 될 것이다.

N. 私學財政擴充을 위한 政策課題

1. 基本視角

私學財政擴充을 위한 政策方案을 모색함에 있어 本研究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몇 개의 基 本方向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私學財政에 관한 政策의 수립 운영 에 있어 公・私學間의 衡平이 指向되어야 한 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平準化施策下의 中等教育의 경우 施設費를 제외한 經常費面에 서는 政策的으로 公·私學 均衡이 추구되고 있기는 하나 기타 敎育部門에 있어서는 公學 爲主의 財政支援과 公・私學間 納入金의 差等 化 등 公學爲主의 財政政策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公學爲主의 政策은 私學의 比重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敎育에 있어 公・ 私學 在學生間의 衡平의 問題를 야기하고 公・ 私學教育의 均衡發展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敎育全般의 發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앞 으로 教育財政政策은 公學爲主의 政策을 止揚 하여야 하며, 財政支援과 納入金策定은 물론 그밖에 敎員 및 學生支援, 國策事業支援 등에 있어서도 公・私學均衡이 指向되어야 한다⁶⁾.

둘째로, 모든 私學에 있어 學校運營을 위한

최저한의 經費는 納入金과 財政支援으로 確保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私學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產에서 발생하는 純利益의 일부 들을 學校運用에 投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私學法人의 零細性으로 인하여 私學法人의 學 校財政支援이 단순히 서류상의 要式行爲에 그 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學校運營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私學 法人에 대한 財政負擔 義務規定은 私學財政運 用上의 不條理를 조장하는 한편 그 實效를 거 두지 못함에 따라 私學의 財政缺陷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私學財政 擴充方案으로서 자주 거론되는 私學法人에 대 한 稅金減免의 擴大 및 私學寄附金에 대한 稅 制支援의 擴大 등의 조치도 그 효과가 규모상 미미할 뿐 아니라 혜택이 주로 일부 여유있는 私學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點에서 全體私學의 財政難解消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公・私學 均衡의 관점에서 私學教育의 質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私學 運營에 따른 최저한의 經費는 私學法人에 義 務的으로 떠맡길 것이 아니라 公學과 마찬가 지로 納入金과 財政支援으로 確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私學設立 이후 그 運營에 대한 私學法人의 財政的인 역할은 일정수준 이상의 追加經費에 대한 자발적인 支援으로 하고, 政府는 效率的인 政策運用을 통해서 私學法人의 자발적인 財政支援이 擴大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私學法人財政의 零細性에 비추어 볼 때 私學法人에 대해서 設立初期 施設投資 이상의 일률적인 財政負擔義務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私學運營에 대한 私學法人의 財政負擔은 個別法人의 재량

⁶⁾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平準化施策이 어떤 방식으로 調整된다 할지라도 高等學校 수준에서 私學에 대한 財源調達도 公學과 같은 방법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高校의 私學財政 개선이 平準化의 轉換과 受益者負擔에 의한 納入金策定으로 귀착됨은 公・私學 형평상바람직하지 못하다.

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優秀施設의 確保, 優 秀教員 및 優秀學生 留置, 特別活動支援 등의 목적으로 自律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나 現在 대다수의 私學法人의 경우 財政이 극 히 빈약하여 私學支援能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편 一部 支援能力이 있는 法人의 경우 에도 稅制上의 문제와 통제일번도의 私學政策 으로 인하여 私學에 대한 投資를 기괴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優秀私學의 育成의 관점 에서 支援能力이 있는 法人의 財政負擔을 확 대시키기 위해서는 稅制를 一部 改編함과 아 울려 私學에 대한 지나친 統制를 止揚하고 私 學運營上의 自律性과 獨立性을 어느 정도 保 障함으로써 私學法人의 投資意慾을 고취시켜 야 한다.

네제로, 私學施設資金에 대한 長期融資制度 가 確立되어야 한다. 施設費는 一時的으로 막 대한 資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經常費와 別途로 그 確保를 위한 制度的인 裝置가 필요 하다. 그러나 現在 이러한 制度的인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私學施設의 老朽化 및 不 足現象이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고 있으며, 一 部 몇몇 私學의 경우 負債에 依存한 무리한 施設擴充으로 인해서 不實運營 내지는 倒產의 問題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私學施設 의 老朽化가 累積되고, 敎具 및 機資材의 現 代化의 必要性이 增加함에 따라 이러한 問題 는 더욱더 深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私學施設資金에 대한 長期融資制 度가 절실히 要望되고 있으며, 이 制度確立에 있어서는 基金造成과 償還保障이 關鍵이 될 것이다.

2. 納入金運用 및 財政支援方式의 轉換

學生 1人當 經費는 教員平均號俸・學校規模 에 따라서 學校間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補助私學을 예외로 하 면 個別私學의 財政收入은 經費와는 관계없이 級地別로 納入金 수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決 定되고 있다. 따라서 私學의 경우 敎員의 平 均號俸과 學校規模에 따라 財政事情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며 그 결과 人件費의 節約이 財政運用의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補助私學 의 경우 公學과 같이, "基準財政需要"가 算定 되고 있으나 育成會 會計가 別途로 운용됨에 따라 學校間 財政需要의 차이가 제대로 反映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私學間 더 나아가서 公・私學間의 財政隔差를 解消하 여 敎育의 均衡發展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公• 私學 공히 일정한 基準에 의해서 單位學校 運 營에 따르는 最低限의 經費(이하에서는 「必要 經費」라고 함)를 算定하고 이를 納入金과 財 政支援으로 保障하는 方案이 검토되어야 한 다. 前述한 바와 같이 私學法人 財政의 零細 性을 감안할 때 私學法人에 대해서는 設立初 期 施設投資 이외의 財政義務를 賦課하기 어 려울 것이므로, 그 財政事情에 따라서 必要經 費 이외의 추가적인 經費를 負擔하도록 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必要經費算定과 經費調達의 方 案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必要經費의 算定

單位學校別로 必要經費를 算定・確保토亭

하여 學校間 敎育財政의 隔差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算定基準이 確立되어야한다. 이하에서는 必要經費 算定基準의 確立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몇가지 事項을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対째로,必要經費는 人件費와 運營費外에 施設積立金으로 區分・算定하도록 한다. 現行 中等私學財政缺陷補助方式을 보면 基準財政需 要算定에 있어서 人件費와 運營費만이 포함되 고 施設費는 전혀 計上되지 않고 있다. 이것 은 施設費는 私學法人에게 負擔시키려는 政策 意志를 反映하는 것이나, 私學法人財政의 零 細性으로 인하여 私學施設의 老朽化 및 內部 施設未備의 問題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問題는 公·私學施設의 不均衡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러한 施設投資不足이 계속 누적 될 경우 장례 어느 時點에서 폭발적인 財政需 要를 誘發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放置될 수 없는 심각한 問題이다. 이런 점에서 必要 經費算定에 있어서 施設費項目의 算入이 불가 피하다고 보는바, 年間 施設費所要의 不規則 性을 고려하여 施設費는 運營費와는 별도로 積立・使用되어야 할 것이다.

〈表 19〉 高等學校 教員定員

(단위:名)

學 級 數		15	21	30	45
校 :	長	1	1	1	1
校	監	1	1	1	2
實科教師	師	5(11)	7(15)	10(21)	15(31)
教 自	師	33	45	63	93
養護教師	師	1	1	1	1
特殊教具	師	1	1	1	1
教 員 !	數	42(48)	56(64)	77(88)	11.3(129)
學級當教員	數	2.8(3.2)	2.7(3.0)	2.6(2.9)	2.5(2.9)

註:()의 숫자는 實業系에 대한 數値임. 資料:韓國法制研究院,『文教大法典』, 1982.

둘째로,人件費需要는 敎員人件費와 事務職員(一般職,技能職,雇用職)人件費를 합해서算定되어야 할 것인바,敎員 및 事務職員의수는 각각 그 定員을 超過하지 않도록 한다.현재 敎員 및 事務職員 定員은 現在 敎育法施行令에 學校級別로 規定되어 있으나 財政上의이유로 私學뿐 아니라 公學에 있어서도 定員의 完全確保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서울市경우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私學에 비하여 敎員確保率이 높은 公學에 있어서도 學級當敎員數를 中學校의 경우 1.5名,高等學校의 경우1.8名(實業系는 2.0名)基準으로 確保하고 있어서 敎員定員(表 19 참조)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人件費必要經費의 算定을 위해서는 財政制約을 반영하여 學校級別 教職員定員이 現實的으로 再調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째로,運營費 및 施設費必要經費는 學校 級別 單位經費를 設定・算定하도록 하되 授業 方式上의 差를 고려하여 中・高等學校의 경우 에는 學校當 및 學級當으로 大學校의 경우에 는 學校當 및 學生當으로 單位經費를 設定하 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公立 및 國庫補助에 의존하는 私立中・高等學校의 る今 基準財政運營費 需要算定時에 學校當・學 級當 單位經費가 설정・적용되고 있으나 育成 會會計가 별도로 編成・運營되고 있어서 모든 運營經費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學校 級別 學校當・學級當 單位經費는 校費會計 및 育成會會計의 全體歲出項目을 세밀히 검토한 후 總運營費 需要를 現水準에서 크게 변화시 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째로,學校級別 單位經費는 級地別,系列 別(또는 專攻別)로 차등・설정되어야 한다. 먼저 級地別로 보면 規模의 經濟를 감안하여 都市地域學校에 비하여 小規模인 農村地域學 校의 單位經費가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하며, 系列別로는 實驗實習費의 차이를 감안하여 人 文社會系에 비하여 實業系,自然系의 單位經 費가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 은 系列內에서도 專攻에 따라 單位經費가 차 등・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必要經費算定의 基準이 되는 教職員 定員 및 俸給,施設基準,運營費 및 施設費 單位經費는 教育의 質的 改善의 관점에서 現 在의 수준에서 長期的으로 上向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教育은 지난 20여년간 量的 으로 크게 成長하였으나 質的인 면에서는 後 進國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教育에 대한 投資의 擴大를 통하 여 教育의 質을 改善하는 일이야말로 韓國教 育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가 되고 있 다. 그러나 教育財源의 制約下에서 教育의 質 的 改善은 短時日內에 이루어질 수 없는 課題 로서 장기적인 計劃에 의해서 年次的으로 推 進되어야 할 것이다.

나. 必要經費의 確保:納入金 및 財政支援

앞에서 單位學校別 必要經費算定의 基本原則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算定된 必要經費는 어떻게 調達되어야 하는가.

장기적으로 人口構造의 變化에 따라 學生數의 增加趨勢가 緩和되고 國家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敎育財政與件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完全就學의 단계에 이른 中學校를 中心으로 國庫支援이 점

차 擴大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中學校의 경우 장기적으로 納入金의 公費로의 轉換을 基本方向으로 하여 가능한 한 納入金 引上을 抑制하고 財政支援을 확대함으로써 必要經費 確保에 있어서 納入金依存度를 점차 縮小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高度產業社會에 부승하는 專門 人力開發의 必要性에 비추어 앞으로 敎育의 質的 改善을 위한 追加的인 敎育財源의 所要 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敎育經費 調達에 있어서 納入金의 의존도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특히 中學校 納入金의 國庫로의 轉換이 추 전되는 期間중에는 高等學校 이상의 敎育은 受益者負擔을 基本原則으로 하고 다만 農村 및 實業系高校, 大學의 重點育成分野에 국한 하여 선별적으로 財政支援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受益者負擔의 原則下에서는 所得階層間 教育機會均等의 側面에서 低所得層學生에 대한 學費支援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低所得層에 대한 學費支援은 公的扶助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政府主導下에 政府財源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점에서 볼 때 現在 中學生에 국한・실시되고있는 零細民 子女에 대한 授業料支援을 高等學生 이상으로 확대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현재의 財政與件을 制約條件으로 하고 學校級別·級地別·系列別로 納入金 策定과 財政支援을 보다 상세히 說明하고자 한다.

中學校의 경우,納入金을 현재의 수준에서 級地別로 均一 策定하고 納入金과 必要經費와

의 差額은 財政支援으로 충당한다.

高等學校의 경우에는 系列別・地域別로 확 보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都市 所在 人文系高校의 경우, 受益者負擔을 原則 으로 하여 必要經費를 전부 納入金收入으로 충 당토록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私學 納入金이 共同管理되지 않는 한 私學間 教員 平均號俸,學校規模에 따라서 納入金의 差等 化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表 20〉을 통하여 教員平均號俸,學級規模에 따른 學校間 學生 1人當 敎員人件費의 차이를 보면, 예컨대 6號 俸 20學級의 學校와 12號俸 45學級의 學校와 의 差異가 年間 93,300원으로서 現在 1級地地 域高等學校의 納入金水準 324,000원의 28.8%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私學間 必要 經費의 差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 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觀點에서 短期的으로 는 敎員平均號俸에 따라서 學級當 學生數를 調整하고 長期的으로는 私學間 教員平均號俸 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前提下에 私 學을 一定規模로 規格化하는 方案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지금 현재와 같이 中學校卒 業生이 抽籤에 의해서 特定高等學校에 配定되 는 경우에는 學校間 納入金의 差等化는 原則

〈表 20〉 教員平均號俸別・學級數別 學生 1人當 教員人件費

			(단	위:원)
平均號俸學級數	6	8	10	12
20	217,800	189,000	162,600	138,300
30			154, 470	
45	196,020	170, 100	146,340	124,500

註:學級當 學生數는 60名을 基準, 學級當 教員數는 20 學級, 30學級, 45學級 學校에 대하여 各各 2.0,1.9, 1.8을 適用함. 的으로 適用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解決策으로서 提示될 수 있는 것은 學群單位 納入金共同運營制의 採擇이다. 즉 學群單位로 私學의 納入金을 공동관리하도록 하여 一定學群內에서는 中等私學의 納入金을 均一化하되 學群間에는 納入金을 差等化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私學의 納入金共同運營制는 私學의 투수성에 비추어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현재 補助私學과 非補助私學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中等私學을 統合하여 私學問은 물론 公・私學問 財政隔差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平準化施策下에서 바람직한 制度라고 관단된다.

農村所在 高等學校의 경우 地域住民의 所得 水準이 낮고 學生人口의 都市移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都市學校보다 納入金을 낮게 책정하고 納入金과 必要經費와의 差額을 財政 支援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實業系高等學校의 경우 技能教育에 대한 私的 需要가 있음을 감안하여 人文系高校에 비하여 納入金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實業教育에 대한 需要擴大를 誘導하고 納入金과 必要經費 와의 差額을 財政支援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예컨대 一定級地 實業系高校 納入金은 同一級地 人文系公立高校 納入金의 一定比率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의 경우 受益者負擔을 原則으로 하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外部經濟効果가 상대적으로 높은 一部系列 또는 專政分野에 대해서는 選別的으로 財政支援을 實施하도록 한다. 또한 單位經費에 따라 大學을 人文系・自然系・醫齒大 등 몇 개의 系列로 區分하여 約入金의 系列別・差等化를 實施하도록 한다.

3. 私學法人 關聯稅制의 改正

私學財政難에 대한 認識이 高調되어감에 따 라 私學法人의 投資財源을 增殖시키기 위한 關聯稅法의 改正이 重要政策課題의 하나로 부 각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上述한 바와 같 이 敎育事業에 직접 관련되어 파생하는 各種 稅金에 대해서는 全額 稅除를 基本方向으로 하여 1970年代 이후 私學에 대한 稅制支援이 계속 擴大되어 옴에 따라 現在 私學法人은 광 범위한 免稅惠澤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私學 에 대한 追加的인 稅制支援은 그 效果가 극히 限界的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1983年 私 學法人이 納付한 稅金의 總額이 30億3千萬원 에 불과한 것을 볼 때 私學法人에 대한 追加 的인 稅制支援의 免稅效果는 私立學校 總財政 收入의 극히 一部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法人이 극히 少額의 稅金을 納付하고 있어 免稅를 통하 個 別學校法人에 대한 支援效果는 미미하며 여유 있는 一部私學法人에 集中될 것으로 보인다.

军한 私學教育에 대한 民間資本의 迎入을 촉진시키기 위해 私學寄附金에 대한 全額 損費處理가 거듭 主張되고 있으나 現在에도 法人의 寄附金總額이 指定寄附金 損費處理限度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에서 損費處理限度 擴大에 따른 寄附金의 增加效果는 몇몇 特定私學에 대한 追加的인 稅制支援은 이와 같이 私學財政難 解消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私學法人과 營利法人間은 물론 私學法人과 기타非營利法人間의 課稅의 非衡平의 問題를 誘發하는 등 租稅政策上의 基本體制面에서 상당한

무리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觀點에서 아래와 같은 稅制改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첫째로, 私學法人收益用財產의 轉換에 따른 法人稅特別附加稅의 일시적 免稅措置이다. 私 學法人이 保有한 收益用財產은 그 상당 부분 이 非收益性 또는 低收益性 財產으로 私學教 育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작으나 法人稅特別 附加稅로 인하여 財產의 形態轉換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私學財政 活性化 의 側面에서 私學法人 保有財產의 收益性提高 가 當面課題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私學法 人 保有財產의 高收益性財產으로의 轉換을 誘 導하는 획기적인 措置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 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私學法人이 低 收益性財產을 高收益性財產으로 轉換하는 경 우 法人稅特別附加稅를 免除해 주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學校移轉時 賦課되는 防衛稅의 免 除이다. 就學人口分布의 변화로 學校移轉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따른 法人稅特別附加稅는 免除되고 있으나 防衛稅는 오히려 割增稅率이 適用・重課되고 있다. 國防의 중요성에 立脚 하여 防衛稅의 國民皆納의 原則이 樹立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公益機關인 學校의 불가피한 移轉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原則을 硬直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세째로, 私學稅制와 관련된 硬直的인 稅法 條項의 緩和이다. 즉 現行稅法은 私學法人의 財產運用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硬直的인 條項 을 포함하고 있어서 財產運用의 效率性을 沮 害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緩和措置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예컨대 私學法人의 年間收入은 私學施設資金으로 活用되기에는 충분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私學法人 收入의 사용을 반드 시 發生年度로 국한시킨 것이나, 資金確保와 적절한 土地發見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敎育用 土地의 년차적 매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敎育用土地의 매입을 사용전 1년 이내로 제한 한 규정은 私學法人의 財產運用의 硬直性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기한이 적절 히(3~5년) 연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私學施設 擴充

가. 施設資金 融資財源의 確保

私學에 대한 長期施設融資 財源確保의 方案 으로 私學關聯團體 또는 政策研究報告書을 통 하여「私學金庫」,「振興基金」 또는「私學振興 財團」등 명칭을 달리하는 施設基金의 設立이 누차 거론되어 왔다⁷⁾. 지금까지 거론된 몇 개 의 案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점은 私學의 財政與件上 施設 改・補修 등에 대한 投資財 源의 확보가 어려워 私學施設이 방치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私學의 施設與件改善을 위해 私學에 대한 長期施設融資基金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私學에 대한 長期施設融資財源의 確保에 대 한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앞으로 學齡人口의 증가가 현저히 둔 화되고 經濟規模의 확대로 敎育財政與件이 전 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敎育施設에 대한 投 資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敎育與件이 지금까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敎 育人口의 수용에 급급하여 施設面에서 장기간 동안 답보 내지 악화되어 敎育施設 與件의 改 善에 대한 國民的 要求가 점차 팽배해지고 있 는 현시점에서 學齡人口의 增加勢鈍化와 敎育 財政與件의 相對的 改善은 教育施設 投資擴大 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私學의 財政與件을 감안할 때 私學 法人의 財政支援을 통한 施設與件의 改善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일부 財政與件이 좋은 私學法人에서는 施設投資가 계속될 것이나 대부분의 영세한 私學法人에게 施設投資를 기대할 수 없다. 따 라서 私學施設投資擴充을 위한 制度的인 장치 가 마련되지 않는 한 私學間에 施設面에 있어 隔差가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公私學間에 있 어서도 그 隔差가 擴大될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社會問題로 자주 대두되 고 있는 일부 私學의 運營不實로 인한 法人倒 產은 投資財源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무리 한 施設投資에서 연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 다8). 施設融資基金의 確保와 이를 통해 私學 에 대한 施設資金의 貸出制度가 확립된다 하 더라도 私學의 施設에 대한 自律的인 投資가 防止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무리한 施設投 資로 인한 學校法人의 運營不實의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資金造成이 制度的 裝置를 통해 이루어지고 施設擴充 등에 있어 專門的인 助言이 주어질 수 있으면 무리한 施設投資에 따른 私學의 不 實運營이 크게 防止될 수 있을 것이다.

私學에 대한 施設財源의 制度的 支援이 ス 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1960 年代早日 理工系 教育의 振興을 위하여 借款

⁷⁾ 예로 韓國教育開發院,『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19 77 및 私學財團聯合會의 各種報告書.

⁸⁾ 그 代表的인 예로 全州大學校長 設立・運營하던 私學 法人 永生學院을 들 수 있다.

導入을 통해 資金을 마련하여 工高,工專 및 理工系,醫齒學系 大學의 施設擴充에 사용하 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의 私學이 對 象學校로 선정되었다⁹⁾. 그러나 이와 같은 敎 育借款事業은 私學에 대한 독립적인 支援事業 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支援의 대상이 理工系 實業敎育에 그쳐 私學에 대한 전반적인 支援 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앞으로 均衡있는 教育發展을 위해서는 私學의 施設改善을 위한 財源의 確保와 이의 집행을 위한 制度的 裝置 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나. 私學育成財團의 機能

私學에 대한 施設融資財源의 確保와 이의 執行을 위하여 私學育成財團(假稱)의 設立이 요구되며, 同財團의 主要機能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學校法人에 대한 施設融資資金의 확보와 배분을 들수 있다.同財團은 政府財政支援,財政融資,기타 資金源에서의 貸付 등으로 融資金을 확보하여 敎育委員會,文敎部 또는 財團內의 審查機構를 통해 私立學校敎育의育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施設關聯事業에대하여資金을 融資하도록 한다.資金融資對象事業은 校地,校舍 및 敎育關聯建物의 擴張,校舍 및 敎育關聯建物의 改・補修,實驗實習機資材,視聽覺機資材와 같은 敎育機資材의구입 등 각종 외곽시설이나 내부시설에 관련된 사업으로同財團은 文敎部와 협의하여對象事業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各種事業에서필요한 單位經費를 산정하여 融資의 기준으로

9) 文教部,『教育借款事業 綜合評價研究』, 1983.10.

설정해야 할 것이다.

同財團의 두번째 기능은 私學經營에 대한 調査 및 相談을 들 수 있다. 同財團은 私立學校 運營에 관한 諸般課題에 대하여 情報를 수 집하고 調査研究作業을 수행하여 私立學校 運營者에게 私學關聯情報 및 研究結果를 배분하고 私學運營實務者에 대한 專門教育, 經營診斷 및 經營相談에 응하여 私學教育經營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私學을 新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私學設立이나 運營에 필요한 行政節次, 施設基準, 教科選定 및 教師確保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相談 및 支援機能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同財團이 수행해야 할 세번째 機能으로는 私學에 대한 寄附金募集 및 配分을 들 수 있 다. 個別學校單位의 寄附金募集은 同窓會單位 에 주로 의존하게 되어 寄附金募集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私學育成財團을 통하여 私學에 대한 寄附金이 모집될 때에는 寄附金募集活動 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同財團은 寄附金의 사용목적을 몇 개로 나누어 財政與件이 落後한 僻地私立學校支援,實業私 學支援, 私立大學教授 研究活動支援 등 特定 支援事業을 선정하고 寄附金의 配分基準을 설 정하여야 할 것이다. 私學育成財團의 寄附金 募集活動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同財團을 통한 모든 非指定 寄附金에 대하 여는 全額 損費로 인정하여 租稅惠澤을 제공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私學育成財團이 수행할 수 있는 비번째 기 능은 私學保有財產 및 私學運營收益事業의 委 託管理 및 委託經營을 들 수 있다. 私學이 보 유하고 있는 低收益性 財產의 高收益性 財產 으로의 전환,收益財產의 管理 및 收益事業의 經營 등에 있어 私學法人이 專門的인 능력을 갖추지 못해 支援을 요청할 경우 私學育成財 團은 經營相談이나 委託管理의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私學法人經營의 效率性 提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機能을 갖는 同財團의 設立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融資財源을 확보하는 일이다. 融資資金의 財源捻出方案으로는 첫째, 政府의 財政支援으로 同財團의 資本金을 마련하여 이를 貸出金으로 사용하는 方案, 둘째, 政府借入에 의한 財源確保方案으로서 現行 財政投融資制度下에서 資金管理特別會計 資金運營計定에 預託된 政府의 여유자금을 同財團에서 貸與받아 이를 學校法人에 再貸與하는 方案, 세째, 私立學校 敎員年金의 積立金의 一部를 사용하는 方案, 네째, 私立學校 敎職員 및 私立學校 學生의 貯蓋積立金 등을 사용하는 方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本論文에서는 우리나라 私學教育의 財政實態와 私學財政의 擴充을 위한 主要政策課題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私學運營의 正常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財政的인 측면에서의 改善方案의 모색과 아울러 私學運營에 대한 行政統制,人事管理,學生選拔 등의 非財政的인 學事運營面에서의 검토와 政策代案의 강究가 함께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私立高等學校의경우 平準化施策의 轉換과 관련하여 私學財政

政策方向이 論議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本論文에서 主要政策建議로 제시되고 있는 私學의 納入金 運營方案은 平準化施策의 轉換時에도 일관해서 適用되어야 할 것이라는 點은 이미 밝혀 둔 바 있다.

本研究에서 검토된 私學教育財政의 實態와 主要 政策建議事項을 要約 整理하면 아래와 같다.

가. 우리나라 私學財政의 구조적 특징은 歲 入面에서 納入金依存度가 매우 높고 法人의 財政寄與가 零細하며 일부 中等私學을 예외로 하면 國庫支援이 미미하다는 점과, 歲出面에서 中等 私學의 경우 人件費比重이 높아 施設投資 餘力이 거의 없는 한편 私立大學의 경우 外廓 施設費支出이 過多하여 優秀教員確保,內部施 設擴充 등을 위한 財源造成이 어렵다는 점으로 要約된다. 學生 1人當 公教育費는 學校法人의 재정사정, 地域 등에 따라 私學間에 차이가 심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私學이 公學보다 낮 으며 이러한 격차는 주로 人件費와 施設面에 서 發生한다. 公・私學間 施設費의 隔差는 學 校新設 등 新規投資面에서 公學이 私學을 크 게 앞서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며, 公學의 施 設投資財源이 政府豫算으로 확보되어 學校間 어느 정도 平準化가 이루어진 반면 私學의 施 設與件은 學校마다 큰 차이를 보여 일부 私學 의 경우 施設落後의 問題가 심각하다.

나、平準化地域의 中等私學에 대해서는 級地別로 公學과 均等한 納入金을 策定하고 財政缺陷補助에 의해서 人件費 외에 公學에 準하는 運營費를 保障하는 등 政策的으로 公・私學間의 均衡을 指向하고 있다. 그러나 私學施設費의 支援 不足으로 教育施設面에서의 公

·私學間 不均衡은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大學과 非平準化地域의 高等學校의 경우 財政政策이 公學爲主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 로 公學에 대해서만 國庫支援을 實施하고 私 學에 대해서는 公學에 비해 納入金을 다소 높 게 策定하여 受益者負擔의 原則下에 私學財政 이 운영되고 있다.

다. 私學教育과 직접 관련되는 각종 租稅는 非課稅되는 것은 물론이고 私學教育에 기여하 는 것을 전제로 私學法人의 收益事業과 收益 用財產에 대해서도 각종 稅稅惠澤이 부여되는 등 現在 私學教育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이 상 당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財政規模가 큰 일부 私學을 제외하면 私學의 稅金負擔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우리나라의 경우 私學의 比重이 높아 私學이 國公立學校의 收容能力의 限界를 補完 하고 있다는 점에서 公學爲主의 敎育財政政策 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財政支援과 納入金策定 은 물론 그 밖에 敎員 및 學生支援, 國策事業 支援 등에 있어서도 公・私學 均衡이 指向되 어야 한다.

마. 現在 補助私學을 예외로 할 때 私學財政收入이 學校別 財政需要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私學의 경우 敎員平均號俸과 學校規模에 따라 學校마다 財政事情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硬直性 經費인 人件費節約이 財政運營의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이러한 問題를 解消하기 위해서 公・私學 공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學校運營에 따르는 最低限의 經費(必要經費)를 算定하고 이에 따라서 學校別로 納入金 등 財政收入의 差等化

를 實施하도록 한다.

바.「必要經費」는 學校別로 人件費, 運營費, 施設積立金으로 구분하여 算定하도록 하며, 人件費는 教職員定員 및 報酬規定에 따라 算 定하고 運營費와 施設積立金은 學校級別, 規 模別, 地域別, 系列別로 單位經費를 設定 算 定하도록 한다.

사. 私學法人財政의 零細性을 감안하여 私 學運營에 따른「必要經費」는 모두 納入金과 財政支援으로 確保되도록 하고 私學法人은 財 政餘力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이상의 追加經 費를 支援하도록 한다.

01. 必要經費의 確保原則으로 中學校는 義務教育을 長期的인 基本方向으로 가능한 한 納入金引上을 抑制하고 財政支援을 擴大함으로 써 納入金依存度는 縮小시켜 나가고 高等學校級 이상에서는 收益者負擔原則을 基本方向으로 하되 農村所在 또는 實業系의 高等學校,大學의 重點育成分野에 局限하여 選別的으로 國庫支援이 뒤따르도록 한다.

자. 私學教育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이 이미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追加的인 稅制支援 은 그 效果가 지극히 限界的일 뿐 아니라 일 부 여유있는 私學에만 그 혜택이 집중될 것이 다. 따라서 私學財政難 解消를 目的으로 私學 法人 關聯稅制를 전면적으로 改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私學法人 財產運用의 效率性과 稅法의 合理性의 관점에서 私學法人 收益用財產의 轉換에 따른 法人稅特別附加稅 의 일시적 免除, 學校移轉時 賦課되는 防衛稅 의 免除, 그밖에 지나치게 硬直的인 일부 稅法 條項의 緩和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차. 私學法人의 施設投資餘力이 未治한 반 면, 私學의 施設老朽化, 教育機資材의 新規導 入 등으로 施設投資 所要가 앞으로 계속 擴大 될 展望임에 비추어 私學法人에 대한 長期融 資를 主業務로 하는「私學育成財團」을 設立하 도록 한다.

▷ 參 考 文 獻 ◁

文教部,	『教育財政現况』,1983,1984.
	_,『教育借款事業綜合評價硏究』,1983.
	,『文教統計年報』,各年度.
	,『豫算概要』,1983,1984.
韓國敎育	開發院,『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1977	7.

- Halstead, D.K., Inflation Measure for Schools and College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 Department of Education,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1983.

公 知 事 項

本 季刊誌는 學術的 討議의 廣場을 마련하려는 뜻에서 本誌에 發表된 論文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의 論評을 論文執筆者의 解明과 함께 揭載하 기로 하였읍니다.

論評의 寄稿要領은 아래와 같사오니 많은 寄稿를 바랍니다.

아 래

- 1. 論評의 枚數는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로 限定함.
- 2. 論評은 가급적 論評되는 論文이 發刊된 後 90日 以內로 作成하여 本誌 編輯委員會에 直接 提出 또는 郵送해 주시기 바람.
- 3. 本誌의 編輯方針에 따라 寄稿된 論評은 第 3 者인 論文檢討者(referee) 2名의 同意가 있어야 揭載됨.
- 4. 揭載되는 論評에 대하여는 所定의 稿料를 送付하여 드림.

1985年 6月

「韓國開發研究」編輯委員會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案内

- []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知:122 面 高級洋裝:1,200원
-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高級洋裝·1,800 원
-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納 著 18 切 判 · 250 面 高級洋裝 · 2,000원
- ④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146 面 金光錫 著 高級洋裝:3,000원
- [5] 農産物價格分析論~理論斗 政策 文八龍 共著 高級洋裝・4,000원
-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254 面 高級洋装・4,000원

- 「 SOCIAL SECURITY IN KOREA 林宗淇 著 ¹⁸ 切 剣・198 面 高級洋裝・4,000 원
- B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 294 面 高級洋裝 · 4,000 원

-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金光錫 共著 高級洋装・4,000
-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236 面 高級洋裝・4,000 원

①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202 面 高級洋裝: 3,000 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季 著 18 切 到 · 250 面 高級洋裝 · 3,500 월

[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508 面 高級洋装・4,000원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教 編 18 切 判・492 面 高級洋裝・4,000원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教 編 18 切 判·342 面 高級洋裝·4,000원

-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判:532 面 高級洋装:4,500 圏
-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稿級洋隻・3,500
- 18 市場構造의 獨寡占規制李奎億 著 稿級洋装・3,500号
- ID 賃金斗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244 面 高級洋裝・3,500 원
- ② 韓國의 人口斗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朔・214 面 高級洋裝・3,500원
-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410 面 高級洋装・4,000원

② 成長斗 構造轉換 金光錫 共業

金光錫 共著 18 切 到·194 面 高級洋裝·3,500 원

②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判・306 面 高級洋裝・5,000 過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204 面 高級洋裝·3,500원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 判·166 面 高級洋裝·3,500 원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198 面 高級洋裝·4,000 원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共著 18 切 判・250 面 高級洋裝・4,000 원

28 繊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180 面 高級洋装・3,500원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192 面 高級洋装・4,000 원

30 韓國의 所得分配의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470 面 高級洋裝・5,500 원

③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410 面 高級洋裝·5,000 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272 面 高級洋装・4,500 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况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 236 面 高級洋裝 · 4,000 원

34 成長斗 都市化問題

宋丙洛 共著 18 切 判·270 面 E.S. Mills 共著 高級洋裝·4,500 원

第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306 面 高級洋裝・5,000 원 36 韓國工業化패턴과 ユ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272 面 高級洋裝·4,000 원

37 保健醫療資源斗 診療生活圈

延河淸 共著 18 切 判・336 面 金學泳 共著 高級洋裝・5,500 号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③ 貿易・外援斗 經濟開發

A.O. Krueger 著 18 切 判 · 256 面 田英鶴 譯 高級洋裝 · 4,000 원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414 面 高級洋装・5,000원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384 面 高級洋裝・5,000 원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268 面 高級洋裝・4,500원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共著 高級洋裝・6,000원 D.H. Perkins

图 需給構造의 物價政策

李 焼 著 18 切 判・288 面 高級洋裝・5,000원

45 經濟開發斗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共著 18 切 判 · 410 面 高級洋裝 · 4,500 원

L.P. Jones ハラ 局級注張・4,500 2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淸 著 18 切 判·214 面 高級洋裝·4,000원

- 图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判:228 面 高級洋裝:4,000월
- 倒 韓國의 所得分配斗 決定要因(下)朱鶴中 著 高級洋裝・7,000원
- 50 國民經濟의 福祉年金制度 延河淸 共著 高級洋裝・7,000원
-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金仁秀 共著 18 切 判・402 面 高級洋装・7,000원

-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레페토 外 高級洋裝・5,000월
- 53 韓國의 金融發展(1945~78年)D.C. 書 共著 高級洋裝・5,600원
-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林埈卿 共著 18 切 判 · 210 面 高級洋裝 · 5,400 원

KDI 圖書會員制案內

本研究院은 그간 本院의 刊行物을 필요로 하는 學界 및 企業界의 끊임 없는 購讀要請에 副應하고, 本研究院의 研究結果를 보다 廣範圍하게 普及함으로써 國內의 經濟動向과 政府의 經濟政策 등 필요한 學術的 情報를讀者 여러분에게 보다 손쉽게 傳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製作實費에의한 KDI 圖書會員制를 實施합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가 있으시기바랍니다.

다 음

1. 會員에 대한 特典

- ① 會員加入期間(1年) 중 本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但,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除外).
- ② 本研究院 圖書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2. 會 費:50,000원

3. 加入期間: 年中 언제나 接受하되 接受된 날로부터 1年間 會員으로서의 資格이 유지됨. 계속 會員資格을 유지하실 분은 有効期間 終了以前에 再 登錄을 要함.

4. 加入方法

- ① 직접 本院 出版課에 拂入하거나
- ②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010983-31-0514919) 에 拂入하시되 團體의 경우는 事業者登錄番號 및 代表者名을, 個人의 경우는 住民登錄番號를 明記해야 함.

5. 其 他

- ① 刊行物 發送料는 本院이 負擔(國內發送에 限함).
- ② 受信處의 變更이 있을 때는 즉시 本院 出版課에 通知해야 함.
- ③ 加入會費 50,000원 외 다른 費用負擔은 없음.

6. 問議處

우편번호:13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한국개발연구원 출판과 (전화 967-3287)